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36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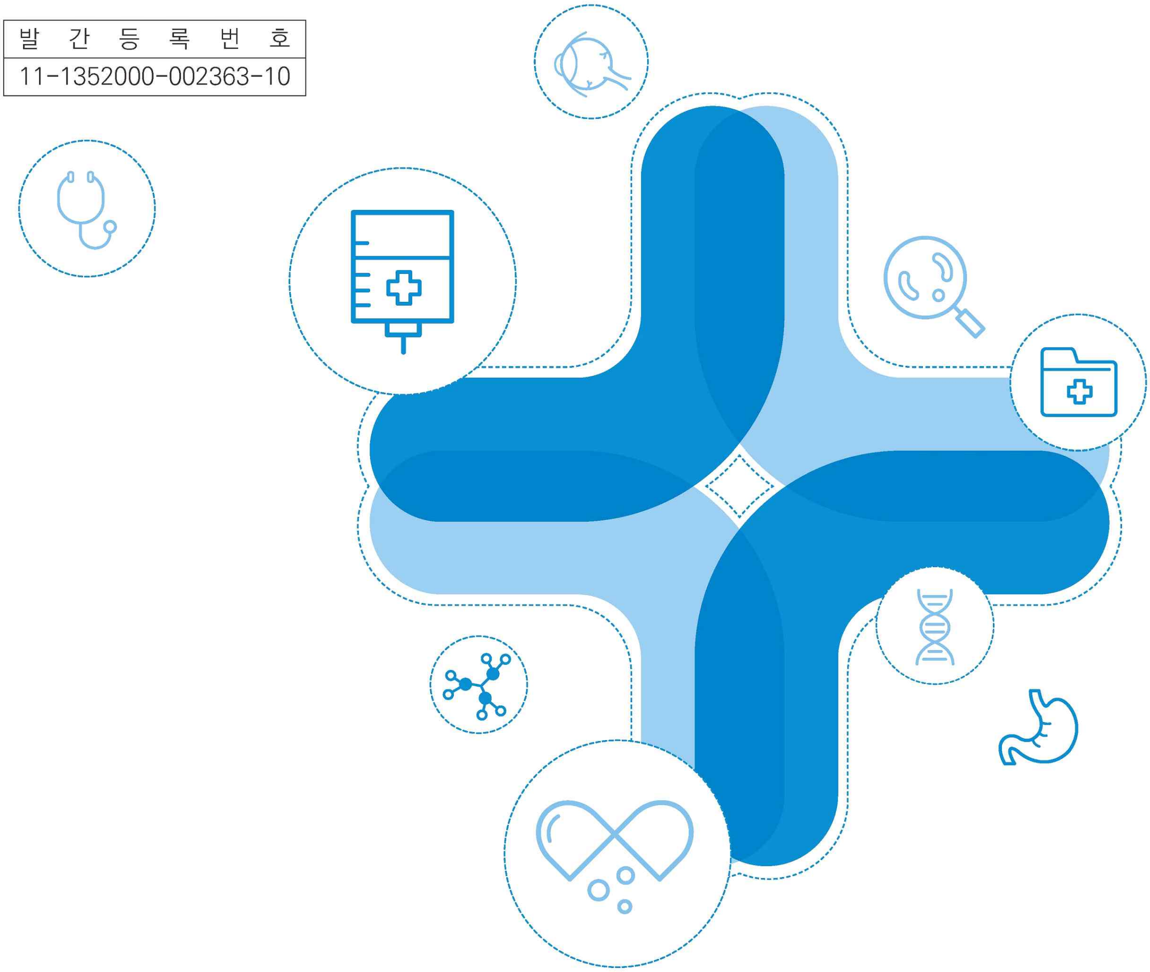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3차 개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Ⅰ. 개요 ········ 3
Ⅱ. 추진체계 ········ 10
Ⅲ. 참여기관 선정 ········ 13
Ⅳ. 참여 철회방법 ········ 21
Ⅴ. 참여기관 정보변경 방법 ········ 23

제2장 사업 주요내용

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 27
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 29
Ⅲ. 참여인력(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및 교육) ········ 31
Ⅳ. 맞춤형 검진 바우처 안내 ········ 34

제3장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 41
Ⅱ. 케어플랜 수립 ········ 44
Ⅲ. 환자 관리 ········ 53
Ⅳ. 교육·상담 ········ 56
Ⅴ. 점검 및 평가 ········ 58

제4장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 63
Ⅱ. 케어플랜 수립 ········ 67
Ⅲ. 환자 관리 ········ 75
Ⅳ. 교육·상담 ········ 79
Ⅴ. 점검 및 평가 ········ 80

제5장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Ⅰ. 요양급여 기준 ········· 85
Ⅱ. 산정지침 ········· 86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89
Ⅳ. 청구 원칙 ········· 90
Ⅴ. 명세서 작성요령 ········· 91
Ⅵ. 보완 및 추가청구 ········· 94
Ⅶ. 맞춤형 검진 바우처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 95

제6장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지침

Ⅰ. 추진현황 ········· 103
Ⅱ. 지역운영위원회 개요 ········· 105
Ⅲ. 세부 회의내용 ········· 111
Ⅳ. 실무협의체 개요 ········· 115
Ⅴ. 행정사항 ········· 117

제7장 자주 묻는 질문

Ⅰ.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 127
Ⅱ. 급여청구 등에 대한 내용 ········· 131
Ⅲ. 검진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 ········· 145
Ⅳ. 기타 사항 ········· 150

제8장 부록

부록 1. 사업 참가 신청서류 ········· 155
부록 2. 사업 관련 서류 ········· 167
부록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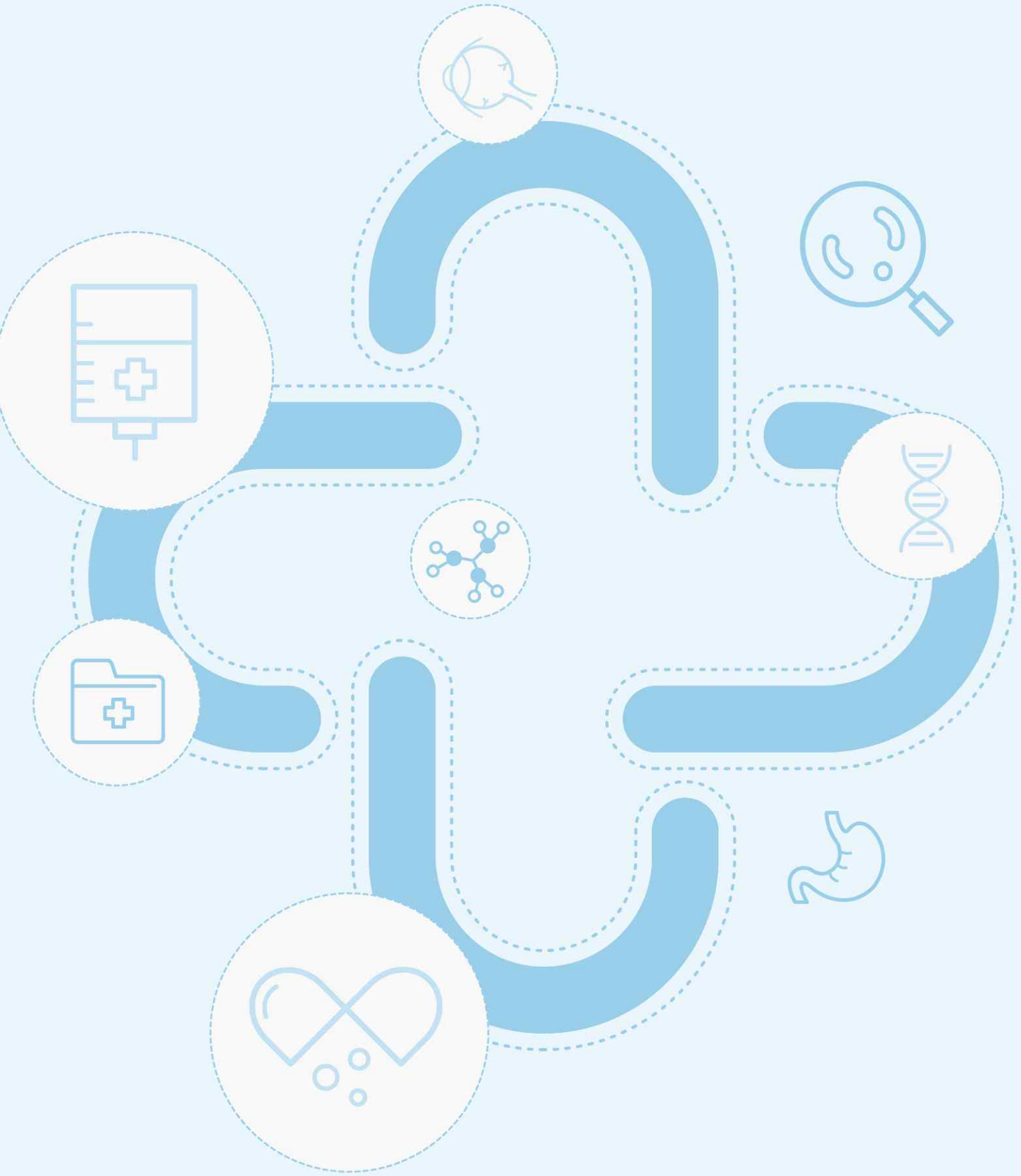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	쪽수
Chapter 01. 사업 개요			
Ⅰ. 개요	2. 기관 별 역할 • (추진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관리	2. 기관 별 역할 •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통합 방안 마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침 개정, 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지역의사회 보건소 연계모형 확산,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 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참여기관·지역사회 연계기관 관리, 건강검진 및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일차의료 현장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팩트시트 제공으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진료비 심사,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 모형 개발, 평가 수행,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	11
Ⅲ. 참여 기관 선정	〈신규〉	1. 신규 지역의사회 참여 • (사업대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처방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신청주체) 지역의사회 • (참여기준)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관할지역 20개 이상 동네의원이 함께 신청 * 단, 군 지역의 경우 모집 의원 수가 최소 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 필수 체결 * 업무협약서는 지역의사회 여건에 따라 수정 가능(업무협약서 별지 제4호 참조) - 기타 지역 내 공공, 민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체육시설(국민체력100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복지기관, 지역간호사회,	13

구분	현행	개정	쪽수
		지역영양사회 등 • (공모주기) 비정기적 - 공모 진행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안내 •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공모 계획 참고 2. 기존 지역의사회 의원 추가 •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추가를 원하는 기존 참여지역 • (신청주체) 지역의사회 • (참여기준) 해당지역의 추가 참여의원이 1개 이상일 경우 신청 • (공모주기) 상시모집 - 공모 절차는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안내	
Ⅲ. 참여 기관 선정	3. 사업참여 신청방법 •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닥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http://hi.nhis.or.kr/main.do) 접속 → '건강동행 닥터원' 배너 클릭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5. 신규 선정지역 의원 참여방법 •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 포털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 (http://sis.nhis.or.kr/index.do) 접속 → 기관사용자 → 일차의료사업 참여기관 → 연계기관 등록 신청 → 직원등록 신청 → 로그인 → 자료실에 신청서류 업로드	15
	(참여철회방법) • (대상)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방법) 지역의사회는 철회를 희망하는 의원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를 받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지역의사회용)**'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팩스, 메일 등)	(참여 철회방법) • (대상)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폐업 의원의 경우 폐업 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동 철회 • (방법) 지역의사회는 철회를 희망하는 의원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를 받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신청서(지역의사회용)'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FAX(033-749-6398) 접수	21
V.	(참여기관 정보변경 방법)	(참여기관 정보변경 방법)	23

구분	현행	개정	쪽수
참여 정보 변경 방법	• (방법) 지역의사회는 변경을 하여야 하는 참여 의원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변경신청서(의료기관용)*'를 받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변경신청 의원 현황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Fax 033-749-6398, ☎ 033-736-3595~6)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 작성 후 소속 지역 의사회에 접수 → 지역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지역의사회용)'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FAX(033-749-6398) 접수 ※ 대표자 변경 시 새로운 대표자가 참여의원 변경신청서에 서명 후 제출(시범사업 유지에 동의함을 확인)	
Chapter 02. 사업 주요내용			
Ⅰ. 사업 주요 내용	1. 대상의원 및 참여조건 • (의원 별 등록환자수) 의원 당 300명	1. 대상의원 및 참여조건 • (의원 별 등록환자수) 의원 당 500명	27
Ⅲ. 참여 인력	〈신규〉	1.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및 등록절차 • 자격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간호사,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단독 고용 가능 • 등록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기관 등록/참여인력 등록의원 인력 현황에는 의원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력 현황이 조회되며, 조회된 인력 중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선택하여 등록 • 참여의원에서 기존 인력이 아닌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인력 신고가 선행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는 인력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화면에서 의원 인력현황에 추가 입력이 가능하나, 이는 심평원 등의 인력 신고 내역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신고 필수 2.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Care management) - 환자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	31

구분	현행	개정	쪽수
		상담 지원 -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질환이해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상담 제공 -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의사(또는 케어코디네이터팀)와 공유하며, 다음 진료 예정일까지 환자의 상태를 관리 • 팀기반 진료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Team modulation) - 환자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임상 전문가(영양사 등)로 구성된 다학제적인 케어코디네이터팀을 관리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 - 환자 및 보호자와도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 •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연계자로서의 역할(Care coordination) - 지역사회 자원과 의료기관 간의 적절한 진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한자의 의학적 요구 해결 3. 서비스 제공자 교육과정 운영 • (서비스제공자 온라인 교육과정) - (목적) 의사·케어코디네이터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환자관리 서비스 도모 - (교육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 (교육과정) 총 16차시(공통과정 4차시, 의사 4차시, 간호사 4차시, 영양사 4차시) * 직무별 총 8시간 교육이수 - (교육방법) 온라인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은 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교육구성) 고혈압·당뇨병 관련 이론 및 일차의료 현장 사례 중심 • (케어코디네이터 교육과정)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td><td></td><td>
- (목적)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환자 관리 수행 능력 향상
- (교육대상) 간호사·영양사(케어코디네이터 자격요건)
- (교육과정) 연간 16시간 이상의 기본과정·심화과정
- (교육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구성)
• (간호사) 고혈압·당뇨병의 병태생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의 의사소통,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사례, 포괄적 건강사정 이론 및 실습 등
• (영양사) 일차의료 만성질환의 이해, 영양관리의 최신 지견, 특수 상황에서의 영양관리, 영양관리 사례 분석 및 실습 등
4.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문의처
•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원에서는 직종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나 대한영양사협회에 문의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table>
<tr><th>번호</th><th>지역</th><th>전화번호</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서울, 강원</td><td>02-2268-2632</td></tr>
<tr><td>02-2268-2631</td></tr>
<tr><td>02-2268-2633</td></tr>
<tr><td>2</td><td>부산, 울산</td><td>051-442-3824~5</td></tr>
<tr><td>3</td><td>대구, 경북</td><td>053-756-8469</td></tr>
<tr><td>4</td><td>인천, 제주</td><td>032-441-2926</td></tr>
<tr><td>5</td><td>광주, 전북</td><td>062-222-5025</td></tr>
<tr><td>6</td><td>대전, 충북</td><td>042-825-0749</td></tr>
<tr><td>7</td><td>충남</td><td>041-557-6347</td></tr>
<tr><td>8</td><td>경기</td><td>031-302-9520</td></tr>
<tr><td>9</td><td>전남</td><td>061-801-7799</td></tr>
<tr><td>10</td><td>경남</td><td>055-281-5522</td></tr>
</table>
• (대한영양사협회)
- 전화번호 : 02-823-5680
- 홈페이지 : https://www.dietitian.or.kr
</td><td></td></tr>
<tr><td></td><td>(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업시기)</td><td>(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업시기)</td><td></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td><td>• 2019.12.31.까지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는 40세 이상 환자이고, 검진항목은 고혈압의 경우 심전도, 포타슘, 소디움, 당뇨병의 경우 미세알부민뇨, 안저검사, 당화혈색소였으나, 2020.1.1.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실시</td><td>• 2021. 1. 26.까지 검진항목은 고혈압의 경우 지질검사 4종, 심전도, 당뇨병의 경우 지질검사 4종, 알부민뇨, 당화혈색소였으나, 2021. 1. 27.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실시</td><td></td></tr>
<tr><td rowspan="2">Ⅳ.
맞춤형
검진
바우처</td><td>(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항목)
• (검사횟수) 검사항목별 연 1회 실시 (단, 당화혈색소 2회 가능)
<table>
<tr><th>구분</th><th>고혈압</th><th>당뇨병</th><th>고혈압 + 당뇨병</th></tr>
<tr><td>검사항목</td><td>지질검사 4종, 심전도</td><td>지질검사 4종,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2회)</td><td>지질검사 4종, 심전도, 알부민뇨, 당화혈색소(2회)</td></tr>
</table></td><td>(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항목)
• (검사횟수) 검사항목별 연 1회 실시(검사항목 개별 청구 가능)
- 단, 지질검사 4종 2회, 당화혈색소 4회 가능
- 고혈압 지질검사는 1회 실시 후 검사결과 이상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회 추가 검사 가능(최대 2회)
- 고혈압 환자는 요 일반검사에서 단백뇨 음성 시 알부민뇨 검사 실시 가능
<table>
<tr><th>구분</th><th>고혈압</th><th>당뇨병</th><th>고혈압 + 당뇨병</th></tr>
<tr><td>검사항목</td><td>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td><td>지질검사 4종(2회),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4회)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td><td>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4회) 소디움,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td></tr>
</table></td><td>34</td></tr>
<tr><td>〈신규〉</td><td>(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방법)
<table>
<tr><th>검사항목</th><th>분류번호 (분류코드)</th><th>검 사 방 법</th></tr>
<tr><td>전해질 (소디움, 포타슘)</td><td>누280(D2800)</td><td>진공시험관에 채혈하여 검사를 실시한다.</td></tr>
<tr><td>요 일반검사 4종
요 일반검사 7종
요 일반검사 10종</td><td>누225가(D2251)
누225나(D2252)
누225다(D2253)</td><td>소변검체를 채집하여 자동분석기 또는 검사지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td></tr>
</table>
※ 미량알부민, 당화혈색소, 요일반 검사는 제시된 검사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td><td>36</td></tr>
<tr><td colspan="4">Chapter 03. 04. 고혈압·당뇨병 관리서비스 제공</td></tr>
<tr><td>Ⅰ.
환자</td><td>4. 대상자 등록
• 환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td><td>4. 대상자 등록
• 환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td><td>43, 63</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 rowspan="2">등록</td><td>시범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
* 의원 1개소당 300명까지 환자등록가능</td><td>시범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
* 의원 1개소당 500명까지 환자등록가능</td><td></td></tr>
<tr><td>〈신규〉</td><td>• (재등록) 환자등록 → 재등록 대상 환자 기본정보 조회(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종결 전에 등록했던 정보가 조회 되며, 수정사항 확인 후 재등록 처리</td><td>43, 66</td></tr>
<tr><td rowspan="2">II. 케어 플랜 수립</td><td>3) 임상검사
(검사항목)
<table>
<tr><th>구분</th><th>검사 항목</th></tr>
<tr><td rowspan="6">혈액검사</td><td>혈당검사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td></tr>
<tr><td>지질검사 :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td></tr>
<tr><td>신장검사 :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td></tr>
<tr><td>포타슘(K)</td></tr>
<tr><td>혈색소, 적혈구 용적률</td></tr>
<tr><td>요산</td></tr>
<tr><td rowspan="3">소변검사</td><td>단백뇨검사 : 유린스틱 또는 임의뇨 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td></tr>
<tr><td>혈뇨검사</td></tr>
<tr><td>요당검사</td></tr>
<tr><td rowspan="2">심장혈관 검사</td><td>12-유도 심전도</td></tr>
<tr><td>흉부 X-선 검사</td></tr>
</table>
</td><td>3) 임상검사
(포괄평가 내 고혈압 임상검사 항목)
* 필수항목 볼드표기
<table>
<tr><th>구분</th><th>검사 항목</th></tr>
<tr><td>혈압검사</td><td>**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td></tr>
<tr><td>맥박촉진</td><td>심박수, 부정맥 여부</td></tr>
<tr><td>혈당검사</td><td>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td></tr>
<tr><td>지질검사</td><td>**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td></tr>
<tr><td rowspan="4">혈액/혈청 검사</td><td>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td></tr>
<tr><td>소디움(Na), 포타슘(K)</td></tr>
<tr><td>혈색소, 헤마토크릿(Hct)</td></tr>
<tr><td>요산(Urine acid)</td></tr>
<tr><td rowspan="3">소변검사</td><td>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td></tr>
<tr><td>혈뇨</td></tr>
<tr><td>**단백뇨**</td></tr>
<tr><td rowspan="3">심장혈관 검사</td><td>**12-유도 심전도**</td></tr>
<tr><td>흉부 X-선 검사</td></tr>
<tr><td>ABI</td></tr>
</table>
</td><td>48</td></tr>
<tr><td>(포괄평가 내 당뇨병 임상검사 항목)
* 필수항목 볼드표기
<table>
<tr><th>구분</th><th>검사 항목</th></tr>
<tr><td rowspan="4">혈액검사</td><td>혈당검사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td></tr>
<tr><td>지질검사 :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td></tr>
<tr><td>신장검사 : 크레아티닌, 추정 사구체 여과율</td></tr>
<tr><td>간기능검사 : AST, ALT, r-GTP</td></tr>
<tr><td>소변검사</td><td>단백뇨검사 : 유린스틱 또는 임의뇨 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td></tr>
</table>
</td><td>(포괄평가 내 당뇨병(복합질환) 임상검사 항목)
* 필수항목 볼드표기
<table>
<tr><th>구분</th><th>검사 항목</th></tr>
<tr><td>**혈압검사**</td><td>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td></tr>
<tr><td>맥박촉진</td><td>심박수, 부정맥 여부</td></tr>
<tr><td>혈당검사</td><td>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td></tr>
<tr><td>지질검사</td><td>**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td></tr>
<tr><td rowspan="3">혈액/혈청 검사</td><td>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td></tr>
<tr><td>소디움(Na), 포타슘(K)</td></tr>
<tr><td>혈색소, 헤마토크릿(Hct)</td></tr>
</table>
</td><td>70</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검사 항목</th></tr>
<tr><td rowspan="2">심장혈관검사</td><td>12-유도 심전도</td></tr>
<tr><td>흉부 X-선 검사</td></tr>
<tr><td>안과검사</td><td>안저검사</td></tr>
<tr><td>신경/족부
검사</td><td>모노 필라멘트 검사</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검사 항목</th></tr>
<tr><td></td><td>요산(Urine acid)</td></tr>
<tr><td rowspan="3">소변검사</td><td>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td></tr>
<tr><td>혈뇨</td></tr>
<tr><td>단백뇨</td></tr>
<tr><td>안저검사</td><td>좌안, 우안</td></tr>
<tr><td rowspan="2">신경학적검사</td><td>모노필라멘트 검사</td></tr>
<tr><td>이상감각여부</td></tr>
<tr><td rowspan="2">족부검사</td><td>발등 동맥 맥박</td></tr>
<tr><td>발 변형 및 상처</td></tr>
<tr><td rowspan="3">심장혈관검사</td><td>12-유도 심전도</td></tr>
<tr><td>흉부 X-선 검사</td></tr>
<tr><td>ABI</td></tr>
</table>
</td><td></td></tr>
<tr><td>V.
점검
및
평가</td><td>1. 점검 및 평가 내용
• (케어플랜 점검) 환자관리 상태에 따라 최소 6개월 이내 주기적으로 케어플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점검·평가하고, 환자관리내역을 정리하여 환자관리 상태를 시스템에 기록
• (케어플랜 수정) 케어플랜 수립 이후 임상검사, 환자 관리, 또는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시로 수정·보완 가능
• (지속 케어플랜 재수립) 전년도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체진찰·임상검사를 재시행하고, 이에 따른 차기년도 케어플랜 수립

2. 점검 및 평가 양식
• 대부분의 항목은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환자관리에서 자동 연동되며, 필요 시 수정 가능함
* 제5장 정보시스템 참고</td><td>1. 점검 및 평가
• (정의) 환자관리 상태에 따라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연 2회 목표 달성도를 중간점검하고, 환자관리내역을 정리하여 환자관리 상태(합병증, 중증사례 발생, 약물요법, 임상검사)를 시스템에 기록
• (내용) 합병증 발생 여부, 임상검사 결과 및 생활습관 개선목표 등 점검
- (합병증관리) 저혈압, 저혈당 발생, 응급실 방문 횟수 등 파악
- (생활습관, 우울증) 개선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상태 확인
- (임상검사) 중간점검 필수항목과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실시
• (케어플랜 수정) 케어플랜 수립 이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정·보완
• (케어플랜 재수립) 전년도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체진찰·임상검사를 재시행하고, 이에 따른 차기년도 케어플랜 수립
2. 중간점검 양식
• 대부분의 항목은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환자관리활동에서 자동 연동되며, 필요 시 수정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매뉴얼' 참고</td><td>58,
80</td></tr>
</table>

구분	현행	개정	쪽수
		(고혈압 중간점검 임상검사 항목)	

구분	검사 항목
혈압검사	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
맥박촉진	심박수, 부정맥 여부
혈당검사	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
지질검사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액/혈청 검사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
	소디움(Na), 포타슘(K)
	혈색소, 헤마토크릿(Hct)
	요산(Urine acid)
소변검사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혈뇨검사
	단백뇨검사
심장혈관 검사	12-유도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당뇨병 중간점검 임상검사 항목)

구분	검사 항목
혈압검사	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
맥박촉진	심박수, 부정맥 여부
혈당검사	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
지질검사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액/혈청 검사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
	소디움(Na), 포타슘(K)
	혈색소, 헤마토크릿(Hct)
	요산(Urine acid)
소변검사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혈뇨검사
	단백뇨검사
안저검사	좌안, 우안
신경학적 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이상감각여부
족부검사	발등 동맥 맥박
	발 변형 및 상처
심장혈관 검사	12-유도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구분	현행	개정	쪽수
Ⅲ. 급여 목록 및 상대 가치 점수	(점수당 단가 : '19년 의원급 기준 83.4원)	(점수당 단가 : '21년 의원급 기준 87.6원)	89

현행 (점수당 단가 : '19년 의원급 기준 83.4원)

코드	분류	점수	금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 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IB011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526.38	43,900
IB012	(2) 지속 계획수립 (2주기부터)	293.76	24,500
IB013	나. 점검 및 평가	293.76	24,500
	2. 환자관리료		
IB021	가. 환자관리료 Ⅰ	335.73	28,000
IB022	나. 환자관리료 Ⅱ	529.13	44,130
	3. 교육·상담료		
	가. 초회 교육·상담 [의사]		
IB031	(1) 초기	413.67	34,500
IB032	(2) 지속(2주기부터)	288.97	24,100
	나. 기본 교육·상담		
	(1)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IB033	(가) 개인	124.70	10,400
IB034	(나) 집단	37.17	3,100
	(2)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5	(가) 개인	106.71	8,900
IB036	(나) 집단	31.18	2,600
	다. 집중 교육·상담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7	(1) 개인	230.22	19,200
IB038	(2) 집단	68.35	5,700

개정 (점수당 단가 : '21년 의원급 기준 87.6원)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 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IB011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526.38	46,110
IB012	(2) 지속 계획수립 (2주기부터)	293.76	25,730
IB013	나. 점검 및 평가	293.76	25,730
	2. 환자관리료		
IB021	가. 환자관리료 Ⅰ	335.73	29,410
IB022	나. 환자관리료 Ⅱ	529.13	46,350
	3. 교육·상담료		
	가. 초회 교육·상담 [의사]		
IB031	(1) 초기	413.67	36,240
IB032	(2) 지속(2주기부터)	288.97	25,310
	나. 기본 교육·상담		
	(1)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IB033	(가) 개인	124.70	10,920
IB034	(나) 집단	37.17	3,260
	(2)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5	(가) 개인	106.71	9,350
IB036	(나) 집단	31.18	2,730
	다. 집중 교육·상담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7	(1) 개인	230.22	20,170
IB038	(2) 집단	68.35	5,990

구분	현행	개정	쪽수
Ⅴ. 명세서 작성요령	다. 진료내역	다. 진료내역	91

현행 다. 진료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가) 포괄 평가 및 계획 관리료	(예시) 등록한 고혈압 재진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여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결과를 받을 경우
나) 환자 관리료	(예시) 등록한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환자관리료 Ⅱ를 산정할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11	43,900	1	1	43,9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다. 진료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가) 포괄 평가 및 계획 관리료	(예시) 등록한 고혈압 재진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여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결과를 받을 경우
나) 환자 관리료	(예시) 등록한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환자관리료 Ⅱ를 산정할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11	46,110	1	1	46,1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구분	현행	개정	쪽수

현행 — 다) 교육·상담료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22	44,130	1	1	44,13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2	0001	JX999	B/

주) 1.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JX999 : '환자관리료 II 실시사유'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예시) 등록한 당뇨병 재진환자에게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교육·상담을 일대일로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33	10,400	1	1	10,40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 다) 교육·상담료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22	46,350	1	1	46,3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2	0001	JX999	B/

주) 1.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JX999 : '환자관리료 II 실시사유'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예시) 등록한 당뇨병 재진환자에게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교육·상담을 일대일로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33	10,920	1	1	10,9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VII. 맞춤형 검진 바우처 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쪽수: 97)

현행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질환명	검사항목	점수	금액 (2019년)
고혈압	총 콜레스테롤	17.93	1,500
	HDL 콜레스테롤	70.31	5,860
	TG 중성지방	41.46	3,460
	LDL 콜레스테롤	72.71	6,060
	심전도	77.5	6,460
당뇨병	총 콜레스테롤	17.93	1,500
	HDL 콜레스테롤	70.31	5,860
	TG 중성지방	41.46	3,460
	LDL 콜레스테롤	72.71	6,060
	알부민뇨* (ACR)	192.29	16,040
		138.42	11,540
		17.61	1,470
	당화혈색소 (2회)	83.28	6,950
		83.28	
		83.28	
		83.28	
		83.28	

개정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질환명	검사항목	점수	금액 (2021년)
공통	총 콜레스테롤	16.76	1,470
	HDL 콜레스테롤	68.01	5,960
	TG 중성지방	40.10	3,510
	LDL 콜레스테롤	68.26	5,980
	e-GFR (혈청 크레아티닌)	17.86	1,560
	포타슘	17.60	1,540
	알부민뇨* (ACR)	189.74	16,620
		123.97	10,860
		17.86	1,560
	요 일반검사 4종	8.2	720
	요 일반검사 7종	12.39	1,090
	요 일반검사 10종	20.9	1,830
고혈압	심전도	80.23	7,030
	소디움	17.60	1,540
당뇨병	당화혈색소	77.76	6,810

※ 고혈압 환자는 요 일반검사에서 단백뇨 음성 시 알부민뇨 검사 실시 가능

Chapter 06. 지역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지침 신규 수록	103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	쪽수
Chapter 07. 자주 묻는 질문			
Ⅰ.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Q02. 임상검사는 필수 입력 항목인가요?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가 있는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공단 건강검진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자동 연계 됩니다.	Q02. 임상검사는 필수 입력 항목인가요? 네. 포괄평가 후 임상검사를 실시해야 케어플랜을 수립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 공단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자동 연계 됩니다. 6개월 이내 의원 검사결과 값이 있는 경우 소급입력이 가능합니다.	127
	Q09. 대상자가 모바일(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어떻게 서명하나요? 건강iN 앱 실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메뉴 접속 → 환자등록번호(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 등록하면 자동 생성됨)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 → 비밀번호(숫자 4자리) 설정 → 로그인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내용 확인 후 "확인" 터치 다만, 앱 로그인에 10여 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09. 대상자가 모바일(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어떻게 서명하나요? The건강보험 앱 실행 → 건강iN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메뉴 접속 → 환자등록번호(환자 등록 시 생성됨)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 → 비밀번호(숫자 4자리) 설정 → 로그인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내용 확인 후 "확인" 터치 ※ 앱 로그인에 5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
	Q1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좌측 하단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의원 찾기와 건강iN 앱의 검진기관병(의)원찾기 메뉴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 위치 기반 반경 5km 이내 지역범위 자동셋팅	Q1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건강보험 통합홈페이지(http://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2)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성병원 → 일차의료만성질환병원 메뉴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 위치 기반 반경 5km 이내 지역범위 자동세팅	129
	Q17. 환자 중 집중관리 대상은 어느 화면에서 입력 또는 확인 가능한가요? 케어플랜 화면 하단의 항목(공통) 문제 목록(혈압/혈당 수치와 측정방법 이해 필요) 관리목표 [혈압혈당 측정방법 옆 집중관리대상(주 3일 이상 수치 전송)]에 체크하고 저장·확인 가능. 단, 환자가 주 3일 이상 수치 전송을 해야	Q17. 환자 중 집중관리 대상은 어느 화면에서 입력 또는 확인 가능한가요? 케어플랜 화면 상단의 집중관리대상에 체크하고 저장하셔야 합니다. 단, 환자가 주 3일 이상 수치 전송을 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경로 : 일차만성질환 〉 케어플랜	130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td><td>하므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경로 : 일차만성질환 〉 케어플랜 〉 포괄평가/케어플랜 〉 케어플랜</td><td>〉 포괄평가/케어플랜 〉 케어플랜</td><td></td></tr>
<tr><td>Ⅱ. 급여 청구 등에 대한 내용</td><td>Q15. ‘환자관리료 Ⅱ’은 어떤 경우 산정하나요?
A. 〈생략〉
〈환자관리료 기준〉
<table>
<tr><th>구분</th><th>환자관리료 Ⅰ</th><th>환자관리료 Ⅱ</th></tr>
<tr><td>대상자</td><td>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td><td>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 상태나 요구도를 고려하여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td></tr>
<tr><td>제공 수단</td><td>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td><td>전화
(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td></tr>
<tr><td>실시 횟수</td><td>월 1회 이상, 분기별 6회 이상</td><td>월 2회 이상, 분기별 12회 이상</td></tr>
<tr><td>산정 기준</td><td>주기적으로 임상수치 확인 필수</td><td>-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필수
- 연간 2회(2분기) 이내 산정</td></tr>
<tr><td>수가 (분기당)</td><td>28,000원</td><td>44,130원</td></tr>
</table>
* 환자관리료 Ⅰ, 환자관리료 Ⅱ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td><td>Q15. ‘환자관리료 Ⅱ’은 어떤 경우 산정하나요?
A. 〈생략〉
〈환자관리료 기준〉
<table>
<tr><th>구분</th><th>환자관리료 Ⅰ</th><th>환자관리료 Ⅱ</th></tr>
<tr><td>대상자</td><td>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td><td>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 상태나 요구도를 고려하여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td></tr>
<tr><td>제공 수단</td><td>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td><td>전화
(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td></tr>
<tr><td>실시 횟수</td><td>월 1회 이상, 분기별 6회 이상</td><td>월 2회 이상, 분기별 12회 이상</td></tr>
<tr><td>산정 기준</td><td>주기적으로 임상수치 확인 필수</td><td>-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필수
- 연간 2회(2분기) 이내 산정</td></tr>
<tr><td>수가 (분기당)</td><td>29,410원</td><td>46,350원</td></tr>
</table>
* 환자관리료 Ⅰ, 환자관리료 Ⅱ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td><td>134</td></tr>
<tr><td>Ⅲ. 검진 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td><td>Q0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자입니다. 검진바우처 검사를 받으려면 별도의 대상자 확인 또는 등록 과정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시점부터 검진바우처 검사가 제공됩니다.
* 참여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정보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일차의료만성질환/등록/환자등록)에 등록됨
- 기존 참여자의 경우 2020.1.1.부터 변경된 검사항목을 제공합니다.</td><td>Q0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자입니다. 검진바우처 검사를 받으려면 별도의 대상자 확인 또는 등록 과정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시점부터 검진바우처 검사가 제공됩니다.
* 참여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정보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일차의료만성질환/등록/환자등록)에 등록됨
- 기존 참여자의 경우 2021.1.27.부터 변경된 검사항목을 제공합니다.</td><td>145</td></tr>
<tr><td></td><td>Q03. 검진바우처로 제공하는 검사항목은 무</td><td>Q03. 검진바우처로 제공하는 검사항목은</td><td>145</td></tr>
</table>

구분	현행	개정	쪽수
	엇인가요? 대상자의 질환별로 검사항목을 제공합니다. - 고혈압 환자(5종): 지질검사 4종, 심전도 검사 - 당뇨병 환자(6종): 지질검사 4종,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2회 - 고혈압·당뇨병 환자(7종): 지질검사 4종, 심전도검사,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2회	무엇인가요? 대상자의 질환별로 검사항목을 제공합니다. - 고혈압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혈청 크레아티닌, 요중 크레아티닌, 요 일반검사 - 당뇨병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알부민뇨, 포타슘, 당화혈색소(4회), 혈청 크레아티닌, 요중 크레아티닌, 요 일반검사 - 복합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혈청 크레아티닌, 요중 크레아티닌, 요 일반검사	
	Q05. 검진 바우처의 제공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질환별 검사항목을 연 1회 제공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19년도 제공 검사항목 2019.12.31. 소멸) ※ 단,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는 연 2회 제공	Q05. 검진 바우처의 제공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의 질환별 검사항목을 연 1회 제공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20년도 제공 검사항목 21. 1. 26. 소멸) ※ 단, 지질검사 4종은 연 2회, 당화혈색소 검사는 연 4회 제공 *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지질검사 1회 실시 후 검사이상 시 최대 2회까지 검사가능	146
	Q12. 요 일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검진 바우처로 제공되는 미세알부민뇨(누300 미량알부민)검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검진 바우처로 제공되는 알부민뇨 검사 중 미량알부민 검사는 기존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다 음-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 환자 [관련근거: 고시 제2018-105호(행위)]	〈삭제〉	147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td><td>Q13. 2019년 12월 16일 등록한 환자는 검진바우처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나요?
<table><tr><th>질환</th><th>2019. 12. 31.까지</th><th>2020. 1. 1. 부터</th></tr><tr><td>고혈압</td><td>소디움(Na), 포타슘(K), 심전도</td><td>지질검사 4종, 심전도</td></tr><tr><td>당뇨병</td><td>미세알부민뇨, 당화혈색소, 안저</td><td>지질검사 4종,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2회</td></tr><tr><td>고혈압·당뇨병</td><td>소디움(Na),포타슘(K), 심전도 미세알부민뇨, 당화혈색소, 안저</td><td>지질검사 4종, 심전도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2회</td></tr></table>2019년 등록한 환자는 2019. 12. 31.까지는 2019년 제공되는 검진바우처 항목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2020. 1. 1.부터는 변경된 검사 항목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td><td>〈삭제〉</td><td>148</td></tr>
<tr><td colspan="3">Chapter 08. 부록</td><td></td></tr>
<tr><td rowspan="2">부록2. 사업 관련 서류</td><td>[별지 제6호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접수를 위한 아이디 등 발급 신청서</td><td>〈삭제〉</td><td>167</td></tr>
<tr><td>[별지 제7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원용)_온라인 작성용
《시범사업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안내》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목적<table><tr><th>항목</th><th>세부내용</th><th>목적</th></tr><tr><td>본인확인</td><td>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td><td>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본인 식별</td></tr><tr><td>의료기관 확인</td><td>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td><td>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기관 식별, 사업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확인</td></tr></table>※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사업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td><td>[별지 제7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원용)_온라인 작성용
《시범사업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안내》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목적<table><tr><th>항목</th><th>세부내용</th><th>목적</th></tr><tr><td>본인확인</td><td>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td><td>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본인 식별</td></tr><tr><td>의료기관 확인</td><td>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td><td>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기관 식별, 사업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확인</td></tr></table>※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사업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td><td>168</td></tr>
</table>

구분	현행	개정	쪽수

현행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철회 가능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일차의료만성질환 관리추진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등), 지역의사회, 보건소, 건강동행센터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호 등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기간

※ 심사 및 평가 기간 포함

개정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철회 가능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소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의원철회 및 변경 사항 등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의원철회 및 변경 사항 등	사업기간*

※ 심사 및 평가 기간 포함

현행

[별지 제8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환자용)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환자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필수 입력사항
※ 아래 시범사업 서비스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 내역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임상검사, 문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검진바우처 검사	질환별 검사 - 고혈압 : 지질검사 4종, 심전도검사 - 당뇨병 : 지질검사 4종, 알부민뇨, 당화혈색소(2회)

개정

[별지 제8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환자용)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환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필수 입력사항
※ 아래 시범사업 서비스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 내역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임상검사, 문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검진바우처 검사	질환별 검사항목 - 고혈압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당뇨병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소디움, 당화혈색소(4회),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복합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당화혈색소(4회),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171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
<td></td>
<td>
<table>
<tr><td></td><td></td></tr>
<tr><td rowspan="3">환자관리</td><td>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td></tr>
<tr><td>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등</td></tr>
<tr><td>맞춤형 건강 상담</td></tr>
<tr><td>점검 및 평가</td><td>건강 관리목표 달성여부 등 포괄 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td></tr>
<tr><td>안내 서비스</td><td>전화 및 SMS서비스
※ 의료기관 진료예약 일정, 연계기관 의뢰 시 방문 일정 등의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입니다.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td></tr>
</table>
위와 같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td>
<td>
<table>
<tr><td></td><td><u>* 의료진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검사항목 실시</u></td></tr>
<tr><td rowspan="3">환자관리</td><td>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td></tr>
<tr><td>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등</td></tr>
<tr><td>맞춤형 건강 상담</td></tr>
<tr><td>점검 및 평가</td><td>건강 관리목표 달성여부 등 포괄 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td></tr>
<tr><td>안내 서비스</td><td>전화 및 SMS서비스
※ 의료기관 진료예약 일정, 연계기관 의뢰 시 방문 일정 등의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입니다.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td></tr>
</table>
위와 같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td>
<td></td>
</tr>
<tr>
<td></td>
<td>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 사업 :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u>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table>
<tr><td>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td><td colspan="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td></tr>
<tr><td rowspan="2">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항목)</td><td>개인 정보</td><td>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외국인여부, 의원 차트번호, 등록번호)</td></tr>
<tr><td>민감 정보</td><td><u>건강정보(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검사결과, 합병증,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종류 및 횟수)</u></td></tr>
<tr><td>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td><td colspan="2">5년</td></tr>
</table>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u>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u> 참여 신청자로,
</td>
<td>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 사업 :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u>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table>
<tr><td>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td><td colspan="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td></tr>
<tr><td rowspan="2">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항목)</td><td>개인 정보</td><td>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외국인여부, 의원 차트번호, 등록번호)</td></tr>
<tr><td><u>민감 정보</u></td><td><u>건강정보(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검사결과, 합병증,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자가측정 전송정보 등)</u></td></tr>
<tr><td>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td><td colspan="2">5년</td></tr>
</table>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u>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u>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td>
<td>172</td>
</tr>
</table>

구분	현행	개정	쪽수

개인정보호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관리 및 평가,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소, 건강동행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외국인여부, 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종류 및 횟수	5년간

※ 귀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 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관리 및 평가,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추진단 (질병관리청, 한국건강 증진 개발원 등), 보건소	사업 운영 및 평가,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외국인여부, 연락처, **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진료내역*, 교육·상담 결과 등**	사업기간**

* 진료내역: 포괄평가 및 계획, 검사이력, 케어플랜, 대상자 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문자발송 및 전화 상담 내역, 검사 내역 및 결과(바우처 검사 포함), 서비스 연계 · 조정내역 등 포함

** 심사 및 평가 기간 포함

※ 귀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td><td>
☐ 동의함 ☐ 동의 안함

라.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table>
<tr><td rowspan="2">법정
대리인</td><td>성명</td><td>(인)</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td><td></td><td>주소</td><td></td></tr>
</table>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td><td>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td><td></td></tr>
<tr><td></td><td>〈신규〉</td><td>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환자용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만 14세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 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table>
<tr><td>**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td><td colspan="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td></tr>
<tr><td rowspan="2">**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항목)**</td><td>개인정보</td><td>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외국인 여부, 의원 챠트번호, 등록번호)</td></tr>
<tr><td>**민감정보**</td><td>**건강정보(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검사결과, 합병증,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자가측정 전송정보 등)**</td></tr>
<tr><td>**개인정보 보유**</td><td colspan="2">**5년**</td></tr>
</table>
</td><td>175</td></tr>
</table>

구분	현행	개정	쪽수

및 이용기간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관리 및 평가,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추진단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소	사업 운영 및 평가,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외국인여부, 연락처, **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진료내역*, 교육·상담 결과 등**	**사업기간****

구분	현행	개정	쪽수

개정

* 진료내역: 포괄평가 및 계획, 검사이력, 케어플랜, 대상자 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문자발송 및 전화상담 내역, 검사 내역 및 결과(바우처 검사 포함), 서비스 연계 · 조정내역 등 포함

** 심사 및 평가 기간 포함

※ 귀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현행

[별지 제11호 서식] 고혈압, 당뇨병 환자 문진표(예시)

고혈압, 당뇨병 문진표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관련 문항
1.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경우 아래 상세 병력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혈압, 당뇨병 환자 문진표(예시)

고혈압, 당뇨병 문진표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관련 문항
1.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경우 아래 상세 병력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쪽수: 178

구분	현행	개정	쪽수

현행

	고혈압	당뇨병
유병기간	________ 년	________ 년
약물 치료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치료약물 : ________	치료약물 : ________
약물 부작용 여부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혈압/혈당 조절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이십니까?

항목	내용
뇌질환	☐ 뇌졸중 ☐ 일과성 허혈 발작 ☐ 혈관성 치매
심장질환	☐ 심근경색 ☐ 협심증 ☐ 심부전
혈관질환	☐ 대동맥질환(대동맥 박리, 협착, 확장) ☐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	☐ 만성콩팥병(3기 이상) ☐ 신대체요법
대사질환	☐ 이상지질혈증
안과질환	☐ (고혈압성/당뇨병성) 망막증 ☐ 실명
신경질환	☐ 말초신경병증(자율신경병증)
족부병변	☐ 하지절단 ☐ 당뇨병성 족부병변
기타	☐ 기관지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류마티스 질환 ☐ 암

3.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 고혈압 ☐ 당뇨병
☐ 뇌질환 :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4. 최근 2주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V표 해주세요.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기분이 우울한가?

※ 약물복용력

5. 아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체크해주세요

☐ 스테로이드성 약제 ☐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 면역억제제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제 ☐ 항우울제 ☐ 항히스타민제
☐ 피임약 ☐ 여성호르몬
☐ 부신스테로이드호르몬 ☐ 한약제 (감초, 마황)

※ 흡연 관련 문항

6-1.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7번 문항)
② 예, 지금은 끊었음 (☞ 6-2번 문항)
③ 예, 현재도 흡연 중 (☞ 6-3번 문항)
6-2. 과거에 흡연을 하다가 현재는 끊으셨다면 언제 끊으셨습니까?
________ 년 전 (또는 ________ 년도)
6-3. 과거에 흡연을 하신, 또는 현재에 흡연을 하시는 하루 평균 흡연량과 총 흡연 기간을 기록해주세요
- 하루 평균 흡연량 (갑)
- 담배 피우신 총 기간 (총 년)

※ 음주 관련 문항

7-1.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7-2.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잔)
(※ 술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고혈압, 당뇨병 환자 공통)

개정

	고혈압	당뇨병
유병기간	________ 년	________ 년
약물 치료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치료약물 : ________	치료약물 : ________
약물 부작용 여부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혈압/혈당 조절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이십니까?

항목	내용
뇌질환	☐ 뇌졸중 ☐ 일과성 허혈 발작 ☐ 혈관성 치매
심장질환	☐ 심근경색 ☐ 협심증 ☐ 심부전
혈관질환	☐ 대동맥질환(대동맥 박리, 협착, 확장) ☐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	☐ 만성콩팥병(3기 이상) ☐ 신대체요법
대사질환	☐ 이상지질혈증
안과질환	☐ (고혈압성/당뇨병성) 망막증 ☐ 실명
신경질환	☐ 말초신경병증(자율신경병증)
족부병변	☐ 하지절단 ☐ 당뇨병성 족부병변
기타	☐ 기관지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류마티스 질환 ☐ 암

2-1. 이차성 고혈압 가능성에 체크해주세요

☐ 있음	☐ 없음	☐ 미상

3.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 고혈압 ☐ 당뇨병
☐ 뇌질환 :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4. 최근 2주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V표 해주세요.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기분이 우울한가?

※ 약물복용력

5-1. 아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체크해주세요

☐ 스테로이드성 약제 ☐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 면역억제제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제 ☐ 항우울제 ☐ 항히스타민제
☐ 피임약 ☐ 여성호르몬
☐ 부신스테로이드호르몬 ☐ 한약제 (감초, 마황)

※ 흡연 관련 문항

6-1.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7번 문항)
② 예, 지금은 끊었음 (☞ 6-2번 문항)
③ 예, 현재도 흡연 중 (☞ 6-3번 문항)
6-2. 과거에 흡연을 하다가 현재는 끊으셨다면 언제 끊으셨습니까? ________ 년 전 (또는 ________ 년도)
6-3. 과거에 흡연을 하신, 또는 현재에 흡연을 하시는 하루 평균 흡연량과 총 흡연 기간을 기록해주세요
- 하루 평균 흡연량 (갑)
- 담배 피우신 총 기간 (총 년)

※ 음주 관련 문항

7-1.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7-2.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잔)
(※ 술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고혈압, 당뇨병 환자 공통)

구분	현행	개정	쪽수

현행

8-1.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십니까? ☐ 예 ☐ 아니오
8-2.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식사량이 많은 편이십니까? ☐ 예 ☐ 아니오
8-3. 튀김 음식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4. 국이나 찌개 섭취 시 국물을 위주로 섭취하십니까? ☐ 예 ☐ 아니오
8-5.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여 드시거나 젓갈류를 주 1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당뇨병 환자에 해당)

8-6. 설탕 등 단순당 섭취가 많으신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7. 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감자, 고구마, 면류 등을 주 2회 이상 드십니까? ☐ 예 ☐ 아니오
8-8. 육류, 생선류 등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 섭취량의 15% 미만 또는 주4회 미만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

9-1.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10번 문항)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2회 이상)

9-2.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 운동(덤벨 등)

9-3. 운동시간 : ☐ 150분/주 이하 ☐ 150분/주 이상 ☐ 180분/주 이상

※ 수면 관련 문항

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V표 해주세요. (☐ 수면무호흡증 진단 ☐ 코골이 ☐ 주중 졸림 현상)

※ 신체계측

11. 키 _________ cm 12. 몸무게 _________ kg 13. 허리둘레 _________ cm

※ 혈압 및 맥박 측정

구분	왼팔			오른팔		
	수축기	이완기	맥박	수축기	이완기	맥박
1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2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3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개정

8-1.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아침 식사를 거르십니까? ☐ 예 ☐ 아니오
8-2.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식사량이 많은 편이십니까? ☐ 예 ☐ 아니오
8-3. 튀김 음식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4. 국이나 찌개 섭취 시 국물을 위주로 섭취하십니까? ☐ 예 ☐ 아니오
8-5.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여 드시거나 젓갈류를 주 1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당뇨병 환자에 해당)

8-6. 설탕 등 단순당 섭취가 많으신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7. 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감자, 고구마, 면류 등을 주 2회 이상 드십니까? ☐ 예 ☐ 아니오
8-8. 육류, 생선류 등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 섭취량의 15% 미만 또는 주4회 미만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

9-1.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10번 문항)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2회 이상)
9-2.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 운동(덤벨 등)
9-3. 운동시간 : ☐ 150분/주 이하 ☐ 150분/주 이상 ☐ 180분/주 이상

※ 수면 관련 문항

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V표 해주세요. (☐ 수면무호흡증 진단 ☐ 코골이 ☐ 주중 졸림 현상)

※ 예방접종력 관련 문항

11.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접종 ☐ 미접종 ☐ 미상
12. 폐렴사슬알균 백신 접종 ☐ 접종 ☐ 미접종 ☐ 미상

※ 신체계측

11. 키 _________ cm 12. 몸무게 _________ kg
13. 허리둘레 _________ cm

※ 혈압 및 맥박 측정

구분	왼팔			오른팔		
	수축기	이완기	맥박	수축기	이완기	맥박
1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2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3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th><th>쪽수</th></tr>
<tr><td></td><td>[별지 제12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u>
<u>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u>

본 (   )의원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철회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철회 의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시범사업 서비스 중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철회 사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철회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의원 원장 _____ 서명 (인)

________ 지역의사회장 귀하</td><td>[별지 제12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u>
<u>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u>

본 (   )의원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철회를 신청합니다.
<u>- 철회 사유:</u>

<유의사항>
▶ 철회 의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시범사업 서비스 중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철회 사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철회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의원 원장 _____ 서명 (인)

________ 지역의사회장 귀하</td><td>180</td></tr>
<tr><td></td><td>[별지 제14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td><td>[별지 제14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td><td>182</td></tr>
</table>

구분	현행	개정	쪽수
	(현행 서식 아래 참조)	(개정 서식 아래 참조)	

현행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u>

의원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본 (   )의원은 아래와 같이 기관정보가 변경되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의원 원장______서명 (인)

_________ 지역의사회장 귀하

개정

<u>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u>

의원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본 (   )의원은 아래와 같이 기관정보가 변경되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u>*대표자 변경 시 새로운 대표자가 참여의원 변경신청서에 서명 후 제출(시범사업 유지에 동의함을 확인)</u>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의원 원장______서명 (인)

_________ 지역의사회장 귀하

Chapter 01

사업 개요

Ⅰ. 개요
Ⅱ. 추진체계
Ⅲ. 참여기관 선정
Ⅳ. 참여 철회방법

사업 개요

Ⅰ 개요

1.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심각**

- 만성질환자는 1,880만 명(전체 인구의 36.3%), 만성질환 진료비는 34.5조원(고혈압·당뇨병 6.4조원)으로 전체 진료비(86.5조원)의 39%임

  * 만성질환진료비 비중(건보) 26.8%('03) → 32.9%('07) → 40%('19)

표 01 2015년-2019년 만성질환 진료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진료실인원(천 명)					진료비(억 원)				
	2015년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연평균	2015년	2018년	2019년	전년 대비	연평균
계	16,062	18,013	18,801	4.4	4.0	233,583	311,259	345,297	10.9	10.3
고혈압	5,706	6,310	6,534	3.6	3.4	28,542	33,329	36,516	9.6	6.4
당뇨병	2,522	3,043	3,224	6.0	6.3	18,170	24,474	27,393	11.9	10.8
심장질환	1,314	1,528	1,609	5.3	5.2	17,947	26,085	29,427	12.8	13.2
대뇌혈관질환	880	855	1,046	8.2	4.4	23,766	27,867	31,287	12.3	7.1
악성신생물	1,349	1,602	1,686	5.3	5.7	51,772	74,917	83,538	11.5	12.7
간의질환	1,493	1,771	1,957	10.5	7.0	7,994	10,202	10,810	6.0	7.8
정신 및 행동장애	2,628	3,144	3,348	6.5	6.2	30,838	41,092	44,444	8.2	9.6
호흡기결핵	72	52	47	-9.6	-10.0	1,120	1,452	1,505	3.7	7.7
신경계질환	2,742	3,094	3,279	6.0	4.6	16,697	25,500	29,263	14.8	15.1
갑상선의 장애	1,201	1,375	1,448	5.3	4.8	2,654	3,385	3,697	9.2	8.6
만성신장병	172	228	251	9.8	9.8	15,671	19,472	21,019	7.9	7.6
관절염	4,492	4,857	5,019	3.3	2.8	18,412	26,396	26,396	12.4	9.4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질환 중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진료비 증가 추세**
  - 생활환경의 변화, 비만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및 당뇨병의 환자수 증가 보다 진료비 증가가 더 가파르게 증가함
  -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진료비는 '19년 6조 3,909억원 규모로 '18년에 3조 5조 7,803원에 비해 36.9%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고혈압은 6.4%, 당뇨병은 10.8% 진료비가 증가 추세임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수준 저조**
  - 30~49세 젊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이 모두 50% 미만이며, 당화혈색소 8.0% 이상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19.1%, 당뇨병 환자 중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조절되고 있는 환자는 11.5%에 불과함
    * 고혈압·당뇨병 등 지속적 관리 미흡(혈압관리율 44%, 혈당관리율(당화혈색소6.5%이하) 28.3%)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효율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50대 성인의 고혈압 관리대책 및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과 조절률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경증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개선기반 마련** 필요
  -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이 미흡하여, 경증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의원급이 아닌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외래 만성질환 진료비 중 의원급 비중감소(41.6%('07) → 38.3%('14) → 37.8%('16)
  -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입원비중*이 높고, 당뇨병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어** 일차의료시스템 개선과 일차의료 질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됨
    * (OECD 평균) 인구 10만명 당 고혈압 78명, 당뇨병 137명,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고혈압 130명, 당뇨병 281명
    ** (OECD 평균) 당뇨병 8.1일, (우리나라) 당뇨병 16.5일

2. 그 간 만성질환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07.9월 대구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시작*
  - ('09) 광명시 참여 → ('10) 경기 남양주시 등 4개소(보건소 3개 지역) 추가 → ('12) 서울 성동구 등 20개 보건소(15개 지역) 추가
    - * '10년 대구광역시 사업종료
    - * 현재 전국 25개 보건소(국비 50%), 6개 보건소(지방비 100%)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12년 4월 시행 → '17. 12월 7,782개 의원 참여 → '18.6월 7,804개소 참여
  - * 사업참여율 ('17) 59.3% → ('18) 58.4%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3월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작 → '17.11월 16개 지역**으로 확대, 행위별 서비스 비용 지불체계 변경***
  - *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 ** 13개 지역 추가 선정, 전북 무주군 사업종료
  - *** 공단 사업비 → 건강보험 수가
  - ('14) 건강동행센터 4개소 → '18.5월 건보공단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치 운영(7개소)
  - ('18.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종료

-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 '16. 9월 시범사업 시작, 전국 1,870개 의원 참여 → ('17.10월) 1,165개소(41,702명) → ('18.7월) 1,173개소(51,000명)
  - ('16.6월) 시범사업 도입 건정심 보고 → ('17.5월) 급여 포털 연계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 ('18.12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종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근거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17.5월)
  -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①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1-3.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19.5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1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
  -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모델 개발

<table>
<tr><th colspan="2">기존 시범사업 문제점</th><th></th><th>시범사업 개선사항</th></tr>
<tr><td>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td><td>• 케어플랜 수립 이후 지속적인 환자관리 부재
• 생활습관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한계
•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획일화
• 교육 콘텐츠의 다양성 및 활용성 부족
• 합병증 관리체계 및 타 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 부재</td><td rowspan="3">➡</td><td rowspan="3">• 환자관리 활동 강화 및 구체화
• 환자관리료 수가 도입
• 보건소·공단 연계 체계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
• 교육 제공 프로세스의 현장 활용성 및 자율성 강화
• 환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 합병증 관리를 위한 활동 구체화
• 체계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검진바우처 제공 등 환자 인센티브 제공
• 대상자관리를 통해 사업 중복 해소 및 만성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td></tr>
<tr><td>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td><td>• 비대면 관리의 한계로 지속관리율 저하
•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 부재 및 활동의 구체성 모호
• 의원 대상 평가체계 부재로 서비스 질 관리 미흡
• 지역자원과의 연계 체계 부재</td></tr>
<tr><td>총괄</td><td>• 환자 인센티브 부재
• 대상자의 사업 중복참여</td></tr>
</table>

그림 01 시범사업 간 서비스 비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18.12)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9.초~)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16~'18.12)
[케어플랜 수립] • 1년 단위	⇨	[케어플랜 수립] • 1년 단위, 항목 조정·개편	⇦	[케어플랜 수립] • 1개월 단위
[교육상담] • 기본교육 (연8회, 각 10분 이상)	⇨	[교육상담] • 초회교육·상담(연1회, 30분 이상) • 기본교육·상담(연8회, 각 10분 이상) • 집중교육·상담(연1회, 30분 이상)		
		[환자관리] • 환자 모니터링(혈당·혈압/합병증, 약물복용 등) • 서비스 연계·조정 • 의사·코디 협력활동	⇦	[환자관리] • 환자 모니터링 (혈당/혈압 수치 등) • 비대면 환자관리 (앱, 문자, 전화, 메일)
[점검평가] • 참여중단자 대상 • 계획이행, 건강상태 점검	⇨	[점검 및 평가] • 환자관리상태 중간점검 • 케어플랜 목표달성도 점검 •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케어플랜 수정·보완		

3. 기본방향

- 기존 4개의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의 모델, 재정, 전산에 대한 통합 모델 구축 및 운영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1단계('18~'19년) 통합
  - '20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 예정

- **(질환별 서비스 모형 분리)** 근거 기반 포괄적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프로토콜을 분리하여 모형 개발**

-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의사-케어 코디네이터 등 팀 협력(team approach)을 통한 환자관리 활동 강화

4.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 고혈압 및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만족도 증가 및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
  - 근거기반 진료지침(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에 따른 치료를 통해 조절률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

- **사업목표**
  - 근거 기반 진료지침에 따른 환자 진료 및 관리 적용 확대
  - 의사와 케어 코디네이터 간 team-approach 활성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확대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 동네의원 진료환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조절률 향상

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략체계

그림 0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전략 체계도

Ⅱ 추진체계

1.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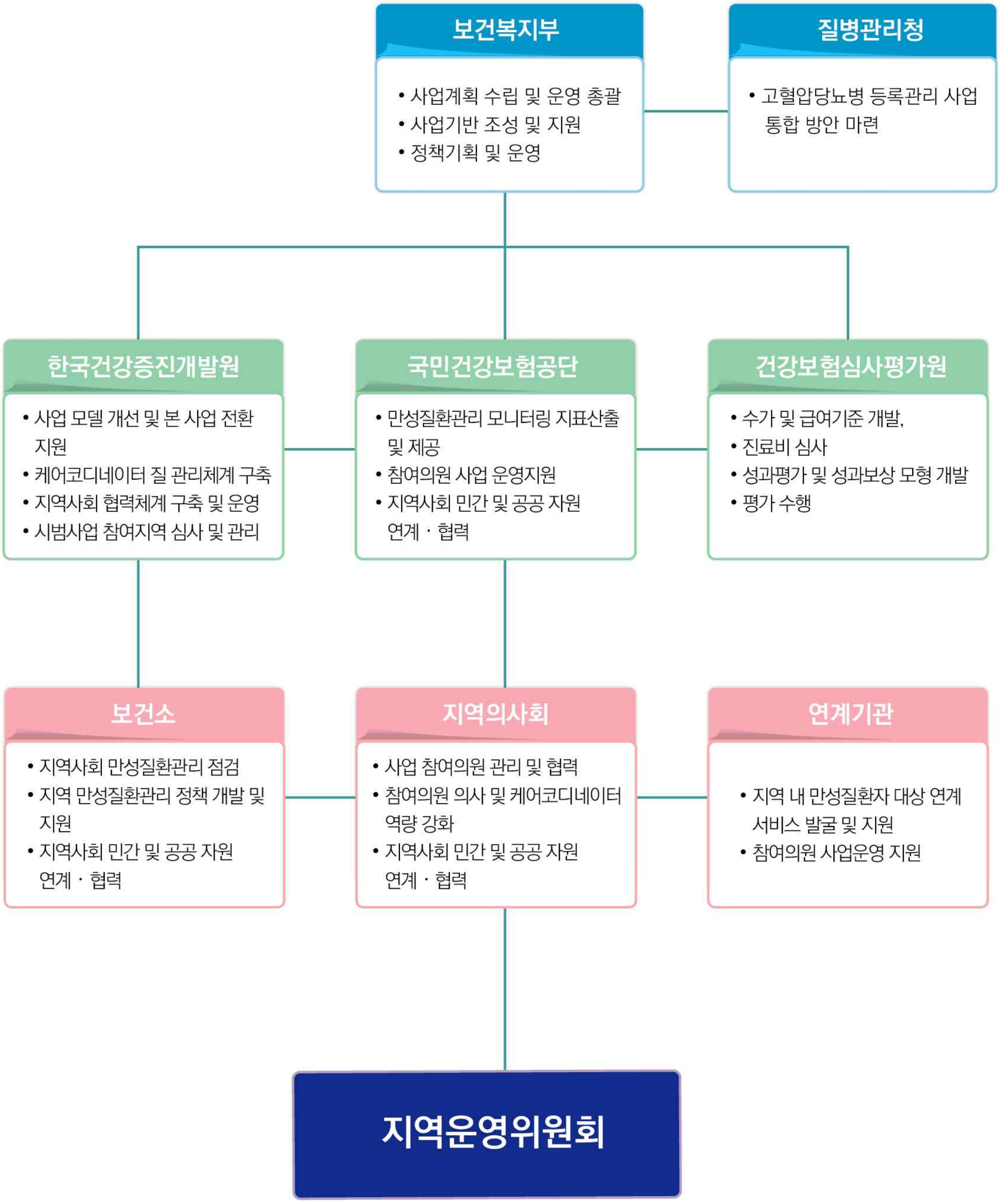

2.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총괄 및 지원
- **(지역의사회)** 사업 참여 의원 관리, 연수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의사 및 참여인력 역량 강화, 효과적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원 간 연계협력 계획 수립
  - 해당 지역 내 안과 등 타 의료기관, 검진기관, 상급병원과의 협업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과의 연계
  - 지역의사회 차원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등
- **(동네의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지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 시·군·구 고혈압, 당뇨병 관리 목표 및 전략 수립
  - 지역의사회 및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 등과 고혈압, 당뇨병 관리 운영위원회 지원
  - 만성질환자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등
-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통합 방안 마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침 개정, 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지역의사회 보건소 연계모형 확산,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 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참여기관·지역사회 연계기관 관리, 건강검진 및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일차의료 현장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팩트시트 제공으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진료비 심사,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 모형 개발, 평가 수행,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
- **(그 외 연계협력기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관련 시설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지지그룹 구성·운영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역간호사회, 지역영양사회, 기타 민간기관 등

3. 시범사업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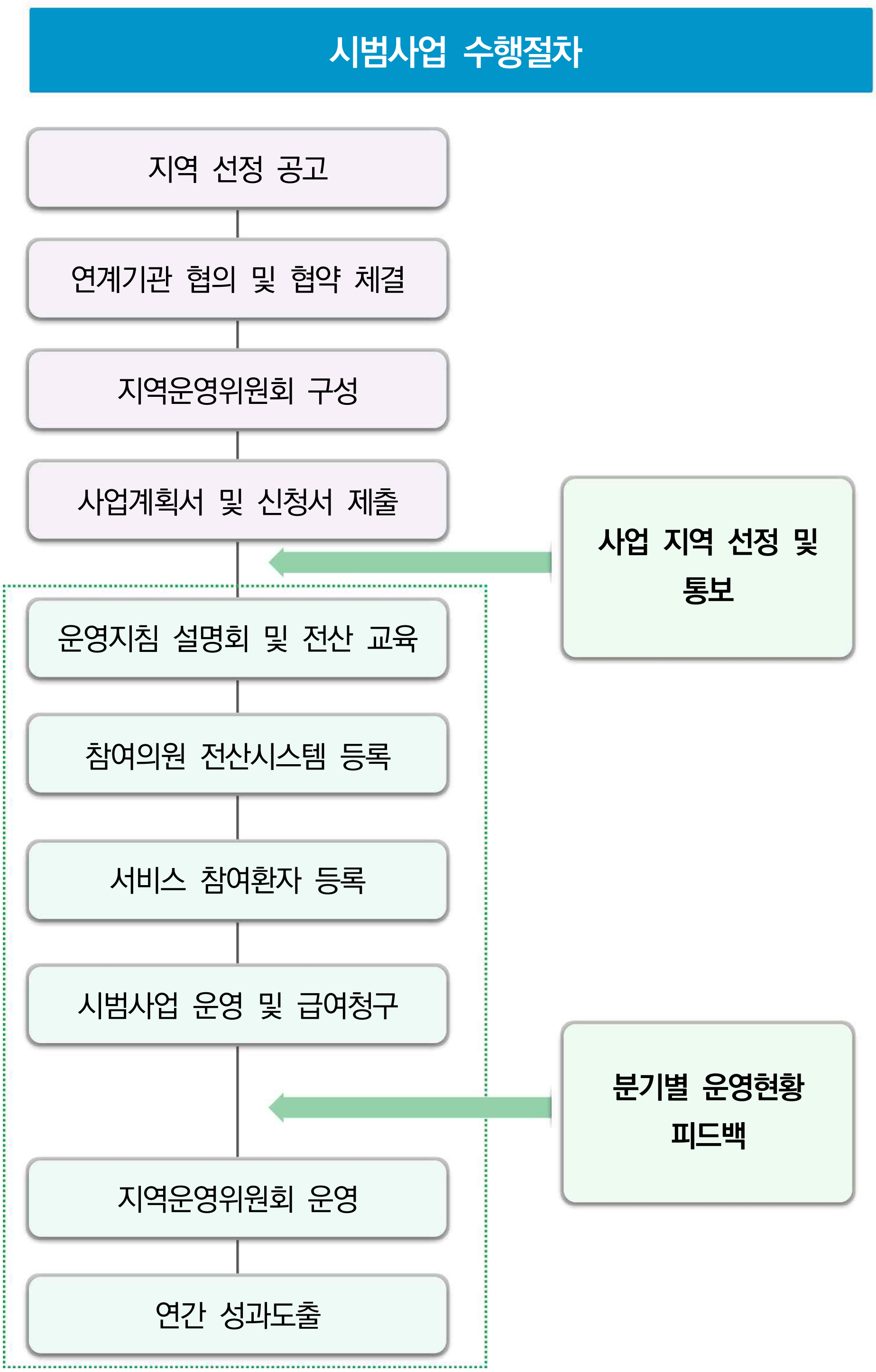
시범사업 수행절차
지역 선정 공고
연계기관 협의 및 협약 체결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사업 지역 선정 및 통보
운영지침 설명회 및 전산 교육
참여의원 전산시스템 등록
서비스 참여환자 등록
시범사업 운영 및 급여청구
분기별 운영현황 피드백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연간 성과도출

Ⅲ 참여기관 선정

1. 신규 지역의사회 참여

- **(사업대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처방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신청주체) 지역의사회**
- **(참여기준)**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관할지역 20개 이상 동네의원이 함께 신청

  * 단, 군 지역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역의 경우 모집 의원 수가 최소 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 필수 체결

    * 업무협약서는 지역의사회 여건에 따라 수정가능(업무협약서 별지 제4호 참조)

  - 기타 지역 내 공공, 민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체육시설(국민체력100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복지기관, 지역간호사회, 지역영양사회 등

- **(공모주기)** 비정기
  - 공모 진행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홈페이지 : http://www.khealth.or.kr/ncd

●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공모 계획 참고

추진절차		주관 기관
사업 공고	사업 참여 신청 안내 (공문 및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지역의사회·연계기관
사업신청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지역의사회
사업신청지역 선정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참여지역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참여지역 통보	최종 참여지역 통보	보건복지부

2. 기존 지역의사회 의원 추가

-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추가를 원하는 기존 참여지역
- **(신청주체) 지역의사회**
- **(참여기준)** 해당지역의 추가 참여의원이 1개 이상일 경우 신청
- **(공모주기)** 상시모집
  - 공모 절차는 추후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홈페이지 게시 및 지역 의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홈페이지 : http://www.khealth.or.kr/ncd

3. 신규 지역 선정방법

- **(심사방법)** 지역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 **(평가위원)** '지역선정심사위원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관련 학회 교수 등 약 10명으로 구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사 예정
- **(심사기준)**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1. 사업계획 적정성	ㅁ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ㅁ지역 만성질환관리 목표 및 추진방안 ㅁ사업 준비의 충실성, 적정성, 담당자 지정 등 추진체계	20점
2.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 방안	ㅁ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연계기관 확보 및 사전 협의 여부 ㅁ연계방식과 협력체계, 의뢰체계 등 운영 계획의 적절성	20점
3. 지역사회 내 협력 방안	ㅁ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ㅁ협력기관 간 모니터링, 평가, 환류, 질 개선 역할분담	30점
4. 사업 추진의지	ㅁ환자관리 지원인력(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노력 ㅁ환자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 인력, 예산 등 확보 여부 ㅁ지역 보건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여부	30점
총계		100점

4. 신규 지역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 결과 공지 및 해당 지역의사회 및 보건소로 선정 통지 공문 발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통보일정)** 선정심사 후 1주일 이내 통보

  ※ 심사결과 통보 시 사업운영지침(전산시스템 활용 안내 포함) 설명회 일정 공지 예정

5. 신규 선정지역 의원 참여방법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지침·전산시스템 설명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의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로그인 후 '일차만성질환' 메뉴에서 '참여기관신청'을 통해 의원참여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서명하여 최종제출

  ※ 해당 서류 제출 이후 업무 메뉴 접속이 가능함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www.mohw.go.kr)·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ncd)·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및 접수방법 안내

-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 (http://sis.nhis.or.kr/index.do) 접속 → 기관사용자 → 일차의료사업 참여기관 → 연계기관 등록 신청 → 직원등록 신청 → 로그인 → 자료실에 신청서류 업로드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참여 신청 가능**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화면〉

【초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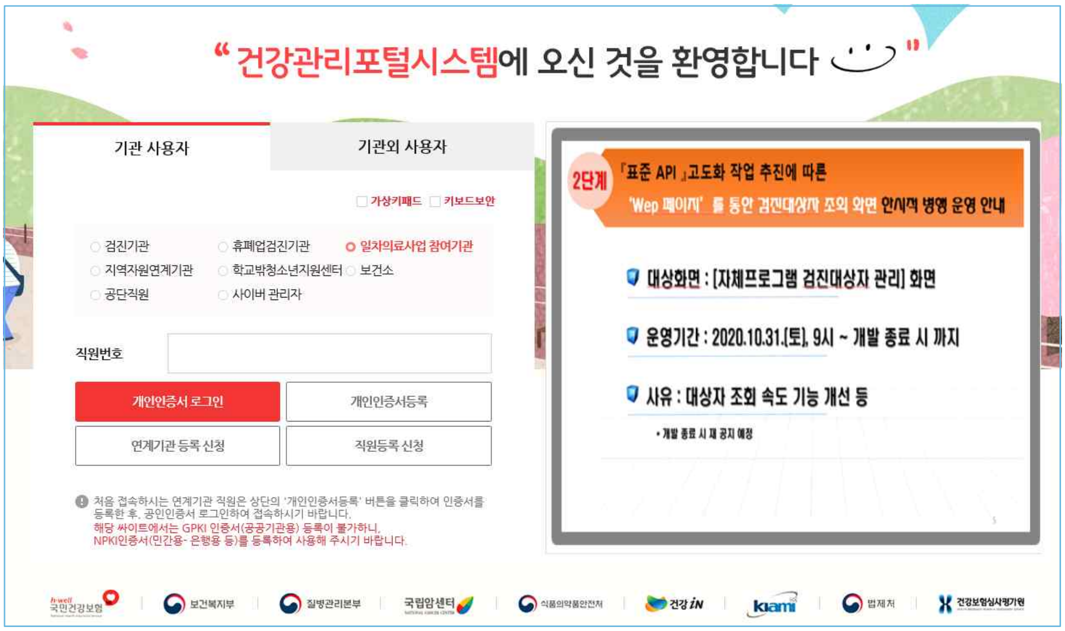

【기관등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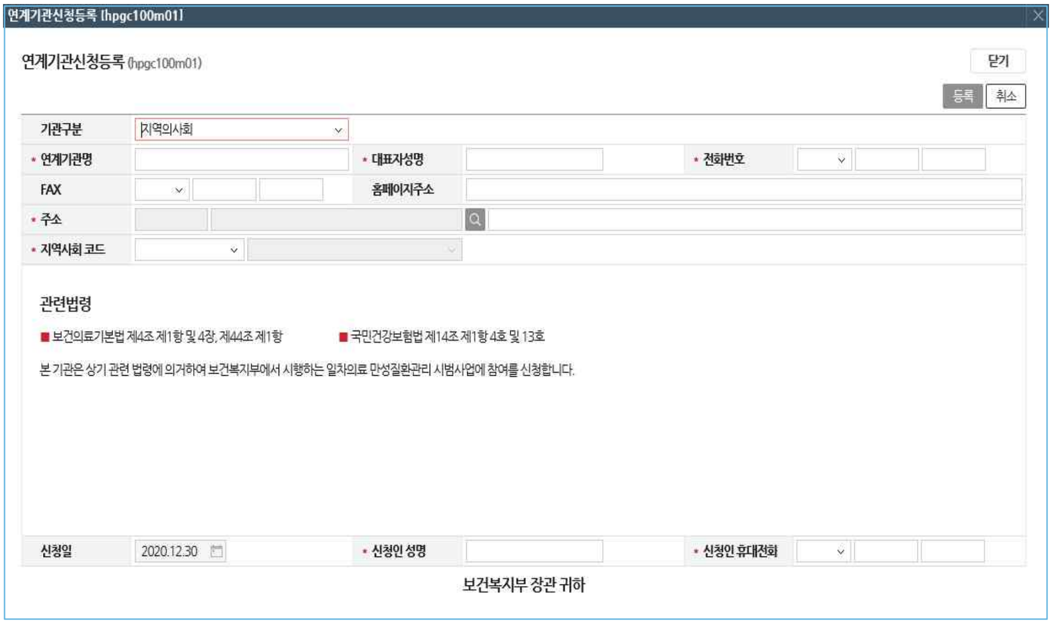

【직원등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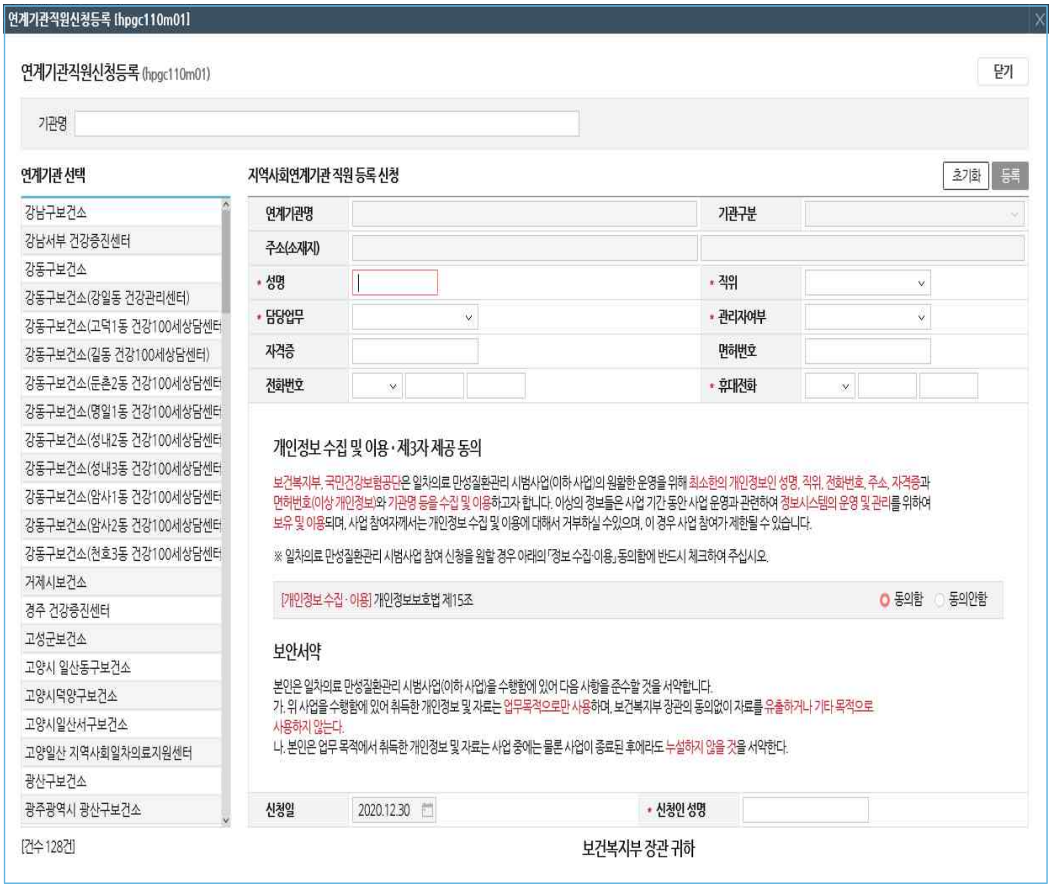

【제출 서류 등록 화면】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외 4부

항목	파일형태
(첨부파일1)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한글파일
(첨부파일2) 시범사업 참여 계획서	한글파일
(첨부파일3) 업무협약서	한글 또는 PDF 파일
(첨부파일4) 보안서약서(지역의사회장)	한글 또는 PDF 파일
(첨부파일5) 참여의원 현황	한글 또는 엑셀 파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추진경과

- (1차, '18.12월) 기존 시범사업* 참여지역(89개 지역)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지역
- (2·3차, '19.2·3월) 신규지역* 및 기존 선정지역 중 참여의원 추가
  * 2, 3차 신규지역 공모 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계획을 표기하도록 하였음
- (4차, '19.5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대상
- (5차 예정) 신규지역 및 기존 선정지역 중 참여의원 추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현황 〉

구분	시도	선정지역
1	서울(22)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	부산(8)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3	대구(6)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4	인천(5)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5	대전(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6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7	경기(10)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8	강원(1)	원주시
9	충북(1)	청주시
10	충남(3)	서산시, 천안시, 홍성군
11	전북(3)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12	전남(2)	순천시, 무안군
13	경북(3)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14	경남(1)	창원시

Ⅳ 참여 철회방법

1. 철회방법

- **(대상)**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폐업 의원의 경우 폐업 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동 철회
- **(방법)** 지역의사회는 철회를 희망하는 의원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를 받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신청서(지역의사회용)'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FAX(033-749-6398) 접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 : (부록2) 별지 제11호 서식 참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지역의사회용) : (부록2) 별지 제12호 서식 참고
-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결과통보)** 지역의사회 담당자 이메일로 철회승인 공문 회신

2. 유의사항

- 참여 철회한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음
- 철회한 의원의 시범사업 등록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문자 발송하므로, 철회한 의원은 등록 환자에게 상세한 안내 필요

〈안내 문자 내용〉

▶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참여하고 계시던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 악화 방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환자의 연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의료 서비스와 생활습관을 교정하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철회에 대한 사항은 해당의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3. 철회절차

순서	주체	내용 및 절차
①	의료기관	지역의사회로 철회요청 의료기관용 철회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지역의사회
②	지역의사회	철회를 희망하는 의원명단 취합 의원의 철회 신청서를 받아 지역의사회용 철회신청서 작성(별지 제12호 서식)
③	지역의사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철회신청(별지 제11호, 12호) ※ 관련서류 - 별지 제11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 신청서(의료기관용) - 별지 제12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 신청서(지역의사회용)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철회 관련서류 보건복지부 송부(팩스, 메일 등)
⑤	보건복지부	철회 승인 공문을 지역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⑥	국민건강보험공단	철회한 의원의 시범사업 참여환자에게 해당 사실 안내(문자전송)
⑦	철회의원	시범사업 참여환자에게 설명

V 참여기관 정보 변경 방법

1. 개요

- **(대상)**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중 소재지 이전, 개설자(대표자) 변경 등으로 참여의원 변경을 하여야 하는 요양기관

- **(방법)**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 작성 후 소속 지역 의사회에 접수 → 지역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지역의사회용)'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FAX(033-749-6398) 접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신청서(의료기관용) : (부록2)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변경신청 의원 현황표 : (부록2) 별지 제14호 서식 참고

  ※ 대표자 변경 시 새로운 대표자가 참여의원 변경신청서에 서명 후 제출(시범사업 유지에 동의함을 확인)

- **(신청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결과통보)** 지역의사회 담당자 이메일로 변경승인 공문 회신

2. 시범사업 변경 대상

- 요양기관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없이 다른 시범사업 선정지역으로 주소가 이전하는 경우

- 개설자(대표자) 변경
  - 동일한 소재지에서 새로운 요양기관 개설자가 시범사업을 승계를 희망할 경우 또는 공동개설자간 대표자 변경인 경우

-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변경

3. 유의사항

- 시범사업 등록 환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시범사업 선정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에게 상세한 안내 필요

4. 변경절차

순서	주체	내용 및 절차
①	의료기관	(내용) 지역의사회로 변경 요청 (절차) 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 지역의사회
②	지역의사회	(내용) 변경 대상 의원명단 취합 (절차) 의원의 변경 신청서를 받아 변경신청 의원 현황표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③	지역의사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청(별지 제13호, 14호) ※ 관련서류 - 별지 제13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4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변경신청 의원 현황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변경관련서류 복지부 송부(팩스, 메일 등)
⑤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 공문을 지역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Chapter 02

사업 주요내용

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Ⅲ. 참여인력(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및 교육
Ⅳ. 맞춤형 검진 바우처 안내

Chapter 02

사업 주요내용

I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1. 대상 의원 및 참여조건

- **(사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환자도 신규 등록 필요
- **(의원 별 등록환자수)** 의원 당 500명
  * 의사 2인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동일

2. 사업모형

- 시범사업 모형 : 2개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자율 선택

【모형1】 의원 내 케어 코디네이터 직접 고용

- 동네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여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 케어 코디네이터 자격기준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케어 코디네이터는 의료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의 업무 수행 가능

【모형2】 의사 직접 서비스

- 환자관리 업무,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등을 모두 의사가 직접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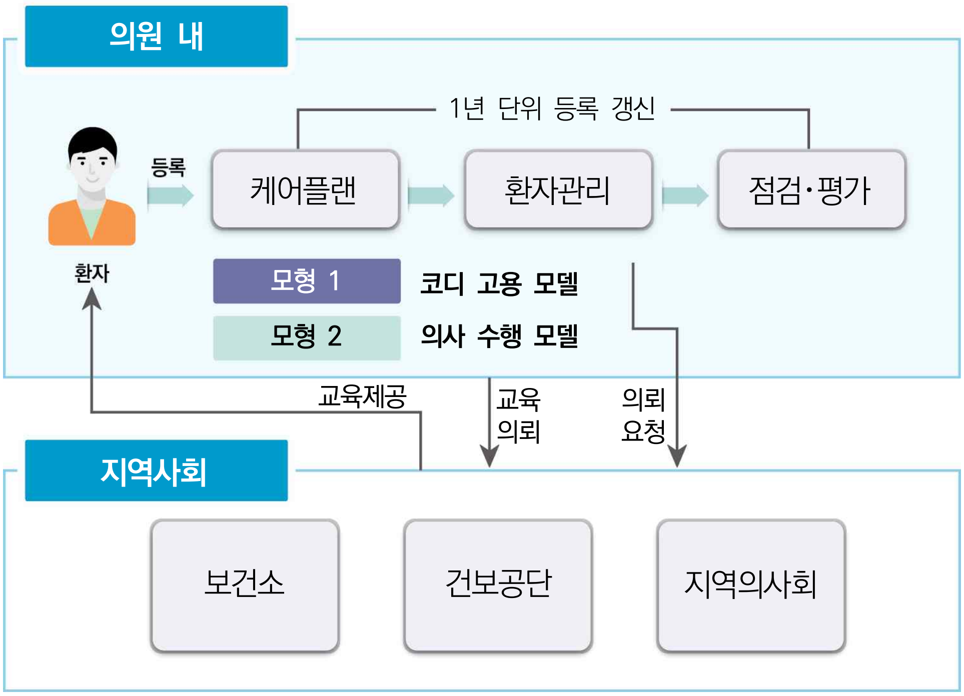
의원 내
1년 단위 등록 갱신
등록
케어플랜
환자관리
점검·평가
환자
모형 1
코디 고용 모델
모형 2
의사 수행 모델
교육제공
교육
의뢰
의뢰
요청
지역사회
보건소
건보공단
지역의사회

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① 환자 등록 → ② 케어플랜 수립 → ③ 환자관리(환자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 ④ 점검 및 평가(중간점검)

- **(환자등록)**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및 개인정보제공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등록

-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의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케어플랜) 수립
  - (집중관리 환자 선별) 환자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라 환자관리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환자를 선별함
    * 집중관리 기준 : 신규 진단 환자, 혈압·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경우,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인슐린요법을 하는 경우,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자관리) 환자의 체계적 질환관리를 위해 내소진료 F/U, 환자모니터링, 교육,** 상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실시
  - **(환자 모니터링)** 비대면으로 혈압 및 혈당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약물복용 및 부작용 발생 유무, 합병증 발생 유무, 생활습관 개선 목표달성 추이 등 환자의 질환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집중관리 환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측정 수치를 확인
  - **(교육·상담)** 교육수행 방법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 민간기관에 의뢰·연계를 통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관련 시설 지원, 영양·운동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환자의 생활습관 관리 활동을 지지
  - 환자관리 내용은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의료진(의사와 케어 코디네이터) 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의**

- **(점검 및 평가)** 환자의 관리계획(케어플랜)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연 2회 중간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기록, 케어플랜 수정·보완

그림 0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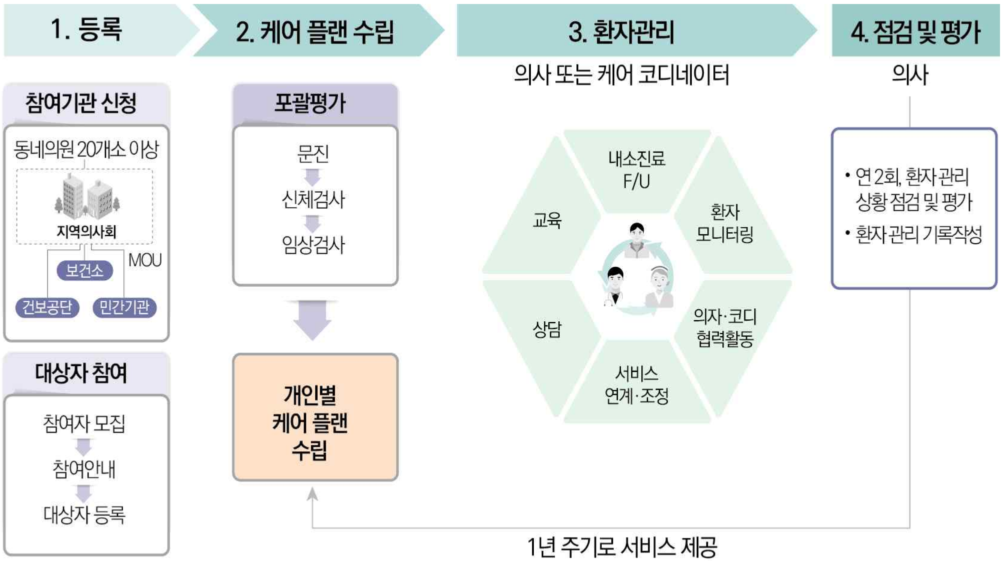

Ⅲ 참여인력(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및 교육)

1.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및 등록절차

- **자격**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간호사,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단독 고용 가능

- **등록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기관 등록/참여인력 등록 의원 인력 현황에는 의원에서 심평원 에 신고한 인력 현황이 조회되며, 조회된 인력 중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선택하여 등록

  ※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단독 고용 가능

- 참여의원에서 기존 인력이 아닌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인력 신고가 선행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는 인력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화면에서 의원 인력현황에 추가 입력이 가능하나, 이는 심평원 등의 인력 신고 내역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신고 필수

2.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Care management)**
  - 환자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
  -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질환이해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상담 제공
  -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의사(또는 케어코디네이터팀)와 공유하며, 다음 진료 예정일까지 환자의 상태를 관리

- **팀기반 진료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Team modulation)**
  - 환자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임상전문가(영양사 등)로 구성된 다학제적인 케어코디네이터팀을 관리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조정
  - 환자 및 보호자와도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

-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연계자로서의 역할(Care coordination)**
  - 지역사회 자원과 의료기관 간의 적절한 진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환자의 의학적 요구 해결

3. 서비스 제공자 교육과정 운영

● **(서비스제공자 온라인 교육과정)**

- (목적) 의사·케어코디네이터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 도모
- (교육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 (교육과정) 총 16차시(공통과정 4차시, 의사 4차시, 간호사 4차시, 영양사 4차시)
  * 직무별 총 8시간 교육이수
- (교육방법) 온라인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은 추후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교육구성) 고혈압·당뇨병 관련 이론 및 일차의료 현장 사례 중심

● **(케어코디네이터 교육과정)**

- (목적)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환자 관리 수행 능력 향상
- (교육대상) 간호사·영양사(케어코디네이터 자격요건)
- (교육과정) 연간 16시간 이상의 기본과정·심화과정
- (교육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구성)
  • (간호사) 고혈압·당뇨병의 병태생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의 의사소통,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사례, 포괄적 건강사정 이론 및 실습 등
  • (영양사) 일차의료 만성질환의 이해, 영양관리의 최신 지견, 특수 상황에서의 영양관리, 영양관리 사례 분석 및 실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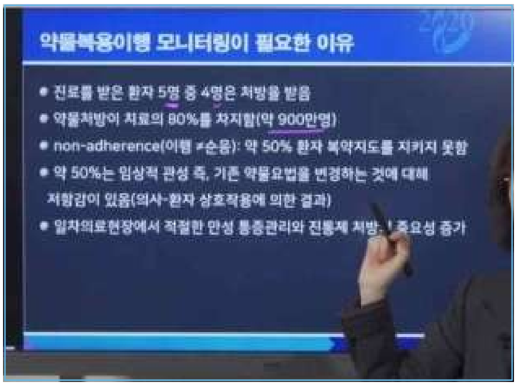

4.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의처

-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원에서는 직종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나 대한영양사협회에 문의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번호	지역	전화번호	번호	지역	전화번호
1	서울, 강원	02-2268-2632	5	광주, 전북	062-222-5025
		02-2268-2631	6	대전, 충북	042-825-0749
		02-2268-2633	7	충남	041-557-6347
2	부산, 울산	051-442-3824~5	8	경기	031-302-9520
3	대구, 경북	053-756-8469	9	전남	061-801-7799
4	인천, 제주	032-441-2926	10	경남	055-281-5522

-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홈페이지 : https://www.dietitian.or.kr

Ⅳ 맞춤형 검진 바우처 안내

1. 맞춤형 검진 바우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대상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질환별 해당 검사항목 검사 실시 (연 1회 / 단, 지질검사 4종은 2회, 당화혈색소는 4회 제공하나, 고혈압 지질검사는 1회 이상 시 최대 2회 검사 가능)
  - * 검진 바우처 항목은 고혈압·당뇨병 임상진료지침 권고 항목에 근거함
- (사업시기) 2021. 1. 26.까지 검진항목은 고혈압의 경우 지질검사 4종, 심전도, 당뇨병의 경우 지질검사 4종, 알부민뇨, 당화혈색소였으나, 2021. 1. 27.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실시

표 02 질환별 검진 바우처 검사 항목

구 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 당뇨병
검사항목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소디움,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2. 사업 목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으로 검진 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합병증 예방
-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활성화 유인

3. 실시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1항 및 제4항, 제44조 제1항
- 국정과제(44-③) 예방적 건강관리

4. 주요 내용

■ 사업 대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상병코드 : 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E14)

■ 사업 내용

- **(검사기관) 등록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 **(검사항목)** * 검사항목 별 개별 청구 가능

구 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 당뇨병
검사항목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소디움, 포타슘,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검사횟수)** 검사항목별 연 1회 실시
  - 단, 지질검사 4종 2회, 당화혈색소 4회 가능
  - 고혈압 지질검사는 1회 실시 후 검사결과 이상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회 추가 검사 가능
  - 고혈압 환자는 요 일반검사에서 단백뇨 음성 시 알부민뇨 검사 실시 가능
- **(검사시기)** 케어플랜 수립단계부터 검사를 제공하며,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시기 조정 가능
  - 검사는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목별 다른 날도 실시 가능 (단, 동일한 검체를 이용하는 지질검사 4종은 같은 날 실시해야 함)
- **(본인부담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 적용
  - 건강보험대상자 : 10%
  - 차상위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면제

- **(검사비용 지원)**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중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10%)을 공단에서 지원

5. 운영 방식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케어플랜 수립단계부터 검사를 제공하며,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시기 조정 가능
    ※ 단, 검진바우처 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 목적의 내원은 지양
  - 당뇨병 환자의 케어플랜 수립 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필수로 하되, 최근 검사 결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시 검사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 합병증 검진바우처 검사 + 사후관리 서비스 (교육, 상담 등)

- (검사 방법)

<table>
<tr><th colspan="2">검사항목</th><th>분류번호
(분류코드)</th><th>검 사 방 법</th></tr>
<tr><td colspan="2">총 콜레스테롤</td><td>누261가(D2611)</td><td>정맥혈을 채취하여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td></tr>
<tr><td colspan="2">HDL 콜레스테롤</td><td>누261다(D2613)</td><td>정맥혈을 채취하여 혈액 내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td></tr>
<tr><td colspan="2">TG 중성지방</td><td>누260다(D2263)</td><td>정맥혈을 채취하여 혈액 내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측정한다.</td></tr>
<tr><td colspan="2">LDL 콜레스테롤*</td><td>누261라(D2614)</td><td>정맥혈을 채취하여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td></tr>
<tr><td colspan="2">심전도</td><td>나725(E6541)</td><td>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며, 사지단극유도 및 흉부유도를 포함하여 최저 12유도를 실시한다.</td></tr>
<tr><td colspan="2">전해질
(소디움, 포타슘)</td><td>누280(D2800)</td><td>진공시험관에 채혈하여 검사를 실시한다.</td></tr>
<tr><td rowspan="2">알부민뇨
**</td><td>미량
알부민</td><td>누300(D3002)
누300(D3003)</td><td>소변검체를 채집하여 소변 내 Albumin을 측정한다.</td></tr>
<tr><td>크레아
티닌</td><td>누228가(D2280)</td><td>소변검체를 채집하여 소변 내 크레아티닌을 측정한다.</td></tr>
<tr><td colspan="2">e-GFR***
(혈중 크레아티닌)</td><td>누228가(D2280)</td><td>정맥혈을 채취하여 혈액 내 크레아니틴을 측정하여 도출한다.</td></tr>
</table>

검사항목	분류번호 (분류코드)	검 사 방 법
당화혈색소 (Hb A1c)	누306(D3061) 누306(D3062) 누306(D3063) 누306(D3064) 누306(D3065)	정맥혈 또는 모세혈을 채취하여 혈액 내 당화혈색소를 측정한다.
요 일반검사 4종 요 일반검사 7종 요 일반검사 10종	누225가(D2251) 누225나(D2252) 누225다(D2253)	소변검체를 채집하여 자동분석기 또는 검사지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LDL 콜레스테롤은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 수치로 계산 가능

** 알부민뇨(Albumin Creatinine Ratio): 환자의 임의 요 중 미량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 e-GFR(㎖/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 가능

※ 미량알부민, 당화혈색소, 요일반 검사는 제시된 검사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

- (검사결과 등록) 검사 실시항목별 검사 결과값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일차만성질환/조회/바우처조회 화면
- (급여비용 청구)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전액(100%) 공단부담금 청구
  -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검사비용과 진찰료 등 시범사업 외 진료를 별도 분리하여 청구
    ※ 진찰료 등 시범사업 외 진료는 본인부담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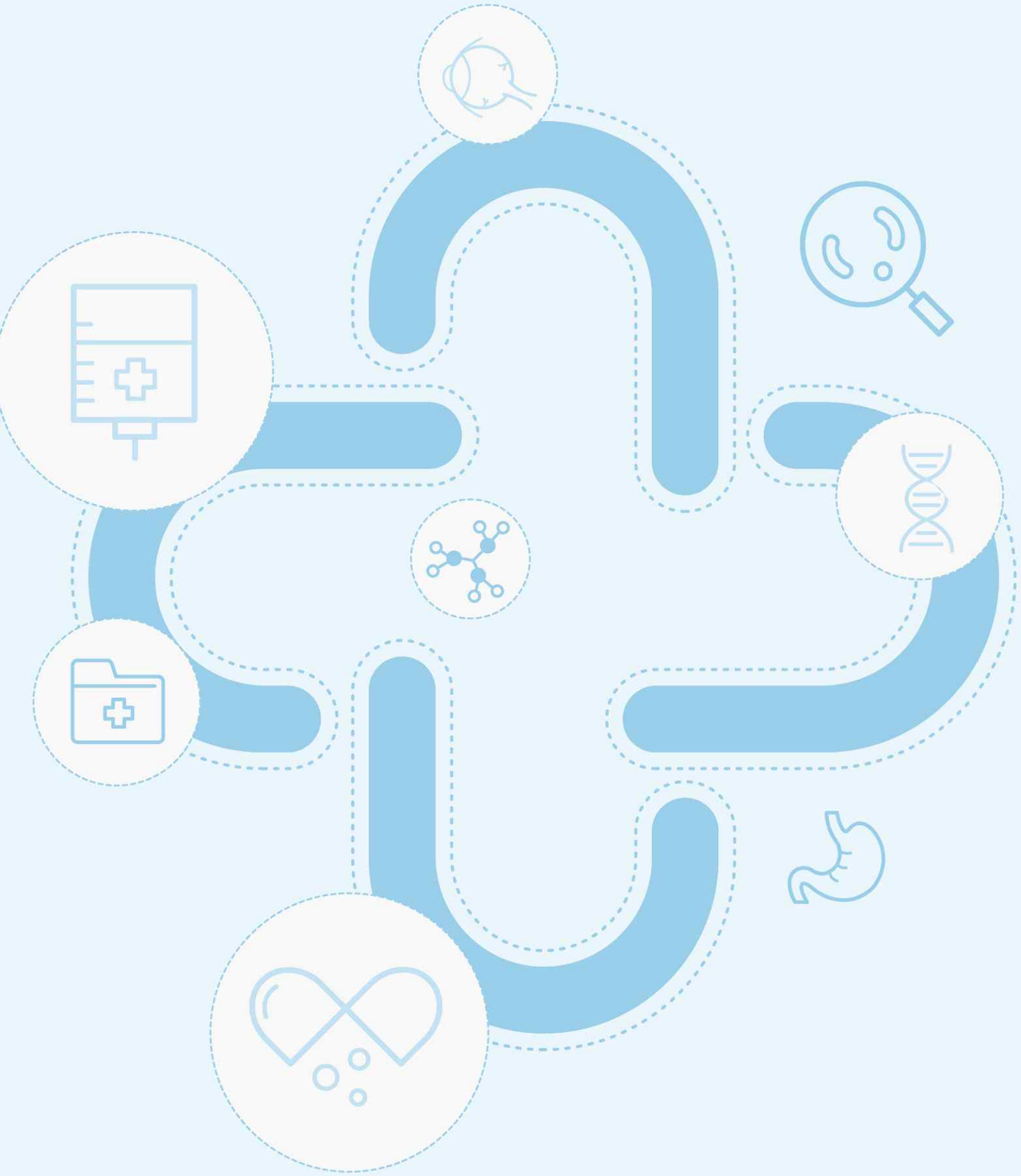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Chapter 03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Ⅱ. 케어플랜 수립
Ⅲ. 환자 관리
Ⅳ. 교육·상담
Ⅴ. 점검 및 평가

Chapter 03

고혈압 관리 서비스 제공

환자 등록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 고혈압 진단·확인 • 사업 참여 신청 • 전산시스템 환자 등록	• 포괄평가(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실시 • 환자 맞춤형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	• 팀접근을 통환 전 주기적 환자관리활동 • 임상수치, 약물복용, 합병증, 생활습관을 모니터링 • 상담·교육을 통한 개선활동 수행	• 중간점검을 통한 케어플랜 목표 달성 추이 확인 •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케어플랜 수정·보완

Ⅰ 환자등록

의원방문	대상자 확인	사업 참여안내	참여신청	대상자 등록
	• 고혈압 환자 진단 또는 확인	• 사업내용, 참여 방법 등 설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 전산 시스템에 환자정보 등록

1. 대상자 확인

● **(사업대상)** 고혈압(질병코드 I10~13, I15)으로 진단된 환자

※ 고혈압과 당뇨병 둘 다 동반한 경우 당뇨병 프로세스에 따름

- (신규진단 환자) 처음 고혈압 진단 받은 환자

※ 가면고혈압, 백의고혈압을 평가하는데 가정혈압, 활동혈압 또는 진료실자동혈압을 측정할 수 있음

- (기 진단 환자) 과거에 고혈압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자

※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환자도 신규 등록 필요

표 03 **혈압의 분류**

혈압 분류	수축기혈압(mmHg)		이완기혈압(mmHg)
정상혈압*	< 120	그리고	< 80
주의혈압	120~129	그리고	< 80
고혈압 전단계	130~139	또는	80~89
고혈압 1기	140~159	또는	90~99
고혈압 2기	≥ 160	또는	≥ 100
수축기 단독 고혈압	≥ 140	그리고	< 90

※ 심뇌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혈압

표 04 **측정 방법에 따른 고혈압의 진단 기준**

측정 방법	수축기혈압(mmHg)	이완기혈압(mmHg)
진료실혈압	≥ 140	≥ 90
24시간 활동혈압		
하루 평균혈압	≥ 130	≥ 80
주간 평균혈압	≥ 135	≥ 85
야간 평균혈압	≥ 120	≥ 70
가정혈압	≥ 135	≥ 85
진료실자동혈압	≥ 135	≥ 85

2. 사업 참여안내

- **(사업설명)** 사업 내용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참여 권유
  - 제공 서비스, 참여방법,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설명 포함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방안

- 기존 참여자 연계 : 기존 사업 종료 안내문 발송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 신규 참여자 발굴 : 신규 확진된 대상자(1일 이상 약제처방 등) 및 참여의원에 다니는(6개월 이상 내원) 환자에게 서비스 내용 등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3. 환자 참여신청

- 참여 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내용에 대한 안내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 스마트폰이 있는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바로 서명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작성하여 해당의원에서 보관
    * 환자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부록 2,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4. 대상자 등록

- 환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시범사업 전산 시스템에 등록
  * 의원 1개소 당 500명까지 환자등록 가능
  ** 환자등록 화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 정보시스템' 매뉴얼 참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원의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절차 안내사항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환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중복등록이 불가함
  -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환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불참 처리 후 시범사업에 등록해야 함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지역의 시범사업 운영방법은 '제7장. 자주묻는질문' 참고

- **(등록종료)** 아래의 등록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종료 처리함
  - (종료사유)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사망한 경우
    *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타 의료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는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신규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해야 하며, 기존 의원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종료 처리됨
  - 환자가 6개월 이상 의원 미 방문 시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연락하여 등록 종료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재등록)** 환자등록 → 재등록 대상 환자 기본정보 조회(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종결 전에 등록했던 정보가 조회 되며, 수정사항 확인 후 재등록 처리

Ⅱ 케어플랜 수립

<table>
<tr><td colspan="3">포괄평가</td><td rowspan="2">케어플랜수립</td></tr>
<tr><td>문진</td><td>신체검사</td><td>임상검사</td></tr>
<tr><td>• 병력 청취
• 생활습관 평가</td><td>• 신체계측
• 혈압측정
• 합병증 확인</td><td>• 혈액검사
• 소변검사
• 합병증 검사</td><td>• 혈압목표 설정
• 생활습관목표 설정
•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td></tr>
</table>

1. 포괄평가

1) 문진

- **(과거 및 현재 병력)** 고혈압 관련 병력 확인
  - 과거 진단자의 경우 고혈압 유병기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 여부, 혈압 조절 여부를 확인함
-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고혈압 동반질환(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또는 합병증 진단여부 확인

고혈압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 뇌질환 :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 혈관질환 : 대동맥질환(대동맥 박리, 협착, 확장), 말초혈관질환
- 신장질환 : 만성콩팥병(3기 이상)
- 대사질환 : 이상지질혈증
- 안과질환 : 고혈압성 망막증

- **(가족력)** 부모·형제·자매 중에 고혈압 진단 또는 심뇌혈관질환 진단 환자(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 유무 확인

이차성 고혈압 가능성 확인

이차성(저항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 이뇨제를 포함한 3제 병용요법을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 중에도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안정적으로 혈압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 경우
- 30세 이전에 비만하지 않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없는 고혈압의 경우
- 악성 고혈압인 경우 (180/120 mmHg 이상)
- 심한 고혈압과 함께 말초 장기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망막 출혈 또는 유두부종, 심부전, 신경학적 손상, 급성 신부전)
- 저칼륨혈증 또는 대사성 알칼리증이 동반된 고혈압인 경우
- Renin-angiotensin system blocker (ACEI, ARB) 사용 중에 발생하는 신기능 저하 또는 고칼륨혈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 우울장애 여부에 대해 평가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PHQ-2)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표 05 PHQ-2 항목형 측정도구

문항 (최근 2주간)	기록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 예 ☐ 아니오
기분이 우울한가?	☐ 예 ☐ 아니오

(약물복용력) 기존 약물치료 여부 및 약물부작용 확인

- 혈압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고혈압 약물 처방 시 고려해야 할 약물 복용력 확인

고혈압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약물 복용력

☐ 스테로이드성 약제	☐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 면역억제제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제	☐ 항우울제	☐ 항히스타민제	☐ 피임약
☐ 여성호르몬	☐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 한약제 (감초, 마황)	

- **(생활습관)**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파악
  - (흡연) 평생 흡연 여부, 현재 및 과거 흡연력에 대해 확인함

• 비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미만으로 피웠거나 전혀 피우지 않은 경우
• 현재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도 피우는 경우
• 과거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나 현재에 피우지 않는 경우
• '과거 흡연'의 경우 금연 시점(OO 년 전)을 조사함
• '현재 흡연'과 '과거 흡연'의 경우는 흡연력(하루 평균 OO갑 x OO년)을 조사함

  - (음주) 현재 음주 여부와 음주력을 확인함

• 비음주 :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주 1회 미만으로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 : 평균 주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인 경우 평균 음주 빈도(주 OO회)와 한번 마실 때 음주량(OO잔)을 조사함
  * 소주1잔, 맥주1잔(200cc 기준), 양주1잔 등은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포함하므로, 혼합하여 드시는 경우 마시는 잔의 총합으로 표기함

  - (영양/식생활) 식이습관에 대해 평가하며, 영양사를 통해 영양평가 및 진단 가능함

• 불규칙한 식사 : 식사 횟수가 불규칙하거나,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
•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 : 식사량이 많거나, 주2회 이상 튀김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 짜게 먹는 식습관 : 식사 시 국, 찌개의 국물위주 섭취 또는 식탁에서 소금 및 간장 등 양념을 추가하는 경우, 라면, 젓갈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 (운동) 평소 운동여부, 운동의 종류, 강도 등을 평가하며, 운동처방사를 통해 체력측정 및 진단 가능

•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3회 이상)
•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운동(덤벨 등)
• 1회 운동 시 운동 강도 : □ 150분/주 이하 □ 150-180분/주 □ 180분/주 이상

  - (수면) 수면무호흡증 진단, 코골이, 또는 주중 졸림 현상 등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함

2) 신체검사

-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혈압 및 맥박 측정, 이차성 고혈압 감별 및 표적장기 손상 평가
  - 혈압 측정은 대한고혈압학회 권고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측정함

대한고혈압학회 권고사항 : 진료실 혈압 측정 방법

-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한다.
-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 1~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한다.
- 커프 내의 공기주머니의 길이는 위팔 둘레의 80~100% 이상을 감을 수 있고 너비는 위팔 둘레의 40%가 되어야 한다. (성인의 표준크기 : 너비 13cm, 길이 22~24cm).
- 위팔을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커프 아래에 3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커프를 감는다.
- 처음에는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한 뒤, 혈압 수치가 더 높은 팔을 다시 측정한다. 이후에는 높은 팔을 기준으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다.
-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맥박에 따라 혈압이 변하므로 3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다.

  - 이차성 고혈압 감별 또는 무증상 장기 손상 평가를 실시함

이차성 고혈압 또는 무증상 장기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

- 흉부 : 심잡음, 수포음
- 복부 : 간비대, 신장비대, 복부잡음, 박동을 동반한 복부종괴
- 사지 : 좌우 양팔 혈압차, 하지 냉감, 말초부종, 족부동맥 박동 감소 또는 비대칭
- 경동맥 수축기 잡음, 갑상선 비대 등

3) 임상검사

- 최소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주기 변경 가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임상검사 대체 가능함

    * 단, 전해질,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는 3개월 이내 임상검사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일차의료용 고혈압 임상진료지침 내 검사항목 참고 (https://www.guideline.or.kr/)
- 임상 검사 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 권고

표 06 **포괄평가 내 임상검사 항목(고혈압)** **필수항목 볼드 표기**

구분	검사 항목	목적
혈압검사	**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	고혈압 확인
맥박촉진	심박수, 부정맥 여부	부정맥 확인
혈당검사	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선별검사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혈당 모니터링 필요
지질검사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확인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콜레스테롤 모니터링 필요
혈액/혈청검사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	콩팥기능 저하
	소디움(Na), 포타슘(K)	일차성 알도스테론증, 당뇨병, 신기능장애 확인 이뇨제 사용 시 저칼륨혈증 모니터링
	혈색소, 헤마토크릿(Hct)	빈혈
	요산(Urine acid)	이뇨제 투여 시 모니터링 필요
소변검사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콩팥질환 확인
	혈뇨	콩팥질환 확인
	단백뇨	콩팥질환 확인
심장혈관 검사	**12-유도 심전도**	좌심실비대, 좌각차단, 심근경색
	흉부 X-선 검사	심비대, 심부전, 동맥경화
	ABI	말초동맥 질환

2. 케어플랜 수립

- (정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구분하여 혈압 목표와 생활습관 개선 목표 설정, 약물치료, 교육 및 상담, 자가 관리 등 **연간 치료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표 07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위험인자	내용
연령*	남성 ≥ 45세, 여성 ≥ 55세
가족력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 (남성 < 55세, 여성 < 65세)
흡연	흡연
비만 또는 복부비만	체질량지수 ≥ 25 kg/m^2 or 허리둘레 (남 ≥ 90 cm, 여 ≥ 85 cm)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 220 mg/dL, or LDL-콜레스테롤 ≥ 150 mg/dL, or HDL-콜레스테롤 < 40 mg/dL, or 중성지방 ≥ 200 mg/dL
당뇨병 전단계	100 ≤ 공복혈당 < 126 mg/dL
당뇨병	공복혈당 ≥ 126 mg/dL or 경구 당부하 2시간 혈당 ≥ 200 mg/dL or 당화혈색소 ≥ 6.5 %

* 65세 이상은 위험인자 2개로 간주

표 08 심뇌혈관 위험도*와 치료방침

위험인자	고혈압 전단계 (130~139/80~89)	1기 고혈압 (140~159/90~99)	2기 고혈압 (≥160/100)
위험인자 0개	최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 또는 고위험군
	생활요법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위험인자 1~2개	저위험 또는 중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위험인자 3개 이상, 당뇨병, 무증상장기손상	중위험 또는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심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 : 최저위험군 5%미만, 저위험군 5~10%, 중위험군 10~15%, 고위험군 15% 이상

- **(집중관리 환자 선별)** 고혈압 신규 진단 환자, 혈압 조절이 불안정한 경우, 합병증이 있는 경우,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 환자군으로 선별

- **(혈압목표)** 수축기/이완기 혈압 140/90 mmHg 미만
  - 단, **심혈관질환**(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좌심실비대) 또는 **알부민뇨 동반 시 목표혈압**은 **130/80 mmHg 미만**

- **(콜레스테롤 목표)** LDL-콜레스테롤 100 mg/dL 이하, 중성지방 150 mg/dL 미만, HDL-콜레스테롤 남자 및 여자 각각 40 및 50 mg/dL 이상

- **(약물치료 계획)** 환자의 고혈압 정도와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단일/병용 여부 및 약제 선택
  - 환자에게 약물 복용 방법, 약물 부작용 및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

표 09 질환에 따른 추천 고혈압약

동반질환	ACEI 또는 ARB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심부전	○	○		○
좌심실비대	○		○	
관상동맥질환	○	○	○	
만성콩팥병	○			
뇌졸중	○		○	○
노인 수축기단독고혈압	○		○	○
심근경색 후	○	○		
심방세동 예방	○			
당뇨병	○	○	○	○

● **(생활습관 개선 목표)** 생활습관 문제를 바탕으로 환자가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 목표를 설정함

표 10 생활습관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

생활요법	혈압 감소 (수축기/이완기 혈압, mmHg)	권고사항
소금 섭취 제한	-5.1 / -2.7	하루 소금 6g 이하
체중 감량	-1.1 / -0.9	체중 1kg 감소 당
절주	-3.9 / -2.4	하루 2잔 이하
운동	-4.9 / -3.7	하루 30~5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식사 조절	-11.4 / -5.5	건강한 식습관*

*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생선류, 견과류, 유제품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이요법 권고
* 출처 : 대한고혈압학회,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

- **(비만)** 체질량지수 25 kg/m^2 미만, 허리둘레 남자 90 cm, 여자 85 cm 미만
- **(영양 및 식습관)**

영양문제		영양 케어플랜 내용
불규칙한 식사	➡	□ 규칙적 식사횟수(하루3회) □ 규칙적 식사시간 □ 아침식사 하기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		□ 식사량 감소 / 하루 섭취에너지 500kcal씩 줄이기 □ 튀김음식 등 고지방식품 주1회 미만으로 줄이기
짜게 먹는 식품		□ 국물 섭취 줄이기 □ 젓갈류 등 짠 식품 주1회 미만으로 줄이기

- **(신체활동)** 일주일에 주3회 이상(주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 또는 주 2회 근력운동 권고함

근력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환자

•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거나, 아래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근력운동을 제한함
- 울혈성 심부전,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 심한 판막 질환, 5MET 이하의 유산소 대사 능력

- **(흡연)** 금연
- **(운동)** 금주, 또는 일주일에 1~2회, 1회에 2잔 이내로 제한

- **(교육 계획)** 환자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라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위험요인 관리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표 11 고혈압 교육 리스트

No.	주제	주요내용
1	고혈압에 대한 전반적 내용	고혈압에 대한 설명, 혈압의 측정방법
2	고혈압 관리 목표와 방법	상황에 따른 혈압 목표, 고혈압 치료와 약물복용
3	고혈압의 식이요법	식이요법의 효과, 식이요법의 방법
4	고혈압의 운동요법	운동요법의 효과, 운동요법의 방법
5	특별한 상황별 고혈압 관리	어지럼증, 두근거림, 급격한 혈압강하, 급격한 혈압상승
6	고혈압과 생활	음주, 사우나, 인삼 복용, 한약, 영양제, 흡연, 성생활, 계절/온도

Ⅲ 환자 관리

내소진료 F/U		환자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		교육
• 최소 3개월 마다 내소 방문	+	• 혈압 • 약물복용 • 합병증 발생 유무 • 생활습관 목표 달성 추이	or	• 대면 상담 • 비대면 상담 • 리콜, 리마인드	or	• 의원 및 상급 병원으로 연계 • 보건소, 공단, 민간체육시설 등으로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or	• 케어플랜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조합하여 제공

의사·코디 협력활동
• 환자관리를 위한 의사·케어코디 간 연계·협력 • 환자진료 경과 공유 • Problem List 작성 및 의견교환

1. 환자 모니터링

기본관리군과 집중관리군 비교

구분	기본관리군	집중관리군
시기	주기적	주 3일 이상
방법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문자 등 다양한 방법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 **(임상수치 모니터링)** 내원하여 측정하거나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기록을 확인하여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고혈압 집중관리 환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수치를 확인해야 ‘환자관리료 Ⅱ’ 산정 가능

- **(약물 모니터링)** 복용약물 종류, 순응도, 부작용 발생 확인
  - (복약 순응도) 최근 일주일간 약 복용 일수, 남은 알약 세기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순응도를 8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함
  - 복약 순응도가 낮을 경우 순응도 관련 행위 요인(예, 동기 수준과 지식 수준) 파악 후 상담 시행
- **(합병증 모니터링)** 정기적인 합병증 선별검사 시행 및 결과 확인

표 12 무증상 장기손상 및 심뇌혈관질환

항목	내용
뇌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혈관성 치매 진단 여부
심장	좌심실비대,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진단 여부
콩팥	만성콩팥병 진단여부, 사구체여과율 감소, 단백뇨 검출 여부
혈관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진단 여부

- **(생활습관 모니터링)** 비만*,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 매 방문 시 체중 및 허리둘레를 측정
- 혈압 관리가 안 될 경우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기타 가정·직업·심리적 요인 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와 논의하고 계획을 수정함**

  * 환자에게 안내하고 내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 또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운동처방, 심리상담 등)에게 의뢰 권장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최초로 인지한 병원 및 보건소는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의사환자 신고보고 :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확지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 집단 발생관련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인지 즉시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감염병 신고

  *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사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사망포함)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신고서를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연락처 : 043-719-7789, 7790, 7878, 7979
-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http://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확진환자의 주요경과(환자의 증상 발생, 악화, 사망, 퇴원, 격리해제 등) 변경사항은 사례 관리 보고서를 통해 보고

-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http://covid19.kdca.go.kr) - 환자감시-환자정보관리'를 통해 보고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참고

2. 서비스 연계·조정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지원

- **(의료기관 연계)** 합병증 선별검사나 관리를 위한 타 의료기관 연계 또는 우울증, 수면장애 등 타 동반질환에 대한 진료 의뢰
- **(보건소 연계)** 영양(요리교실 등 실습포함), 체력측정·운동실습 등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또는 상담, 보건소 내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 연계
-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자원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 체육시설 등에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환자관리를 위해 복지서비스(밑반찬 배달서비스 등)연계가 필요한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에 연계

Ⅳ 교육·상담

1. 교육

- 교육수행 방법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제공**

- **(교육내용)**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교육

- **(교육형태)** 1:1 교육이 원칙이며, 최대 10명 이내 소규모 집단 교육 가능
  * 소규모 교육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함께 교육하는 팀 접근방식(Team Approach)을 권장함

- **(교육구분)** 초회·기본·집중 교육으로 구성됨
  - (초회교육)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올리기 위하여 의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 신규 진단자의 경우 가급적 등록 당일에 초회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 (기본교육) 질환 또는 생활습관 관련하여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10분 이상 연간 8회 이내 제공하는 교육
  - (집중교육) 기본교육 4회 이상 시행 후에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표 13 환자관리교육 구성

구 분	내용	교육시간	교육형태	수행주체
초회교육	질병 및 생활습관 관련 전반	30분 이상	1:1	의사
기본교육	질환 및 생활습관 개선	1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생활습관 개선			간호사, 영양사
집중교육	환자별 맞춤형 교육	3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시행한 교육명, 시행날짜, 교육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 대규모 집단 교육, 실습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차의료 지원센터), 지역사회 체육시설(국민체력100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등에 연계가능

2. 상담

-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질병관리나 생활습관 관련하여 환자가 요구하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문자,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
- **(리콜·리마인드)** 환자관리를 위한 진료 예약 알림, 진료 미방문 시 환자에게 연락하여 미방문 사유를 확인 등
- 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상담 내용을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V 점검 및 평가

1. 점검 및 평가

- **(정의)** 환자관리 상태에 따라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연 2회 목표 달성도를 중간점검하고, 환자관리내역을 정리하여 환자관리 상태(합병증, 중증사례 발생, 약물요법, 임상검사)를 시스템에 기록

- **(내용)** 합병증 발생 여부, 임상검사 결과 및 생활습관 개선목표 등 점검
  - (합병증관리) 저혈압, 저혈당 발생, 응급실 방문 횟수 등 파악
  - (생활습관, 우울증) 개선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상태 확인
  - (임상검사) 중간점검 필수항목과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실시

- **(케어플랜 수정)** 케어플랜 수립 이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정·보완

- **(케어플랜 재수립)** 전년도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체진찰·임상검사를 재시행하고, 이에 따른 **차기년도 케어플랜 수립**

2. 중간점검 양식

- 대부분의 항목은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환자관리활동에서 자동 연동되며, 필요 시 수정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매뉴얼' 참고

표 14 중간점검 임상검사 항목(고혈압)

구분	검사 항목	목적
혈압검사	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	고혈압 확인
맥박촉진	심박수, 부정맥 여부	부정맥 확인
혈당검사	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선별검사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혈당 모니터링 필요
지질검사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확인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콜레스테롤 모니터링 필요
혈액/혈청검사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	콩팥기능 저하
	소디움(Na), 포타슘(K)	일차성 알도스테론증, 당뇨병, 신기능장애 확인 이뇨제 사용 시 저칼륨혈증 모니터링
	혈색소, 헤마토크릿(Hct)	빈혈
	요산(Urine acid)	이뇨제 투여 시 모니터링 필요
소변검사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콩팥질환 확인
	혈뇨검사	콩팥질환 확인
	단백뇨검사	당뇨병 확인
심장혈관 검사	12-유도 심전도	좌심실비대, 좌각차단, 심근경색
	흉부 X-선 검사	심비대, 심부전, 동맥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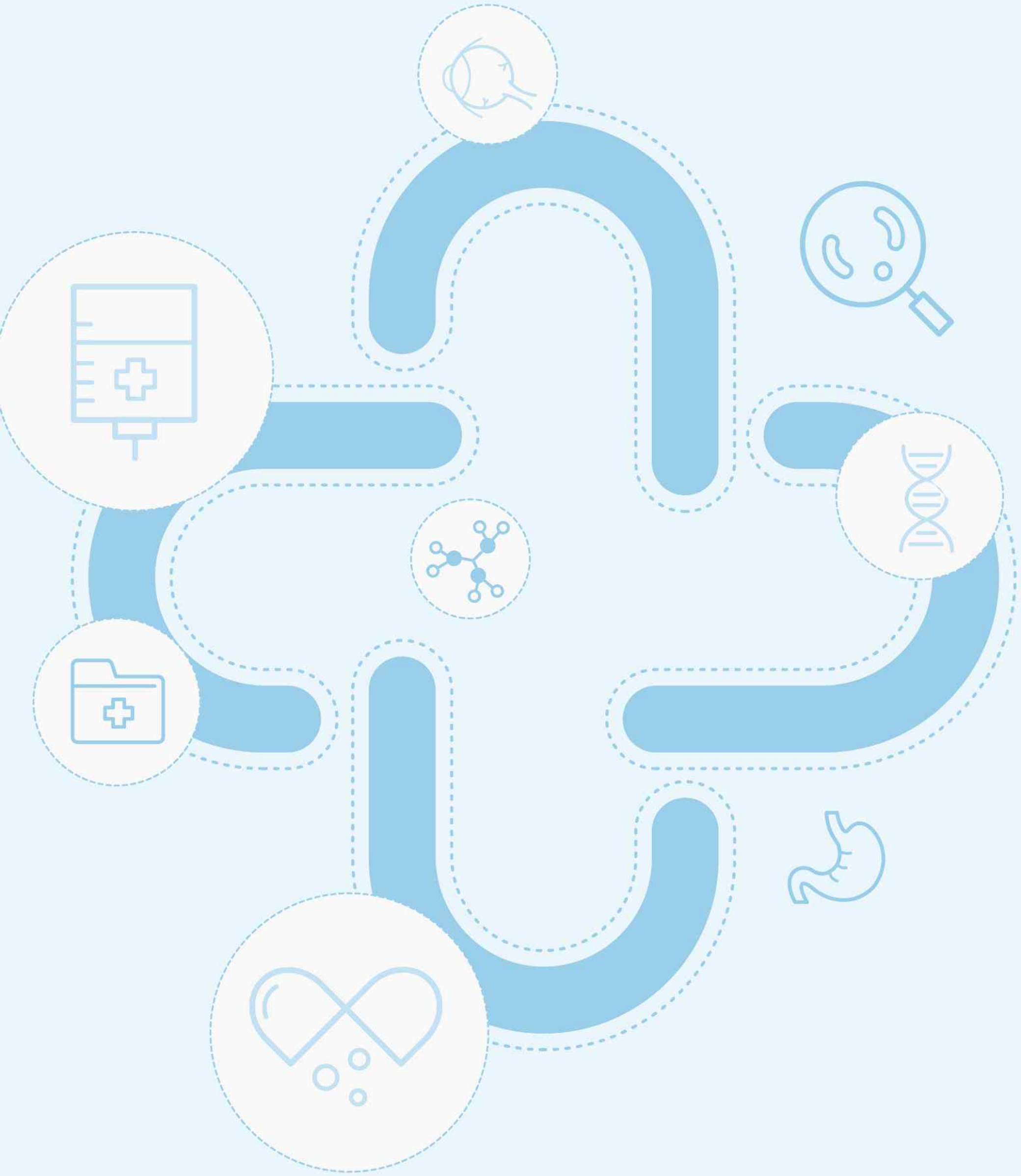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Chapter

04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Ⅰ. 환자등록
Ⅱ. 케어플랜 수립
Ⅲ. 환자 관리
Ⅳ. 교육·상담
Ⅴ. 점검 및 평가

당뇨병 관리 서비스 제공

환자 등록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 고혈압 진단·확인 • 사업 참여 신청 • 전산시스템 환자 등록	• 포괄평가(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실시 • 환자 맞춤형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	• 팀접근을 통한 전 주기적 환자관리활동 • 임상수치, 약물복용, 합병증, 생활습관을 모니터링 • 상담·교육을 통한 개선활동 수행	• 중간점검을 통한 케어플랜 목표 달성 추이 확인 •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케어플랜 수정·보완

I 환자등록

의원방문	대상자 확인	사업 참여안내	참여신청	대상자 등록
	• 당뇨병 환자 진단 또는 확인	• 사업내용, 참여 방법 등 설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 전산 시스템에 환자정보 등록

1. 대상자 확인

● **(사업대상)** 당뇨병(질병코드 E10~14)으로 진단된 환자

* 고혈압과 당뇨병 둘다 동반한 경우 당뇨병 프로세스에 따름

– (신규 진단 환자)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 (기 진단 환자) 과거에 당뇨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자

*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환자도 신규 등록 필요

표 15 당뇨병의 분류

혈압 분류	내용
제 1형 당뇨병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결국 인슐린 분비가 없어지는 질환
제 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인슐린의 작용감소)과 인슐린의 분비량 부족으로 초래되는 질환
기타 당뇨병	기타 당뇨병 또는 이차성 당뇨병은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당뇨병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를 말함 - 베타세포 기능의 유전적 결함 - 인슐린 작용의 유전적 결함 - 췌장 외분비 기능장애 - 내분비 질환 - 간질환 - 약물 유발 - 감염 - 드문형태의 면역 매개 당뇨병 - 당뇨병과 동반될 수 있는 기타 유전적 증후군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 발견 된 당뇨병을 지칭

표 16 당뇨병의 진단 기준

구분	진단기준
정상 혈당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공복혈당 100 mg/dL 미만 - 75g 경구당부하 후 2시간 혈당 140 mg/dL 미만
당뇨병 전단계	공복 혈당장애 - 공복혈당 100-125 mg/dL
	내당능장애 - 75g 경구 당부하 후 2시간 혈장혈당 140 - 199 mg/dL
당뇨병	공복혈당 126 mg/dL 이상 * 명백한 고혈당이 아니라면, 다른 날에 검사를 반복해야함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과 임의혈당 200mg/dL 이상
	75g 경구 당부하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2. 사업 참여안내

- **(사업설명)** 사업 내용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참여 권유
  - 제공 서비스, 참여방법,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설명 포함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방안

- 기존 참여자 연계 : 기존 사업 종료 안내문 발송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 신규 참여자 발굴 : 신규 확진된 대상자(1일 이상 약제처방 등) 및 참여의원에 다니는(6개월 이상 내원) 환자에게 서비스 내용 등 신규 사업 홍보 및 참여 안내문 발송

3. 환자 참여신청

- 참여 의사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내용에 대한 안내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 스마트폰이 있는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바로 서명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작성하여 해당의원에서 보관

  * 환자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부록 2,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4. 대상자 등록

- 환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시범사업 전산 시스템에 등록

  * 의원 1개소당 500명까지 환자등록 가능

  ** 환자등록 화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 정보시스템' 매뉴얼 참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원의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절차 안내사항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환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중복등록이 불가함
  -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환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불참 처리 후 시범사업에 등록해야 함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지역의 시범사업 운영방법은 '제7장 자주묻는질문' 참고

- **(등록종료)** 아래의 등록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종료 처리함
  - (종료사유)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사망한 경우
    *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또는 타 의료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는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신규 등록여부 확인 후 등록해야 하며, 기존 의원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종료 처리됨
  - 환자가 6개월 이상 의원 미 방문 시 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연락하여 등록 종료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재등록)** 환자등록 → 재등록 대상 환자 기본정보 조회(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종결 전에 등록했던 정보가 조회 되며, 수정사항 확인 후 재등록 처리

Ⅱ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				케어플랜수립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 병력 청취 • 생활습관 평가	• 신체계측 • 혈압측정 • 합병증 확인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합병증 검사	▶	• 혈당/혈압목표 설정 • 생활습관목표 설정 •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

1. 포괄평가

1) 문진

- **(과거 및 현재 병력)** 당뇨병 관련 병력 파악
  - 과거 진단자의 경우 당뇨병 유병기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 여부, 혈압 조절 여부를 확인함
    *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에 대한 병력도 청취함
-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당뇨병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진단여부 확인

당뇨병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

- **(동반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기관지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류마티스 질환, 암
- **(합병증)**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만성신부전, 말초혈관질환, 족부병변,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 실명, 신대체요법, 하지 절단, 말초부위의 감각저하나 통증, 자율신경계 이상 등 **당뇨병 합병증 관련한 상태나 증상 여부** 확인
- **(가족력)** 부모·형제·자매 중에 당뇨병 진단 또는 심뇌혈관질환 진단 환자(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 유무
  *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관련 가족력도 병력 청취함
- **(우울증)** 우울장애 여부에 대해 평가
  - Patient Health Questionnaire-2(PHQ-2)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표 17 PHQ-2 항목형 측정도구

문항 (최근 2주간)	기록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 예 ☐ 아니오
기분이 우울한가?	☐ 예 ☐ 아니오

- **(약물복용력)** 기존 약물치료 여부 및 약물부작용 확인

당뇨병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약물 복용력

- (고혈압 약제) ☐ 이뇨제 ☐ 베타차단제 ☐ 칼슘차단제 ☐ ACE억제제/ARB ☐ 기타
- (이상지질혈증 약제) ☐ 스타틴 ☐ 파이브레이트 ☐ 에제티마이브 ☐ 오메가3
- (항혈소판제) ☐ 아스피린 ☐ 클로피도그렐

- **(예방접종력)** 인플루엔자, 폐렴사슬알균 백신 접종 여부
- **(생활습관)**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에 대해 파악
  - **(흡연)** 평생 흡연 여부, 현재 및 과거 흡연력에 대해 확인함

- 비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미만으로 피웠거나 전혀 피우지 않은 경우
- 현재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도 피우는 경우
- 과거 흡연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나 현재에 피우지 않는 경우
- '과거 흡연'의 경우 금연 시점(OO 년 전)을 조사함
- '현재 흡연'과 '과거 흡연'의 경우는 흡연력(하루 평균 OO갑 x OO년)을 조사함

  - **(음주)** 현재 음주 여부와 음주력을 확인함

- 비음주 :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주1회 미만으로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 : 평균 주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
- '현재 음주'인 경우 평균 음주 빈도(주 OO회)와 한번 마실 때 음주량(OO잔)을 조사함
  * 소주1잔, 맥주1잔(200cc 기준), 양주1잔 등은 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포함하므로, 혼합하여 드시는 경우 드시는 잔의 총합으로 표기함

- **(영양/식생활)** 식이습관에 대해 평가하며, 영양사를 통해 영양평가 및 진단 가능함

• 불규칙한 식사 : 식사 횟수 및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3식 중 결식이 있는 경우
• 에너지/당류/지방 과잉 섭취 : 하루 식사량이 많거나, 설탕 등 단당류 섭취가 많거나, 주2회 이상 튀김, 볶음 등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 영양불균형 : 밥 위주의 식사 또는 주2회 이상 감자, 고구마, 면류 등을 지속적으로 섭취, 탄수화물 섭취량이 총 에너지의 60%이상이며 단백질 섭취량이 총에너지의 15% 미만인 경우
• 단백질 섭취 저하 : 육류, 생선류 섭취량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5% 미만 일 경우, 또는 주 4회 미만인 경우

- **(운동)** 평소 운동여부, 운동의 종류, 강도 등을 평가하며, 운동처방사를 통해 체력측정 및 진단 가능

•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3회 이상)
•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운동(덤벨 등)
• 1회 운동 시 운동 강도 : □ 150분/주 이하 □ 150-180분/주 □ 180분/주 이상

2) 신체검사

●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및 맥박 측정, 발 진찰
- 혈압 측정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권고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측정함

대한고혈압학회 권고사항 : 진료실 혈압 측정 방법

•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한다.
•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 1~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한다.
• 커프 내의 공기주머니의 길이는 위팔 둘레의 80~100% 이상을 감을 수 있고 너비는 위팔 둘레의 40%가 되어야 한다. (성인의 표준크기 : 너비 13cm, 길이 22~24cm).
• 위팔을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커프 아래에 3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커프를 감는다.
• 처음에는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한 뒤, 혈압 수치가 더 높은 팔을 다시 측정한다. 이후에는 높은 팔을 기준으로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다.
•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맥박에 따라 혈압이 변하므로 3번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구한다.

- (발 진찰) 피부 상태, 발과 발가락의 모양을 관찰하고, 상처 또는 궤양 여부 등을 확인함
- (말초신경병증 선별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온도/진동감각검사, pin-prick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

3) 임상검사

- 당뇨병의 중증도 평가, 동반질환 및 합병증 평가
- 최소한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주기 변경 가능
  - 당화혈색소는 최소 연 2회 이상 측정을 권장함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임상검사 대체 가능
    * 단, 전해질, 혈당 또는 당화혈색소는 3개월 이내 임상검사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
    ** 일차의료용 고혈압 임상진료지침 내 검사항목 참고 (https://www.guideline.or.kr/)
- 임상검사 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사용 권고

표 18 포괄평가 내 임상검사 항목(당뇨병 복합질환) **필수항목 볼드표기**

구분	검사 항목	목적
혈압검사	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	고혈압 확인
맥박촉진	심박수, 부정맥 여부	부정맥 확인
혈당검사	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선별검사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혈당 모니터링 필요
지질검사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확인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콜레스테롤 모니터링 필요
혈액/혈청검사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	콩팥기능 저하
	소디움(Na), 포타슘(K)	일차성 알도스테론증, 당뇨병, 신기능장애 확인 이뇨제 사용 시 저칼륨혈증 모니터링
	혈색소, 헤마토크릿(Hct)	빈혈
	요산(Urine acid)	이뇨제 투여 시 모니터링 필요
소변검사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콩팥질환 확인
	혈뇨	콩팥질환 확인
	단백뇨	
안저검사	좌안, 우안	당뇨병 합병증 여부 확인
신경학적 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당뇨병 합병증 여부 확인
	이상감각여부	
족부검사	발등 동맥 맥박	당뇨병 합병증 여부 확인
	발 변형 및 상처	
심장혈관 검사	12-유도 심전도	좌심실비대, 좌각차단, 심근경색
	흉부 X-선 검사	심비대, 심부전, 동맥경화
	ABI	말초동맥 질환

2. 케어플랜 수립

- (정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구분하여 혈당 목표와 생활습관 개선 목표 설정, 약물치료, 교육 및 상담, 자가관리 등 **간 치료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표 19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

위험인자	내용
연령*	남성 ≥ 45세, 여성 ≥ 55세
가족력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 (남성 < 55세, 여성 < 65세)
흡연	흡연
비만 또는 복부비만	체질량지수 ≥ 25 kg/m^2 or 허리둘레 (남 ≥ 90 cm, 여 ≥ 85 cm)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 220 mg/dL, or LDL-콜레스테롤 ≥ 150 mg/dL, or HDL-콜레스테롤 < 40 mg/dL, or 중성지방 ≥ 200 mg/dL
당뇨병 전단계	100 ≤ 공복혈당 < 126 mg/dL
당뇨병	공복혈당 ≥ 126 mg/dL or 경구 당부하 2시간 혈당 ≥ 200 mg/dL or 당화혈색소 ≥ 6.5 %

* 65세 이상은 위험인자 2개로 간주

표 20 심뇌혈관 위험도*와 치료방침

위험인자	고혈압 전단계 (130~139/80~89)	1기 고혈압 (140~159/90~99)	2기 고혈압 (≥160/100)
위험인자 0개	최저위험군	저위험군	중위험 또는 고위험군
	생활요법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위험인자 1~2개	저위험 또는 중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위험인자 3개 이상, 당뇨병, 무증상장기손상	중위험 또는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심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고위험군	고위험군	고위험군
	생활요법 또는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 : 최저위험군 5%미만, 저위험군 5~10%, 중위험군 10~15%, 고위험군 15% 이상

- (집중관리 환자 선별) 당뇨병 신규 진단 환자,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경우, 합병증이 있는 경우,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 환자군으로 선별

-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당* 및 혈압, 콜레스테롤 목표 설정**
  - **(혈당목표)** 당화혈색소(HbA1c) 목표에 따라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함
  - (혈압목표) 140/85 mmHg 미만
    - 단, **심혈관질환**(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 좌심실비대) 또는 **알부민뇨 동반 시 목표혈압은 130/80 mmHg 미만**
  - **(콜레스테롤 목표)** LDL-콜레스테롤 100 mg/dL 이하, 중성지방 150 mg/dL 미만, HDL-콜레스테롤 남자 및 여자 각각 40 및 50 mg/dL 이상

당화혈색소와 혈당 목표

- HbA1c 6.5% 미만(일반적인 경우) : 공복혈당 110 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mg/dL 미만
- HbA1c 7.0% 미만(고령, 동반질환이 많거나 기대여명이 길지 않을 경우) : 공복혈당 80~130 mg/dL, 식후 2시간 혈당 180 mg/dL 미만

- **(약물치료 계획)**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주사용/경구용 선택 및 단일/병용 요법 여부, 약제 선택
  - 약물 치료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저혈당 및 약물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

혈당강하제 종류

- 주사형 : 인슐린, GLP-1 수용체 유사체
- 경구형 : 메트포르민, DPP-4 억제제, 설폰요소제/메글리티나이드, TZD, SGLT2 억제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 **(생활습관 개선 목표)** 생활습관 문제를 바탕으로 환자가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 목표를 설정함
  - **(비만)** 비만한 환자는 초기 체중에서 5~10% 감량을 목표로 하고, 감량을 위한 식이 조절 및 운동을 권고함
    * 적정 체중 체질량지수 25 kg/m^2 미만, 적정 허리둘레 남자 90cm 미만, 여자 85cm 미만
  - **(영양 및 식습관)**

영양문제		영양 케어플랜 내용
불규칙한 식사	➡	☐ 규칙적 식사횟수(하루3회) ☐ 규칙적 식사시간 ☐ 아침식사 하기
에너지/당류/지방 과잉 섭취		☐ 식사량 감소 / 하루 섭취에너지 500kcal씩 줄이기 ☐ 단순당 섭취 월1회 미만으로 줄이기 ☐ 튀김음식 등 고지방식품 주1회 미만으로 줄이기
영양불균형		☐ 골고루 식사하기(5가지 식품군 모두 섭취) ☐ 감자, 고구마, 면류 등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단백질 섭취 저하		☐ 매끼 육류 또는 생선류 섭취량 늘리기

  - **(운동)** 일주일에 주3회 이상(주 15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 또는 주2회 근력운동 권고함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환자

-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말초 및 자율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미세 혈관합병증이 있는 경우,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 (흡연) 금연
  - (음주) 금주, 또는 일주일에 1~2회, 1회에 2잔 이내로 제한

- **(교육 계획)** 환자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라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위험요인 관리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 등을 고려함

교육 계획 수립 시 고려할 항목

- 당뇨병 상태 : 연령/성별, 당뇨병유병기간, 혈당조절 상태
- 치료의 종류 : 생활습관관리, 경구혈당강하제, 인슐린요법, 인슐린 펌프치료
- 생활습관 및 위험인자 : 비만/과체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 당뇨병 합병증 상태 및 중증도 : 망막병증, 신증, 말초신경병증, 대혈관합병증, 당뇨병발, 위마비 등
- 환자의 정신건강 및 활동능력 : 일상생활활동능력(ADL), 인지능력,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태, 주거상태 및 경제적인 능력, 교육정도
- 당뇨병에 대한 지식의 정도, 환자의 당뇨병 관리 의지

표 21 당뇨병 교육리스트

주제	주요내용
당뇨병 전반적 내용	당뇨병의 이해
당뇨병의 합병증	심뇌혈관합병증, 미세혈관합병증
당뇨병의 관리	당뇨병의 약물 치료, 생활습관 점검, 당뇨병의 동반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 관리, 자가혈당 측정, 발관리, 저혈당 관리
당뇨병의 식사요법	식사요법의 기본과 원칙, 혈당조절을 위한 식품선택, 외식과 기호식품, 식품선택의 오해와 진실, 당뇨병 동반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의 식사요법
당뇨병의 운동요법	당뇨병에서 운동의 효과 및 권장운동, 당뇨병에서 운동의 계획 및 방법, 운동 전후 주의사항, 합병증 동반 시 운동 방법
특별한 상황에서의 혈당관리	(아픈 날/여행 시) 혈당 관리 방법

내소진료 F/U		환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		교육
• 최소 3개월마다 내소 방문	+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 약물복용 • 합병증 발생유무 • 생활습관 목표 달성 추이	or	• 대면 상담 • 전화 상담 • 리콜, 리마인드	or	• 의원 및 상급 병원으로 연계 • 보건소, 공단, 민간체육시설 등으로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or	• 케어플랜에 따라 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을 조합하여 제공

의사·코디 협력활동

- 환자관리를 위한 의사·케어코디 간 연계·협력
- 환자진료 경과 공유
- Problem List 작성 및 의견교환

1. 환자관리 모니터링

기본관리군과 집중관리군 비교

구분	기본관리군	집중관리군
시기	주기적	주 3일 이상
방법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문자 등 다양한 방법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 **(임상수치 모니터링)** 내원하여 측정하거나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당과 혈압 기록을 확인하여 목표 달성 여부 평가

  * 당뇨병 집중관리 환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당 또는 혈압 수치를 확인해야 ‘환자관리료 Ⅱ’ 산정 가능

- **(약물 모니터링)** 복용약물 종류, 순응도, 부작용 발생 확인
  - 주사용 투여자의 경우 주사 부위 이상 여부(통증, 감염, 부종, 위축 등)를 확인함
  - (복약 순응도) 최근 일주일간 약 복용 일수, 남은 알약 세기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순응도를 8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장함
  - 복약 순응도가 낮을 경우 순응도 관련 행위 요인(예, 동기 수준과 지식 수준) 파악 후 상담 시행
- **(합병증 유무 평가)** 정기적인 합병증 선별검사 시행 및 결과 확인

표 22 당뇨병 합병증 평가 항목

항목	내용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평가	- 성별, 나이, 혈압, 흡연여부,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성 족부병변	- 하지 절단 여부 - 맥박, 감각, 변형, 상처나 감염, 궤양 여부 확인
당뇨병성 신증	- 크레아티닌, 추정 사구체여과율 감소 - 임의뇨 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당뇨병성 신경병증	- 원위부의 양측성 감각신경 장애 확인 (감각저하, 통증 등) - 10g 모노필라멘트 검사, 온도/진동감각검사, 발목반사검사, Pin-prick 검사 등
당뇨병성 망막병증	- 안저검사

- **(생활습관 모니터링)** 비만*,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 매 방문 시 체중 및 허리둘레를 측정

- 혈당 관리가 안 될 경우 복약순응도, 생활습관, 기타 가정·직업·심리적 요인 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와 논의하고 계획을 수정함**

  * 환자에게 안내하고 내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 또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운동처방, 심리상담 등)에게 의뢰 권장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최초로 인지한 병원 및 보건소는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 의사환자 신고보고 :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확지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 집단 발생관련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인지 즉시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감염병 신고

 *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보고 :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입력

 *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 19가 의심되는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사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사망포함)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신고서를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연락처 : 043-719-7789, 7790, 7878, 7979
-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http://covid19.kdca.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확진환자의 주요경과(환자의 증상 발생, 악화, 사망, 퇴원, 격리해제 등) 변경사항은 사례 관리 보고서를 통해 보고

-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http://covid19.kdca.go.kr) - 환자감시-환자정보관리'를 통해 보고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참고

2. 서비스 연계·조정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지원

- **(의료기관 연계)** 합병증 선별검사나 관리를 위한 타 의료기관 연계 또는 우울증, 수면장애 등 타 동반질환에 대한 진료 의뢰
- **(보건소 연계)** 영양(요리교실 등 실습포함), 체력측정·운동실습 등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또는 상담, 보건소 내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 연계
-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자원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지역사회 내 민간 체육시설 등에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 환자관리를 위해 복지서비스(밑반찬 배달서비스 등)연계가 필요한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에 연계

표 23 **환자관리교육 구성**

구 분	내용	교육시간	교육형태	수행주체
초회교육	질병 및 생활습관 관련 전반	30분 이상	1:1	의사
기본교육	질환 및 생활습관 개선	1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생활습관 개선			간호사, 영양사
집중교육	환자별 맞춤형 교육	30분 이상	1:1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	의사, 간호사, 영양사

- 시행한 교육명, 시행날짜, 교육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 대규모 집단 교육, 실습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일차의료 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지역사회 체육시설(국민체력100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등에 연계가능

1. 교육

- 교육수행 방법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의 교육 콘텐츠를 **조합하여 환자에게 제공**
- **(교육내용)** 질병 및 합병증 관리, 생활습관 개선 교육
- **(교육형태)** 1:1 교육이 원칙이며, 최대 10명 이내 소규모 집단 교육 가능
  * 소규모 교육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함께 교육하는 팀 접근방식(Team Approach)을 권장함
- **(교육구분)** 초회·기본·집중 교육으로 구성됨
  - (초회교육)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올리기 위하여 의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 신규 진단자의 경우 가급적 등록 당일에 초회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 (기본교육) 질환 또는 생활습관 관련하여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10분 이상 연간 8회 이내 제공하는 교육
  - (집중교육) 기본교육 4회 이상 시행 후에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으로 30분 이상 제공하는 교육

2. 상담

-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질병관리나 생활습관 관련하여 환자가 요구하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문자, 전화, 이메일 등) 방식으로 필요한 상담을 제공
- **(리콜·리마인드)** 환자관리를 위한 진료 예약 알림, 진료 미방문 시 환자에게 연락하여 미방문 사유를 확인 등
- 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필요시 상담 내용을 의료진과 공유하고 협의하여 환자관리 계획에 반영

V 점검 및 평가

1. 점검 및 평가

- **(정의)** 환자관리 상태에 따라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연 2회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환자관리내역을 정리하여 환자관리 상태(합병증, 중증사례 발생, 약물요법, 임상검사)를 시스템에 기록

- **(내용)** 합병증 발생 여부, 임상검사 결과 및 생활습관 개선목표 등 점검
  - (합병증관리) 저혈압, 저혈당 발생, 응급실 방문 횟수 등 파악
  - (생활습관, 우울증) 개선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상태 확인
  - (임상검사) 중간점검 필수항목과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실시

- **(케어플랜 수정)** 케어플랜 수립 이후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정·보완

- **(케어플랜 재수립)** 전년도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2개월 후 신체진찰·임상검사를 재시행하고, 이에 따른 **차기년도 케어플랜 수립**

2. 중간점검 양식

- 대부분의 항목은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환자관리에서 자동 연동되며, 필요 시 수정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매뉴얼’ 참고

표 24 중간점검 임상검사 항목(당뇨병)

구분	검사 항목	목적
혈압검사	혈압검사 : 수축기/이완기 혈압(양팔)	고혈압 확인
맥박촉진	심박수, 부정맥 여부	부정맥 확인
혈당검사	공복혈당, 식후 2시간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선별검사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혈당 모니터링 필요
지질검사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확인 이뇨제, 베타차단제 사용 시 콜레스테롤 모니터링 필요
혈액/혈청검사	크레아티닌,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	콩팥기능 저하
	소디움(Na), 포타슘(K)	일차성 알도스테론증, 당뇨병, 신기능장애 확인 이뇨제 사용 시 저칼륨혈증 모니터링
	혈색소, 헤마토크릿(Hct)	빈혈
	요산(Urine acid)	이뇨제 투여 시 모니터링 필요
소변검사	요중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콩팥질환 확인
	혈뇨검사	콩팥질환 확인
	단백뇨검사	당뇨병 확인
안저검사	좌안, 우안	당뇨병 합병증 여부 확인
신경학적 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당뇨병 합병증 여부 확인
	이상감각여부	
족부검사	발등 동맥 맥박	당뇨병 합병증 여부 확인
	발 변형 및 상처	
심장혈관 검사	12-유도 심전도	좌심실비대, 좌각차단, 심근경색
	흉부 X-선 검사	심비대, 심부전, 동맥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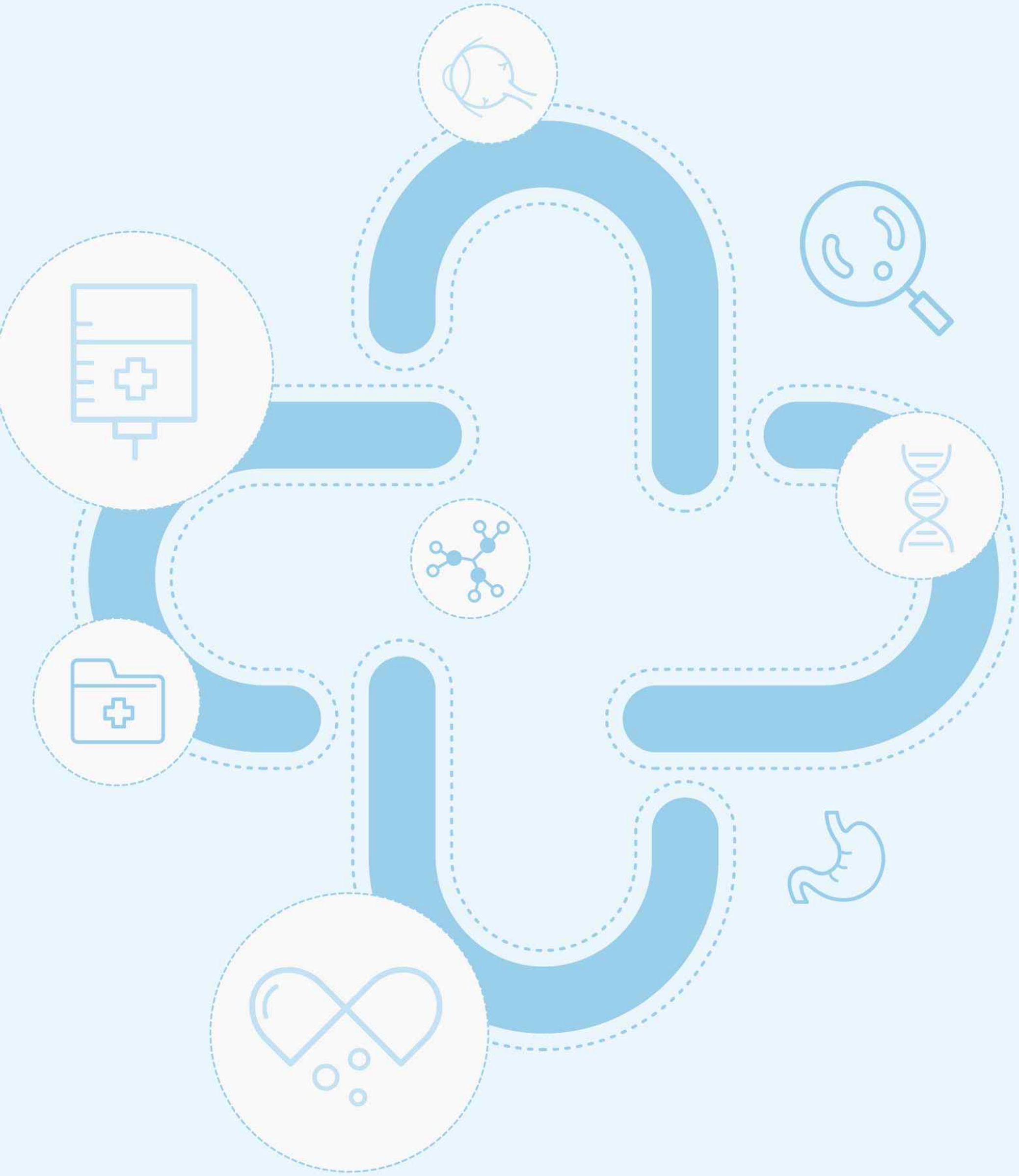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Chapter 05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Ⅰ. 요양급여 기준
Ⅱ. 산정지침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Ⅳ. 청구 원칙
Ⅴ. 명세서 작성요령
Ⅵ. 보완 및 추가청구
Ⅶ. 맞춤형 검진 바우처 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Chapter 05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I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입력된 자

  *, ** :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

나.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2) 요양급여의 비용부담

- 본 지침 '6장 Ⅲ.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이 부담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Ⅱ 산정지침

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만성질환 관리 및 개인정보제공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를 말한다.

(2)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외래진료 시 산정한다.

(3)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6)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나.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최초 등록한 만성질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2) **지속 계획수립료(2주기부터)**는 직전년도 관리계획이 끝나고, 차기년도 계획수립 시 이전 관리결과 평가 등을 반영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후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3) **점검 및 평가료**는 평가 및 계획수립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환자 상태에 따라 연 2회 이내로 산정한다.

다. 환자관리료

환자관리료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한다.

(1) 실시인력 :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다만, 각 인력은 「의료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2) 실시내용 및 방법 : 아래 ① ~ ④의 환자관리를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① **임상수치 확인** :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및 혈당 수치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환자관리료 II는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및 혈당 수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자상태 확인** :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여부, 약물복용 이행 여부, 생활습관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서비스 제공** : 환자관리료 I은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환자관리료 II는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를 이용하여 상기 ① ~ ② 확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확인 내용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즉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혈압·혈당 측정 및 투약 격려, 생활습관 개선, 약물 부작용 대처 요령,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로서, 필요시 진료예약 관리, 보건소 교육 등 지역사회 의뢰·연계 등 서비스도 포함한다. (다만, 의사 판단 하에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 단독 제공 가능)

④ **정보시스템 입력** : 상기 ① ~ ③에서 확인된 임상수치 및 환자상태,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3) 산정주기 및 실시횟수 등

① 산정주기 : 분기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3개월)로 산정한다.

② 실시횟수

- 환자관리료 I : 월 1회 이상, 분기별 6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환자관리료 II : 월 2회 이상, 분기별 12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산정횟수 등

- 환자관리료는 분기별 1회 산정하고, 환자관리료 I, 환자관리료 II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 환자관리료 II는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 상태나 요구도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 하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연간 2회(2분기) 이내로 산정한다.

라. 교육·상담료

(1) **초기 교육·상담료 [의사]**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후 의사가 30분 이상, 환자와 1대1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2) **지속(2주기부터) 교육·상담료 [의사]**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한 후 의사가 20분 이상, 환자와 1대1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3) **기본 교육·상담료**는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과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으로 구분되고, 연간 8회 이내로 산정한다.

(4)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등 만성질환 전반에 대하여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생활습관개선과 관련하여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6) **집중 교육·상담료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는 기본 교육·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내의 집단으로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연 1회 이내로 산정한다.

(7) 초회, 기본 또는 집중 교육·상담을 중복 실시하거나,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점수당 단가 : '21년 의원급 기준 87.6원)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만성질환 통합관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IB011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526.38	46,110
	IB012	(2)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93.76	25,730
	IB013	나. 점검 및 평가	293.76	25,730
		2. 환자관리료		
	IB021	가. 환자관리료 I	335.73	29,410
	IB022	나. 환자관리료 II	529.13	46,350
		3. 교육·상담료		
		가. 초회 교육·상담 [의사]		
	IB031	(1) 초기	413.67	36,240
	IB032	(2) 지속(2주기부터)	288.97	25,310
		나. 기본 교육·상담		
		(1)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IB033	(가) 개인	124.70	10,920
	IB034	(나) 집단	37.17	3,260
		(2)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5	(가) 개인	106.71	9,350
	IB036	(나) 집단	31.18	2,730
		다. 집중 교육·상담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7	(1) 개인	230.22	20,170
	IB038	(2) 집단	68.35	5,990

Ⅳ 청구 원칙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나. [청구시기]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한다.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본 지침에서 정한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마. [특정내역 기재]

(1)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2) 환자관리료 II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실시사유를 기재한다.

가.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 일수	□ 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1”을 기재한다.

나.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의 경우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관리 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의 경우 분기별로 청구하는 수가로,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다. 진료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특정기호 “S012”를 반드시 기재한다.
가)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예시) 등록한 고혈압 재진환자가 의원에 내원하여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결과를 받을 경우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011	46,110	1	1	46,1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12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table>
<tr><th>항목</th><th>세부작성요령</th></tr>
<tr><td>나) 환자관리료</td><td>
(예시) 등록한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환자관리료 Ⅱ를 산정할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
<tr><td>01</td><td>03</td><td>1</td><td>IB022</td><td>46,350</td><td>1</td><td>1</td><td>46,350</td></tr>
<tr><td colspan="8">특정내역기재란</td></tr>
<tr><td colspan="3">발생단위구분</td><td>줄번호</td><td colspan="2">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2">특정내역</td></tr>
<tr><td colspan="3">1</td><td></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S012</td></tr>
<tr><td colspan="3">2</td><td>0001</td><td colspan="2">JX999</td><td colspan="2">B/</td></tr>
</table>
주) 1.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JX999 : ‘환자관리료 Ⅱ 실시사유’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td></tr>
<tr><td>다) 교육·상담료</td><td>
(예시) 등록한 당뇨병 재진환자에게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교육·상담을 일대일로 실시한 경우
<table>
<tr><th>항</th><th>목</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
<tr><td>01</td><td>03</td><td>1</td><td>IB033</td><td>10,920</td><td>1</td><td>1</td><td>10,920</td></tr>
<tr><td colspan="8">특정내역기재란</td></tr>
<tr><td colspan="3">발생단위구분</td><td>줄번호</td><td colspan="2">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2">특정내역</td></tr>
<tr><td colspan="3">1</td><td></td><td colspan="2">MT002</td><td colspan="2">S012</td></tr>
</table>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td></tr>
</table>

라.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table>
<tr><th>구분코드</th><th>특정내역</th><th>작성요령 및 기재형식</th></tr>
<tr><td>MT002</td><td>특정기호
(*)</td><td>▸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S012”를 기재
▸ 기재형식 : X(4)
(예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12</td></tr>
<tr><td>JX999</td><td>기타내역
(*)</td><td>▸ 환자관리료 II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실시사유코드를 기재
· 실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실시사유코드가 ‘F’인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환자관리료 실시사유코드〉
<table>
<tr><th>실시사유</th><th>실시사유코드</th></tr>
<tr><td>신규 환자</td><td>A</td></tr>
<tr><td>인슐린 투여 환자</td><td>B</td></tr>
<tr><td>혈압·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td><td>C</td></tr>
<tr><td>합병증 동반 환자</td><td>D</td></tr>
<tr><td>이차성 고혈압 환자</td><td>E</td></tr>
<tr><td>A부터 E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유</td><td>F</td></tr>
</table>
▸ 기재형식 : X(1)/X(200)
(예시1) 혈당 조절이 안되는 당뇨병 환자에게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환자관리료 II를 산정할 경우
JX999 C/
(예시2)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고혈압 환자에게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환자관리료 II를 산정할 경우
JX999 F/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td></tr>
</table>

Ⅵ 보완 및 추가청구

가. 보완 청구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나. 추가 청구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다.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Ⅶ 맞춤형 검진 바우처 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1. 요양(의료)급여 기준

■ 급여의 담당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 급여의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입력된 자

  *, ** :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

■ 급여의 비용부담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각 검사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 전액(100%)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건강보험대상자) 바우처 검사 비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10%)은 공단(운영비)에서 지원
  - (차상위대상자 및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름

2.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 지침

■ 일반원칙

- 검진바우처 검사항목별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일반기준) 참여의원이 검진바우처 검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각 검사항목별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의원급)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 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미만을 4사5입한다.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의원 적용(건강보험 15%, 의료급여 11%)
    -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는 제외

3.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검사항목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질환명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금액 (2021년)
공통	총 콜레스테롤	누261가	D2611	화학반응-장비측정	16.76	1,470
	HDL 콜레스테롤	누261다	D2613	화학반응-장비측정	68.01	5,960
	TG 중성지방	누260다	D2263	화학반응-장비측정	40.10	3,510
	LDL 콜레스테롤	누261라	D2614	화학반응-장비측정	68.26	5,980
	e-GFR (혈중 크레아티닌)	누228가 (크레아티닌)	D2280	화학반응-장비측정	17.86	1,560
	포타슘	누280	D2800 060	화학반응-장비측정	17.60	1,540
	알부민뇨* (ACR)	누300 (미량알부민)	D3002 D3003	정밀면역검사(정량) 핵의학적방법 검사	189.74 123.97	16,620 10,860
		누228가 (크레아티닌)	D2280	화학반응-장비측정	17.86	1,560
	요 일반검사 4종 요 일반검사 7종 요 일반검사 10종	누225가 가225나 누225다	D2251 D2252 D2253	화학반응-육안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8.2 12.39 20.9	720 1,090 1,830
고혈압	심전도	나725	E6541	심전도 기록 및 판독	80.23	7,030
	소디움	누280	D2800 020	화학반응-장비측정	17.60	1,540
당뇨병	당화 혈색소	누306	D3061 D3062 D3063 D3064 D3065	화학반응-장비측정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정밀면역검사 분획분석 정밀분광-질량분석	77.76	6,810

* 알부민뇨(Albumin Creatinine Ratio): 환자의 임의 요 중 미량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요일반검사는 검사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실시

● 검사비용 : 급여목록별 상대가치점수에 의원급 점수당 단가 적용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공휴·야간가산 제외)

4.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및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다.

■ 청구원칙

- **(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여의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다.(검사항목 개별 청구 가능)
- **(청구시기)**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은 검사 시행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심사청구서)**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과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외 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한 명세서는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과 맞춤형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외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 **(특정기호)**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S013”을 기재한다.
- **(특정내역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에 특정기호 “S013”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 명세서 작성 요령

- 일반내역

항 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내원일수	•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상병내역

항 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 검사일자를 기재한다.

진료내역

항 목	세부작성요령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아래 내용 참조)

• 맞춤형 검진바우처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경우 아래 항목에 기재

- 항번호: “09항(검사료)”
- 목번호: “01목(자체검사)” 또는 “02목(위탁검사)”

(예시1) A의원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지질검사 4종, 심전도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9	01	1	D2611	1,500	1	1	1,500
09	01	1	D2613	5,860	1	1	5,860
09	01	1	D2263	3,460	1	1	3,460
09	01	1	E6541	6,460	1	1	6,4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주1)]		MT002[주2)]	S013

(예시2) A의원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한 당화혈색소, 알부민뇨 검사를 ’20년 2월 8일 B의원(12345678)으로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9	02	0001	1	D3061	6,950	1.1	1	7,645
09	02	0002	1	D3002	16,040	1.1	1	17,644
09	02	0003	1	D2280	1,470	1.1	1	1,617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주1)]		MT002[주2)]	S013
2[주1)]	0001	JS005[주3)]	12345678/20200208
2[주1)]	0002	JS005[주3)]	12345678/20200208
2[주1)]	0003	JS005[주3)]	12345678/20200208

주1)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 해당 구분자(1 명세서 단위, 2 줄번호단위) 기재
2) MT002(특정기호):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특정기호 구분코드 “S013” 기재
3) JS005(검체검사 위탁):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와 검사의뢰일을 기재

● 특정내역기재란

항목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진료내역 명세서는 “S013”을 기재 - 기재형식 : X(4) - (예시)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관련 검사를 시행한 경우 MT002 S013
JS005	검체검사 위탁	•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 9(8)/ccyymmdd

■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보완청구)** 참여의원에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청구한다.

● **(추가청구)** 참여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Chapter

06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지침

Ⅰ. 추진현황

Ⅱ. 지역운영위원회 개요

Ⅲ. 세부 회의내용

Ⅳ. 실무협의체 개요

Ⅴ. 행정사항

Chapter 06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지침

Ⅰ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민·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보다 자주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차원의 효과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민관 협력의 활성화가 중요하나, 그간 민간과 공공은 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 운영됨으로써 협력구조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의사회-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의 업무협약(MoU)를 실시**하고,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협력기반을 마련함

- 그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간 소통협력에 관한 참고사례가 미비하여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논의 절차 등을 포함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운영목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공 간 활발한 의사소통 구조를 조성하고, 발생사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민관 협력을 통한 환자 중심적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혈압·혈당 조절률을 높이고 합병증 발병률을 감소시켜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운영 흐름도

주요내용	해당기관	추진일정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안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월 초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제출	지역의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월 말
⇩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지역운영위원회	연간 분기별 운영 (총 4회)
⇩		
지역운영위원회 분기별 운영결과 제출 · 분기별 회의록 및 건의사항을 홈페이지*로 제출	지역운영위원회	연간 분기별 운영 (총 4회)
⇩		
지역별 의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도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간 분기별 운영 (총 4회)
⇩		
사업 보완·환류 · 추진위원회, 의료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 개선	보건복지부	12월* * 지침 개정 시 반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홈페이지 https://www.khealth.or.kr/ncd

Ⅱ 지역운영위원회 개요

1. 위원회 기능

● 지역사회 만성질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항을 합의하는 의사결정 기구임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목표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사업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 효율적 만성질환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림 04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기관별 역할

지역의사회
- 사업 참여의원 관리 및 협력
- 참여의원 의사 및 케어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민간 및 공공 자원 연계·협력

⇓

보건소 ⇒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점검
- 지역 만성질환관리 정책 개발 및 지원
- 지역사회 민간 및 공공 자원 연계·협력

지역운영위원회(필수)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목표설정 및 지표 관리
- 민간-공공 협력방안,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 지역운영위원회 안건 협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만성질환관리 모니터링 지표산출 및 제공
- 참여의원 사업 운영지원
- 지역사회 민간 및 공공 자원 연계·협력

2.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 임원,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연계 교육기관장 및 보건의료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분함
  - 지역운영위원회-실무협의체 간 긴밀한 의사소통의 중심적 역할을 위해 반드시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을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하도록 함

- 위원장 선출
  -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위원장은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되, 각 기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함

    * (예시) 지역의사회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음

- 간사 선출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하되, 기관별로 공동 간사 임명이 가능함

    * (예시) 지역의사회 간사,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담당자가 공동간사로 선출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임기 중 보직변경, 사퇴, 해촉 등으로 위원 결원 발생 시 동일 직책의 후임자가 대신하여 위원으로 재 위촉되며, 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예시) 해당년도 1월 1일에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 1인이 보직변경으로 6월 1일자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 성함	위임 위촉기간	
	기존	변경
○○○위원	1월 1일 ~ 12월 31일	해임(6월 1일 기준)
△△△위원	-	6월 1일 ~ 12월 31일

● 구성원 역할

- (위원장) 당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및 안건 합의 등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실무협의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회의 안건 도출
  - ※ (공동위원장 체제)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원장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민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권장
- (간사)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 담당, 지역운영위원회 연계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협력하여 회의 운영
- (위원) 회의 안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안 및 합의, 기타 의견 제안 등

〈참고〉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예시

구분	소속기관	직위	주요역할
공동 위원장	지역의사회	회장	• 회의 주재 및 안건 합의 도출 • 합의된 안건을 사업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자 또는 담당자 대상으로 안내
	보건소	소장	
위원	지역의사회	부회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신청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견 제시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안건 제시
	지역의사회	총무이사	
	지역의사회	학술이사	
	보건소	과장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현황 공유 및 연계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안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건소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팀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대상 행정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팀장	
간사	보건소	주무관	•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회의소집, 장소섭외, 회의록 작성 등)

3.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원칙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권고하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해당 지역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 회의 소집공고는 위원장이 하며,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국내 감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회의 실시
-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는 경우에 지역운영위원회 개의가 성립됨
- 안건 협의 시 **최대한 전원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회의안건

- 분기별 필수/선택 논의안건 및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안건을 준비하도록 권고함
- 안내문에 명시된 회의안건 이외 추가 안건 제출이 필요할 경우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 회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는 안건 제안자가 준비하여 회의 당일에 배포함

표 25 분기별 필수/선택 논의안건

구분	필수	선택
1분기 (1월)	•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연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공동목표에 따른 지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 모색	• 실무협의체 운영여부 논의 및 구성·운영계획 수립 • 신규 참여의원 대상 설명회 개최방안 논의
2분기	• 사업 추진현황 점검 • 기관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추진사업 안내 및 협업 방안 논의 •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개선점 및 해결방안 도출(다음분기 반영)	•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원 참여 홍보방안 논의 • 자율안건 논의
3분기	• 지표 점검을 통한 목표 달성률 모니터링 • 차기년도 공동 목표 및 계획 논의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개선점 도출 및 협력 방안 논의(다음분기 반영) • 자율안건 논의
4분기	• 목표 달성률 자체평가 실시 • 차기년도 위원회 운영 추진방향 논의	•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개선점 도출 및 협력 방안 논의(다음분기 반영) • 실무협의체 연간운영 현황 공유 및 차기년도 운영방향 논의

● 회의절차

단계	내용
지역운영위원회 회의소집	•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안내문을 서면으로 제출 • 추가 안건을 제안받음
지역운영위원회 개최	• 개회 선포 및 인사말씀 • 회의 진행순서 안내
사업 추진현황 공유	• 기관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fact sheet 활용 • 지난 회의 시 협의된 안건의 처리 상황 보고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안건상정	• 안건에 대한 설명 • 질의 답변 및 토론
협의	•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 실시 • 안건 협의 결과 공유
폐회	• 차기 회의 일정 논의 • 간사가 회의록 정리하여 위원장 승인 후 제출

● 회의 진행방법

① 개회

- 위원장이 지역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한 후 회의를 시작함
- 개의선포 이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② 사업 추진현황 공유

-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함
- 이후 지난 회의실 협의된 안건의 처리 상황에 대해 간사가 보고함
- 기타 사업 관련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 (예시)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의 변경,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행사일정 또는 지침 개정사항 공유 등

③ 안건상정

-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임
  * (예시) 2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표결이 완료된 후 두 번 째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됨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에 대해 설명함
-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용, 의문이 나는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함
- 안건에 대해 찬반이 나뉘었을 시에는 반대토론 → 찬성토론 → 반대토론 순서로 교대 토론하게 하도록 함

④ 협의

-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협의을 실시함
- 가 부의 수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위원장이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함
-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침

⑤ 폐회

-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을 때 위원장이 당일 회의를 종료하는 폐회를 선포함
- 다음 회 차 지역운영위원회 개회 일정에 대해 논의함
- 간사는 지역운영위원회 결과*를 작성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에게 해당 회 차의 결과를 서면으로 공유함
  *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양식(p.122) 참고

〈참고〉 회의 시 유의사항

•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함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하도록 함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함

• 발언 시 유의할 점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지 않도록 함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해야 함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 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함

Ⅲ 세부 회의내용

1.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협의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업 목표 설정

- 지역별 고혈압·당뇨병 현황 및 정책 방향 등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분석 및 파악함
- 기관별 역할을 기반으로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금년도 사업 목표를 설정함
  * (예시)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의원 비율 향상,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조절률 제고 등
- 설정된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함

〈참고〉 지역운영위원회 성과목표 수립을 위한 참고지표(안)

지표명	정의
참여 의원 비율	고혈압·당뇨병 외래진료 환자가 있는 의원 중 참여환자가 있는 의원 비율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비 참여 환자 비율	참여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외래진료 환자 중 참여 환자 비율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의원 비율/여부	참여 의원 중 케어코디네이터 등록한 의원 비율
의사 역량 강화 교육 이수율/ 이수여부	등록 의사 중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케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교육 이수율/ 이수 여부	등록 케어코디네이터 중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케어코디네이터 비율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서비스 제공률	참여 환자 중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의 비율 *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건강관리센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 등 지역 내외의 센터 의뢰를 통해 시행된 교육
고혈압 참여 환자의 혈압 조절률	고혈압 참여 환자 중 최종* 의료진 측정 혈압이 140/90mmHg 미만인 환자 비율 *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365일 시점에 가장 가까운 일자(일자 범주는 추가 논의 필요)
당뇨병 참여 환자의 당화혈색소 조절률	당뇨병 참여 환자 중 최종*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가 6.5% 미만인 환자 비율 *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365일 시점에 가장 가까운 일자(일자 범주는 추가 논의 필요)

2. 사업 운영에 관한 협의

● 지역 내 만성질환관리 사업 활성화 방안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 모색**
  * (예시) 참여의원 대상의 설명회(또는 간담회) 운영, 참여의원 간 자조모임 형성 등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논의**
  * (예시1) 케어 코디네이터 미고용 의원의 경우 환자 대상 생활습관관리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지역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환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함
  * (예시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들의 시스템 접근성 문제를 호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1:1 시스템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함
- 지역사회 연계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 (예시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우처 항목 이외 환자에게 필요한 다른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소와 의원 간 협의하여 마련함
  * (예시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활동량계 대여사업을 소개하고, 기기를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서 안내하도록 협조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질 관리 방안

- **의사 및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 방안** 도출
  * (예시) 의사 및 케어 코디네이터 교육 이수 방법(온라인, 대면) 공유 등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환자관리 방안**에 관한 논의 및 정보 공유
  * (예시) 고혈압·당뇨병 진료 지침 소개, 환자 진료 사례 및 최신 정보 공유 등

〈참고〉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 수강방법 : 지역의사회 및 의원으로 교육과정 안내 예정
- 교육과정 : 공통과정 4차시, 직무별 4차시 총 16차시로 구성(※ 향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	차시	교육 명	대상	차시	교육 명
공통	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이해(1)	간호사	9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의 이해(1)
	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이해(2)		10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의 이해(2)
	3	고혈압 환자 관리 제공 프로세스		11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매뉴얼(1)
	4	당뇨병 환자 관리 제공 프로세스		12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매뉴얼(2)
의사	5	고혈압 환자의 자가관리	영양사	13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
	6	고혈압 환자 관리의 실제		14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
	7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관리		15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매뉴얼(1)
	8	당뇨병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16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매뉴얼(2)

3. 만성질환관리 사업 현황 모니터링

● 모니터링 목적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개선사항 모색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여 목표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함

● 모니터링 수행과정

- 추진 과정이나 성과의 수준을 단순히 판단하기 보다는 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처와 계획의 수정 또는 기대 이상의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 효과를 지속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이에, 기관별로 해당 지역의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사업 실행 방안 및 협력 요청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에 관해 논의함

● 모니터링 내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 확인
- 연 초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현황점검을 실시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함
- 당초 계획 수립 시 마련한 실행방안의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논의하여 실행방안을 조정함
-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출된 민관 협력사항 진행 정도를 검토함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함

〈참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Fact Sheet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격월로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Fact Sheet를 마련하여 지역본부, 지사로 배포하고 있음

• Fact Sheet의 주요내용은 해당 지역의 사업 참여현황, 운영현황(환자 등록, 케어플랜, 교육, 환자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운영위원회 개최 시 공유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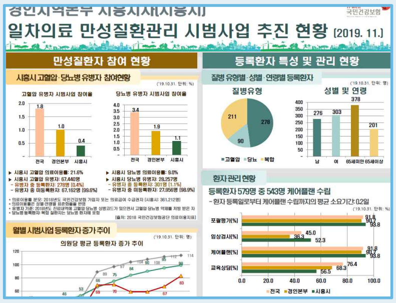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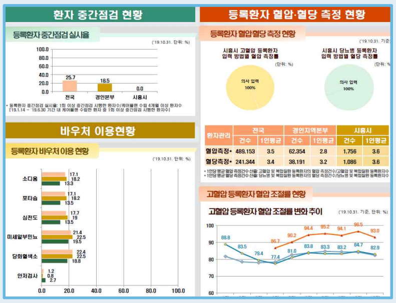

4. 만성질환관리 사업 추진현황 평가

● 평가목적

- 연초 금년도 목표치 달성여부를 자체평가 함
- 목표 달성 시 차기년도 사업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 달성 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차기년도 사업계획 시 반영함

● 평가내용

-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른 기관 별 사업수행 내용 및 협력사항
- 금년도 공동 목표달성 수치 평가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방향 모색
- 가급적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Ⅳ 실무협의체 개요

※ 실무협의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선택 운영하도록 함(필수사항 아님)

1. 협의체 기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의사소통 기구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등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운영위원회 심의(건의)안건 검토 및 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

2. 협의체 구성

- 위원 구성
  -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 실무자(현장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함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실무협의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위원장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여 선출함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동일하여도 무방함
  -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이 바람직 함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현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임기 중 보직변경, 사퇴, 해촉 등으로 위원 결원 발생 시 동일 직책의 후임자가 대신하여 위원으로 재 위촉되며, 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예시) 해당년도 1월 1일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위원 1인이 보직변경으로 6월 1일자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3. 실무협의체 운영

● 운영원칙

- 위원장은 당해 실무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 실무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을 규정하여 운영
-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 권고하나, 현장 상황에 맞춰 조율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체적인 회의 운영은 지역운영위원회 사례를 준용함

● 회의내용

-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사업계획 이행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사항
- 효율적 만성질환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운영위원회 안건 도출에 관한 사항 등

● 회의절차

실무협의체 개최	• 실무협의체 개회선포 및 인사 • 회의 진행순서 안내
↓	
사업 추진현황 공유	• 기관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발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fact sheet 활용 •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공유(제출한 안건의 진행여부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
↓	
회의 진행 및 안건 도출	• 주요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회의 진행 •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지역운영위원회 안건 도출
↓	
실무협의체 폐회	• 회의 최종결과 공유 • 차기 실무협의체 일정 협의
↓	
지역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 실무협의체 회장이 지역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안건 제출

V 행정사항

1. 지역 내 안내절차

● 지역운영위원회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1주일 이내 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 서면 안내함

  *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시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안내함

-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 1주일 이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게 서면 안내함
- 이외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 구성 1주일 이내 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으로 서면 공개함

  * 실무협의체 위원 변경 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함

- 이외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2. 제출자료

● 지역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따라 지역의사회에서 위원 명단*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공문 제출하도록 함

- 위원 변경 사항 발생 시, 명단을 수정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공문 제출

  * '지역운영위원회(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양식' 부록 참고

● 분기별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후, 작성된 회의록 및 건의사항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홈페이지'에 등록

- 분기별 운영에 따라 **총 4회 제출하며, 홈페이지 내 '지역운영위원회' 메뉴에 자료등록**
- 지역별 회의록 및 건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향후 사업 개선 시 활용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 '지역운영위원회(실무협의체) 회의록' 부록 참고

〈참고〉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채널 운영안내

● 운영목적

- 사업 참여지역과의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개선에 환류함으로써 지역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함

● 운영방법

- (온라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홈페이지 내 '지역운영위원회' 메뉴를 신설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오프라인) 연간 5개 권역별(서울, 경인, 충청, 경상, 전라) 간담회 실시(연 2회)

● 운영체계

-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등 지역 현장의견을 분기별로 검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운영위원회 의견수렴, 중앙정부 사업개선사항 의견 제시 및 유관기관과의 사업 개선 근거 제시, 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환류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지역운영위원회)** 지역 내 참여의원 및 보건소와 함께 효율적 사업 수행방안 논의 및 개선사항 도출, 지역 의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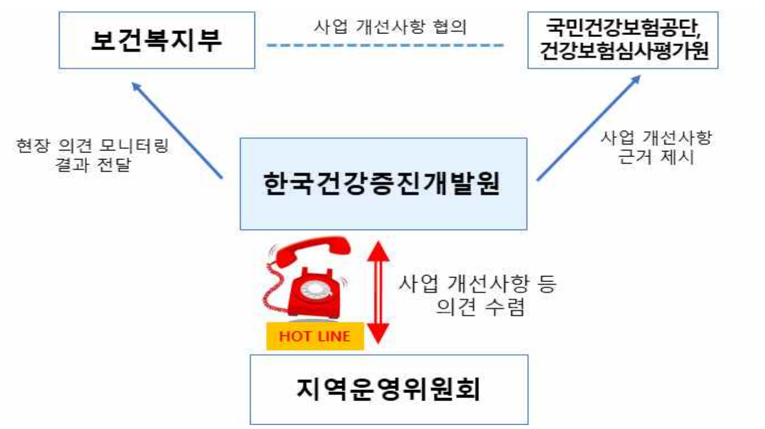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 흐름〉

참여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그간 노력

〈2018년〉

- 2018. 10. 13. : 기존 시범사업 참여의원 간담회(대전) 개최
- 2018. 10. 20. : 기존 시범사업 참여의원 간담회(서울) 개최
- 2018. 12. 17.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국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2019년〉

- 2019. 2. 11. :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간담회 개최
- 2019. 2. 26. : 광주시 광산구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9. 3. 5. : 서울 중랑구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9. 3. 12. : 대구시 지역의사회 간담회 개최
- 2019. 3. 15. :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의사회 간담회 개최
- 2019. 3. 22. : 서울 동대문구 지역의사회 간담회 개최
- 2019. 4. 24. : 경북 포항시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9. 6. 20. : 충남 서산시 지역의사회 간담회 개최
- 2019. 6. 25. : 광주 서구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9. 6. 27. : 경기 원주시 지역의사회 간담회 개최
- 2019. 7. 15. : 전북 전주시 지역의사회 간담회 개최
- 2019. 8. 20. : 충남 천안시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9. 8. 27. : 대전 서구 지역의사회 간담회 개최
- 2019. 9. 26.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설명회를 통한 보건소 역할 안내
- 2019. 12. 23.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방향 워크숍 개최
- 2019. 12. 23. : 부산시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2020년〉

- 2020. 2. 11. : 충남 홍성군 보건소 간담회 개최
- 2020. 2. 12. : 충남 옥천군 보건소 간담회 개최
- 2020. 6. 11. : 서울 노원구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20. 6. 24. : 부산 연제구 지역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20. 11. 18. :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간담회 개최

〈2021년〉

- 2021. 2. : 지역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 배포

부록 1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임기 : 00. 00월 00일~ 00. 00월 00일(00.)〉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시 의사회	회장	김○○	공동위원장, ○○내과의원
2	○○시 보건소	소장	박○○	공동위원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장	이○○	
4				
5				
6				
7				
8				
9				
10				
11				
12				간사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00. ○○구 지역운영위원회 ○차 회의

일 시	00. 00월 00일	위원장	간사
장 소	000 의사회 회의실	(서명)	(서명)
참석자	총 00명 (000위원장, △△△위원, … …, ★★★간사)		

□ 지난회의 안건

안건 명	진행사항 검토 (완료/진행/계획)	내용
(예시) ① 지역운영위원회 목표 설정에 따른 사업 전략 수립	계획 중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시, 운영위원회 목표에 따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예시) ② 지역운영위원회 내 전문가 위원 추가 구성	완료	· 00대학교 보건대학원 000 교수 영입함

□ 이번회의 안건

안건내용	논의결과
(예시) ① 등록 환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방안	· 공공에서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보건소은 당뇨병 수첩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혈압·혈당기기 지원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다음번 회의 때 공유하기로 함
② 생활습관관리 교육의뢰 활성화 요청	· 현재 보건소에서 ‘영양 중심의 생활습관관리 프로그램’을 매달 제공하고 있음을 공유함 · 이에 의원에서 환자에게 영양교육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로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를 바람

□ 기타 사항

○ (예시) 다음번 회의 일정 : 00월 00일 예정

○ (예시) 금번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임

제 0회 00구 지역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제출일 : 000. 00월 00일
제출자 : 000 (인)
동의자 : 000, 000(인)

0000.도 제0회 00구 지역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음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안건으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명 :
- 주요내용
  ① 현황
  ② 의견 및 대책검토(안)

00시(구)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00구 지역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공공 간 연계·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3조(구성)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간사)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경우 민간과 공공에서 1인씩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결원이 있을 시에는 후임자가 대신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목표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사업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④ 효율적 만성질환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간사는 지역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에 대해 안내한다.
2. 간사는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을 관리하고 자료를 작성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4. 간사는 회의폐회 후 1주일 이내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대상으로 회의록을 공유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 재 선출을 실시한다.

① 위원이 사망、질병、품위 손상될 경우. 이 경우 질병의 범위, 품위손상 등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
② 장기간(3회이상)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일정 될 경우
③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 할 경우
④ 위원이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때
⑤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장 회의운영

제10조(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진행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국내 감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회의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의결) 정기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권리와 의무) 위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 하여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장 기 타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Chapter 07

자주 묻는 질문

Ⅰ.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Ⅱ. 급여청구 등에 대한 내용

Ⅲ. 검진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

Ⅳ. 기타 사항

Chapter 07

자주 묻는 질문

I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Q 01 사업 참여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기관 등록/참여인력 등록/의원 인력 현황에는 의원에서 심평원 등에 신고한 인력 현황이 조회되며, 조회된 인력 중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인력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는 인력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화면에서 의원 인력현황에 추가 가능하나, 이는 심평원 등의 인력 신고 내역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Q 02 임상검사는 필수 입력 항목인가요?

A 네. 포괄평가 후 임상검사를 실시해야 케어플랜을 수립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 공단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자동 연계 됩니다. 6개월 이내 의원 검사 결과 값이 있는 경우 소급입력이 가능합니다.

Q 03 케어플랜 주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케어플랜 주기는 '케어플랜 수립일자'가 기준이며, 1주기는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1년입니다.

Q 04 수립한 케어플랜을 삭제할 수 있나요?

A 기 수립한 케어플랜의 삭제는 불가능하나, 내용 수정 및 보완은 중간점검 실시 후 가능합니다.
※ 진료비 청구는 연 1회 가능합니다.

Q 05 케어플랜 수립 후 계획서를 출력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케어플랜 수립 후 계획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자가 관리를 위하여 계획서를 환자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획서는 The건강보험 앱(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 출력물보다 간소화된 형태임)

Q 06 교육상담 후 교육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명의 play버튼을 클릭 → 교육 실시 → 교육창 상단 **'교육완료'**를 클릭 → 교육시간 저장.

2) 오프라인 교육실시한 경우 : 교육명의 play버튼 클릭 → 팝업창 생성 → 오프라인 교육시간을 **수기로 입력** → 교육시간 저장.

※ 실시한 교육을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07 케어플랜 수립 후 대상자에게 문자발송이 되지 않네요?

A [환자 등록]화면에서 'SMS수신여부'에 체크해야 대상자에게 문자발송이 가능 합니다. 또한, 최근 2개월 내의 혈압·혈당 수치 기록이 있어야 문자 발송이 가능하고 1일 1회만 전송 가능하니 발송가능여부 위에 커서를 두어 발송불가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08 케어플랜, 교육 등 실시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 가능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청구지원] 화면에서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와 서비스 실시일자, 수가코드 등을 확인하여 의원에서 사용하시는 별도의 청구 프로그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지원] 화면에 청구 가능 내역은 **서비스 실시 다음날**에 조회됩니다.

Q 09 대상자가 모바일(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어떻게 서명하나요?

A The건강보험 앱 실행 → 건강iN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메뉴 접속 → 환자등록번호(환자등록 시 생성됨)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 → 비밀번호(숫자 4자리) 설정 → 로그인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내용 확인 후 "확인" 터치

※ 앱 로그인에 5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0 환자용 참여 신청서는 반드시 모바일 앱으로 받아야 하나요?

A 모바일(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서면으로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 참여 신청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는 모바일 서비스(혈압/혈당 기록, 케어플랜 조회 등)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Q 11 대상자 등록을 하였는데 The 건강보험 앱에서 사용자 인증이 되지 않네요?

A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등록한 후 약 5분 정도 지나야 The건강보험 앱에서 사용자 인증이 가능 합니다.(시스템 간 정보 연계되는 데에 최대 5분 소요됨)

Q 12 연계기관용 전산시스템을 수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니 로그인이 되지 않네요?

A 2개월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관리되어 정지 처리됩니다. 해당 연계기관(보건소, 건강동행센터 등)의 관리자 권한이 있는 직원이 휴면을 해지한 이후 다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13 연계기관용 정보시스템을 사용 중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하시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신 경우, 공단으로 연락주시면 최초 등록된 공인인증서의 정보를 초기화 해드립니다. 초기화 된 이후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프로그램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Q 1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1) 건강보험 통합홈페이지(http://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2)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성병원 → 일차의료만성질환병원 메뉴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 위치 기반 반경 5km 이내 지역범위 자동세팅

Q 15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A 사용자(의원용, 연계기관용, 환자용)별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담은 교육용 영상이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 게시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6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로그인 시간이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안 정책상 로그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며, 10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 합니다.

※ [케어플랜/교육]메뉴로 접속하여 [교육상담]화면에서 교육자료(pdf파일) 조회 시 로그인 시간이 자동 연장 되나, [대상자 조회] 화면을 통해 교육상담 화면에 접속한 경우에는 로그인 시간 자동 연장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진료시스템에서 공단연계 메뉴를 통해 요양기관정보마당 업무별 메뉴를 직접 연결 시킨 경우 최초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1회 로그인으로 종일 접속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OCS연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7 환자 중 집중관리 대상은 어느 화면에서 입력 또는 확인 가능한가요?

A 케어플랜 화면 상단의 집중관리대상에 체크하고 저장하셔야 합니다.
단, 환자가 주 3일 이상 수치 전송을 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경로 : 일차만성질환 〉 케어플랜 〉 포괄평가/케어플랜 〉 케어플랜

Q 18 참여환자의 교육정보 등을 착오등록 또는 성명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공단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정보 수정(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팩스(033-749-6398)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19 환자관리료 서비스 실시 1회 인정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A [① 임상수치(혈압 혈당 수치) 확인 + ② 환자상태 확인 + ③ 서비스 제공(문자 또는 전화)] 내용을 ④ 정보시스템에 모두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Ⅱ환자관리료 산정지침-다. 환자관리료 참고)

Q 20 신설된 환자관리료Ⅱ의 제공 서비스 중 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시스템 어느 화면에 입력하나요?

A 비대면 서비스의 전화상담란에 전화구분을 쌍방향 메신저에 체크하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서비스(전화상담) 제공일 이전 주 3일 이상의 수치 전송이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제공가능 합니다.
※ 화면 경로 : 일차만성질환 〉 환자관리 〉 비대면 서비스 〉 전화상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Q 01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무엇인가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 행위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가 해당됩니다.

Q 02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A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시범사업 참여대상 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지침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03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에게도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환자가 본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산정지침에 따른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지속적인 관리 의사를 밝힌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제도

Q 04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산정하는 환자에게 가-14 만성질환관리료(AH200)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A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항에 따라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14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Q 05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또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기참여 했던 환자도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후 환자에게 종합관리 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06 등록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찰료는 산정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진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07 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한 경우,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내원일자로 기재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2019.2.1일에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포괄평가를 시행하고,
2019.2.13일 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
☞ 내원일자는 2019.2.13일로 기재하여 수가 산정

Q 08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된 경우 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야간·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09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A 혈액검사 등 검사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0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와 ‘교육·상담료’를 동일한 날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날에 산정 가능하며, 이 후 종합관리계획서에 따라 당일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상담료’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11 ‘점검 및 평가료’는 어떤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점검 및 평가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연 2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19.2.1일 포괄평가를 시행하고, 2019.2.13일 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

☞ ‘점검 및 평가료’는 2019.6.13일 이후 환자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고 기록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산정

환자관리료

Q 12 ‘환자관리료 Ⅰ ~ Ⅱ’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환자관리료 Ⅰ~Ⅱ’는 개정된 환자관리료 산정지침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이후 실시한 환자관리부터 적용됩니다.

Q 13 환자관리는 누가 실시하나요?

A ‘환자관리’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 중 간호사가 실시하여야 하나, 환자관리 중 ‘생활습관 관리 단독 제공’의 경우에는 케어코디네이터 중 영양사도 실시 가능합니다. 또한, 각 인력은 「의료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Q 14 '환자관리료 Ⅰ'은 어떤 경우 산정하나요?

A '환자관리료 Ⅰ'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 의사, 간호사 등이 주기적으로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환자상태 등을 확인 후에 확인 결과에 따라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분기별 6회 이상(월 1회 이상) 실시·기록하는 경우에 분기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실시횟수 기준 Q20 참고)

Q 15 '환자관리료 Ⅱ'는 어떤 경우 산정하나요?

A '환자관리료 Ⅱ'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담당 의사, 간호사 등이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환자상태 등을 확인 후에 확인 결과에 따라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를 이용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분기별 12회 이상(월 2회 이상) 실시·기록하는 경우에 분기별 1회(연간 2분기 이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실시횟수 기준 Q21, 산정횟수 기준 Q23 참고)

*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 상태나 요구도를 고려하여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

〈환자관리료 기준〉

구분	환자관리료 Ⅰ	환자관리료 Ⅱ
대상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집중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 상태나 요구도를 고려하여 진료담당 의사가 판단
제공수단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	전화 (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실시횟수	월 1회 이상, 분기별 6회 이상	월 2회 이상, 분기별 12회 이상
산정기준	주기적으로 임상수치 확인 필수	-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필수 - 연간 2회(2분기) 이내 산정
수가 (분기당)	29,410원	46,350원

* 환자관리료 Ⅰ, 환자관리료 Ⅱ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Q 16 환자관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A '환자관리'는 ① 임상수치 확인 → ② 환자상태 확인 → ③ 서비스 제공 → ④ 정보시스템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관리	① 임상수치 확인 -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및 혈당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다만, 환자관리료 Ⅱ는 주 3일 이상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② 환자상태 확인 - 합병증 발생 여부, 약물복용 이행 여부, 생활습관 개선 여부 등 확인 ③ 서비스 제공 - 환자관리료 Ⅰ은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환자관리료 Ⅱ는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를 이용하여 상기 ①~② 확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 (다만, 확인 내용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환자에게 즉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 * 혈압·혈당 측정 및 투약 격려, 생활습관 개선, 약물 부작용 대처 요령,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필요시 진료예약 관리, 보건소 교육 등 지역사회 의뢰·연계 등 포함) ** 의사 판단 하에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 단독 제공 가능 ④ 정보시스템 입력 - 임상수치, 환자상태,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 방법을 정보시스템에 입력

Q 17 환자관리는 어떤 내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 '환자관리'는 혈압·혈당 측정 및 투약 격려, 생활습관 개선, 약물 부작용 대처 요령,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진료예약 관리, 지역사회 의뢰·연계 등도 포함됩니다.

단, 안부 인사, 날씨 또는 휴진 안내 등 일상적인 서비스는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18 '환자관리료' 첫 번째 산정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환자관리료' 첫 번째 산정주기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초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한 날이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당월 1일부터 3개월이나,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당월에 실시한 환자관리 횟수는 익월 실시횟수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Q19, Q21 예시 참고)

예시

케어플랜 수립일자	○월 1일 ~ 15일	○월 16일 ~ 말일
환자관리료 첫 번째 산정주기	당월 1일부터 3개월	익월 1일부터 3개월

Q 19 환자관리는 언제부터 환자에게 실시 가능한가요?

A '환자관리'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초기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한 날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2020년 1월 10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 1월 10일 ~ 3월 31일까지 환자관리 실시 후 환자관리료 산정

2) 2020년 1월 16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 1월 16일 ~ 4월 30일까지 환자관리 실시 후 환자관리료 산정

Q 20 '환자관리료 Ⅰ'은 환자관리를 몇 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환자관리료 Ⅰ'은 월 1회 이상, 분기별 6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 3월 6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수가산정 여부
산정주기	3월 1일 ~ 5월 31일			
실시일자	3월 6일~3월 31일	4월 1일~4월 30일	5월 1일~5월 31일	
실시횟수	2	2	2	환자관리료 Ⅰ(O)
	1	1	4	환자관리료 Ⅰ(O)
	3	-	4	환자관리료 Ⅰ(X)

* (O) : 산정 가능, (X) : 산정 불가

Q 21 '환자관리료 Ⅱ'는 환자관리를 몇 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환자관리료 Ⅱ'는 월 2회 이상, 분기별 12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20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수가산정 여부
산정주기	2월 1일 ~ 4월 30일			
실시일자	1월 20일~2월 29일	3월 1일~3월 31일	4월 1일~4월 30일	
실시횟수	4	4	4	환자관리료 Ⅱ(O)
	2	2	8	환자관리료 Ⅱ(O)
	5	1	6	환자관리료 Ⅱ(X)
	4	4	3	환자관리료 Ⅱ(X)

* (O) : 산정 가능, (X) : 산정 불가

Q 22 환자관리를 하루에 전화(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신저 포함) 1회, 문자 1회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횟수가 2회로 반영되나요?

A '환자관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할지라도 월 실시횟수 및 분기별 실시횟수에는 1회 실시한 것으로 반영됩니다.

Q 23 '환자관리료 Ⅰ ~ Ⅱ' 산정횟수 기준은?

A '환자관리료 Ⅰ~Ⅱ'는 환자관리 실시횟수에 따라 분기별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관리료 Ⅱ'는 신규 환자, 고령으로 자가 관리가 어려운 환자 등 환자 상태나 요구도를 고려하여 의사 판단 하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연간 2회(2분기)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24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분기별 마지막 실시·기록한 환자관리 일자를 작성합니다.

예시 (환자관리료Ⅰ) 2020년 1월 15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산정주기	1월 1일 ~ 3월 31일					
실시일자 (제공방법)	1월 15일~1월 31일		2월 1일~2월 29일		3월 1일~3월 31일	
	1월 21일①	전화	2월 5일①	문자	3월 4일①	문자
			2월 12일②	문자	3월 11일②	전화
			2월 26일③	전화	3월 25일③	전화
분류(코드)	환자관리료 Ⅰ(IB021)					
내원일자	3월 25일					

(환자관리료Ⅱ) 2020년 2월 25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산정주기	3월 1일 ~ 5월 31일					
실시일자 (제공방법)	2월 25일~3월 31일		4월 1일~4월 30일		5월 1일~5월 31일	
	2월 27일①	전화	4월 7일①	전화	5월 12일①	전화
	3월 10일②	메신저	4월 14일②	메신저	5월 19일②	메신저
	3월 17일③	전화	4월 21일③	전화	5월 26일③	전화
	3월 24일④	메신저	4월 28일④	메신저		
	3월 31일⑤	전화				
분류(코드)	환자관리료 Ⅱ(IB022)					
내원일자	5월 26일					

Q 25 2019년 12월 15일 이전에 환자관리를 실시하였으나 분기별 산정(환자관리료 개정 전)을 위한 실시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관리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A 2019년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환자관리를 실시하였으나, 분기별 산정(환자관리료 개정 전)을 위한 실시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환자관리료(IB020)를 산정하되, 실시횟수는 월 2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개월 수에 0.33을 곱하여 청구합니다.

- 만약, 환자관리 월 산정주기 시작일이 11월 17일 이후이고, 월 산정주기 시작일부터 12월 15일까지 1회만 실시했을 경우에는 실시횟수에 추가로 0.17을 더하여 청구합니다.
- 또한, 청구 시에 내원일자는 마지막 실시·기록한 환자관리 일자를 작성합니다.

예시 1) 개정 전 환자관리 분기(3개월)가 10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인 경우

구분		1개월		2개월	
실시일자 (제공방법)		10월 21일~11월 20일		11월 21일~12월 15일	
		10월 30일①	문자	11월 27일①	문자
		11월 13일②	내소	12월 4일②	내소
				12월 11일③	전화
수가 산정 방법	분류(코드)	환자관리료(IB020)			
	실시횟수	0.66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실시한 개월 수 X 0.33)			
	내원일자	12월 11일			

2) 개정 전 환자관리 분기(3개월)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실시일자 (제공방법)		10월 1일~10월 31일		11월 1일~11월 30일		12월 1일~12월 15일	
		10월 1일①	내소	11월 1일①	문자	12월 4일①	전화
		10월 15일②	내소	11월 8일②	내소		
				11월 20일③	전화		
수가 산정 방법	분류(코드)	환자관리료(IB020)					
	실시횟수	0.83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실시한 개월 수 X 0.33 + 0.17*)					
	내원일자	12월 4일					

* 환자관리 월 산정주기 시작일이 11월 17일 이후이고, 월 산정주기 시작일부터 12월 15일까지 1회만 실시했을 경우

Q 26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자관리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A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관리료 Ⅰ'은 1회 이상, '환자관리료 Ⅱ'는 2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실시횟수에 0.17을 기재하여 청구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분기가 시작됩니다. (환자관리료 Ⅰ~Ⅱ 산정기준은 Q14~Q15 참고, 환자관리료 Ⅱ은 산정횟수(연간 2회 이내)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청구 시에 내원일자는 마지막 실시·기록한 환자관리 일자를 작성합니다.

예시 (환자관리료 Ⅰ)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관리 1회 실시한 경우

구분		환자관리료 Ⅰ	
실시일자 (제공방법)		12월 16일~12월 31일	
		12월 19일①	문자
수가 산정방법	코드	IB021	
	실시횟수	0.17	
	내원일자	12월 19일	

(환자관리료 Ⅱ)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관리 3회 실시한 경우

구분		환자관리료 Ⅱ	
실시일자 (제공방법)		12월 16일~12월 31일	
		12월 20일①	전화
		12월 27일②	메신저
		12월 30일③	전화
수가 산정방법	코드	IB022	
	실시횟수	0.17	
	내원일자	12월 30일	

교육·상담료

Q 27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대면하여 개인(1대 1) 또는 10명 이내의 집단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28 환자에게 동일한 날에 '초회', '기본', '집중 교육·상담' 과정 간 중복하여 실시한 경우,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A 중복 교육·상담은 가능하나, '초회', '기본', '집중 교육·상담' 수가는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시 2019년 2월 3일 케어플랜 수립 후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환자의 경우

구분	교육·상담 실시 여부			수가산정	비고
	초회	기본	집중		
2월 10일	o	o		초회	
4월 13일		o		기본 (1회)	
5월 15일		o		기본 (2회)	
6월 10일		o		기본 (3회)	
7월 20일		o	o	기본 (4회)	기본 4회 이상 미충족으로 집중교육 산정불가
8월 20일		o		기본 (5회)	
9월 20일		o		기본 (6회)	
10월 5일		o		기본 (7회)	
10월 20일		o	o	집중	
12월 1일		o		기본 (8회)	

Q 29 교육·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나요?

A '초회',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집중 교육·상담료'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료'와 '집중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30 환자에게 '기본 교육·상담'('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또는 '생활습관개선')을 동일 날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A 동일 날, 의사는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간호사 또는 영양사는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각각 1회 수가산정 가능합니다.

Q 31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 수가는 어떤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료'는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10분 이상 생활습관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교육·상담' 수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Q 32 보건소 영양사 또는 간호사에게 교육·상담을 의뢰하여 생활습관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보건소 등으로 교육·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교육·상담 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33 '집중 교육·상담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수가는 어떤 경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기본 교육·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30분 이상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연 1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34 '초회 교육·상담 [의사]'을 실시하지 않고, '기본 교육·상담'('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또는 '생활습관개선')을 실시하고 산정 할 수 있나요?

A 교육·상담은 환자 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초회 교육·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기본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상담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Q 35 '기본 교육·상담료'는 연간 8회 이내 산정 가능한데,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의사] 교육·상담료'와 '생활습관개선[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료'를 각각 8회씩 산정할 수 있나요?

A '기본 교육·상담료'는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의사] 교육·상담' 횟수와 '생활습관개선[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8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Q 36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진찰료, 원외처방전 등 다른 진료비와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 37 분리하여 청구 시 '원청구'인가요, '분리청구'에 해당하나요?

A '원청구'로 구분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를 기재하여 청구하고,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V193 등) 가지고 있는 경우 'S012'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Q 38 '환자관리료 II' 청구 시 특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2'(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를 기재하여 청구하고,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란에 환자관리료 II 실시사유코드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실시사유코드가 'F'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평문(Free Text)으로 함께 기재합니다.

〈JX999 작성요령〉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X999	기타내역	◆ 환자관리료 II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실시사유코드를 기재 · 실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실시사유코드가 'F'인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환자관리료 실시사유코드〉

실시사유	실시사유코드
신규 환자	A
인슐린 투여 환자	B
혈압·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	C
합병증 동반 환자	D
이차성 고혈압 환자	E
A부터 E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유	F

◆ 기재형식: X(1)/X(200)

◆ 기재요령

구 분	①	②	③
기재방법	사유코드	/	구체적인 사유
주의사항	영문 (1자리)	반드시 기재	Free Text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기재예시

특정내역(JX999) 기재												청구유형
A	/											올바른 기재
F	/	생	활	습	관		관	리		필	요	올바른 기재
	A											잘못된 기재
F	생	활	습	관		관	리		필	요		잘못된 기재

Q 39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당일 수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익일 심평원으로 수가 데이터가 송부되어 당일 청구 불가능 합니다.

Q 4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환자로 확인이 되었으나, 보훈대상자로 지급불능처리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Q 41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만성질환 관리 내용을 입력할 경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은 만성질환관리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료 후 당일 청구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입력내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 미연계로 심사불능 또는 심사조정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정보시스템 입력 다음날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Q 4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는 해당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이외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신고 관련

Q 43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하여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인력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하여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 인력(정규직 또는 계약직, 주 16시간 이상 근무)을 고용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상세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Q 44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주 3일은 A기관, 주 2일은 B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주 3일은 A기관, 주 2일은 B기관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A, B 두 기관 모두 인력 신고하여야 합니다.

Ⅲ 검진바우처 이용에 대한 내용

1. 제공 대상

Q 01 검진바우처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검진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2019년: 40세 이상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1979.12.31.이전 출생자)
- 2020년~: 모든 연령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연령 제한 없음)

Q 0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자입니다. 검진바우처 검사를 받으려면 별도의 대상자 확인 또는 등록 과정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시점부터 검진바우처 검사가 제공됩니다.

* 참여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정보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일차의료만성질환/등록/환자등록)에 등록됨

- 기존 참여자의 경우 2021.1.27.부터 변경된 검사항목을 제공합니다.

2. 검사항목 및 방법

Q 03 검진바우처로 제공하는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A 대상자의 질환별로 검사항목을 제공합니다. * 검사항목별 개별 청구 가능

- 고혈압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당뇨병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소디움, 당화혈색소(4회),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복합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당화혈색소(4회),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Q 04 검진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 후 케어플랜 수립 단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케어플랜 수립 전 임상검사 단계 및 환자모니터링, 중간점검에도 검진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반드시 [바우처조회] 화면에 입력해야 합니다.

Q 05 검진바우처의 제공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상자의 질환별 검사항목을 연 1회 제공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20년도 제공 검사항목 21. 1. 26. 소멸)
※ 단, 지질검사 4종은 연 2회, 당화혈색소 검사는 연 4회 제공
 *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지질검사 1회 실시 후 검사이상 시 최대 2회까지 검사가능

Q 06 검진바우처로 제공되는 검사는 같은 날 실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일한 검체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 관련 검사항목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권장하나 대상자의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동일한 검체를 이용하는 지질검사 4종은 같은 날 실시해야 함

Q 07 심전도 기기가 없어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의원에서 검진 바우처를 사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검진바우처 검사는 환자가 등록된 참여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의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며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Q 08 미량알부민, 당화혈색소, 요 일반검사는 나열된 검사 방법을 모두 제공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바우처로 제공되는 검사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검사항목별 한 가지 검사방법을 선택하여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09 ‘19년 맞춤형 검진바우처로 제공하던 안저검사는 ‘21년에는 제공하지 않나요?

A 네.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저검사는 안과의원의 사업 참여가 미흡하여 ’20년부터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저검사는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변증 합병증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이므로 참여 환자에게 연 1회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0 당뇨병 환자에게 제공되는 알부민뇨(ACR) 검사는 무엇인가요?

A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권장 검사로 무작위 뇨(Random Urine)를 채취하여 요 중 미량알부민(Microalbumin)과 크레아티닌(Creatinine) 비율을 보는 검사입니다.

※ 누300 미량알부민과 누228 크레아티닌 검사 실시

Q 11 당화혈색소(누306 HbA1c) 검사는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따라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진 바우처도 검사 횟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진 바우처로 제공되는 당화혈색소 검사는 기존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급여기준
>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누306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 \- 다 음-
>
> 가. (생략)
> 나. 누306 헤모글로빈 A1c 검사는 혈당 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
> [관련근거: 고시 제2017-265호(행위)]

Q 12 검체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검진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 후 위탁내용과 바우처 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3 검진바우처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검진바우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혜택으로 질환별로 제공되는 검사항목에 대한 별도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 검사비용 전액(100%)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
>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0%
>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부담 10%
>
> *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10%)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므로 환자 수납 시 의원으로 납부하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은 없음.

Q 14 검진바우처 검사 후 검사내역을 반드시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바우처 검사는 임상검사, 환자모니터링, 중간점검에도 활용할 수 있는 환자의 질환 상태 추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후 검진바우처로 청구하였으나 검사 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검진바우처 검사 내역을 청구하기 전에 정보시스템 [바우처조회]화면 하단에 검사 실시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일차만성질환/조회/바우처조회

3. 검사비용 청구

Q 15 검진바우처 검사항목의 분류코드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분류코드와 동일합니다.

Q 16 검진바우처 검사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검진바우처로 실시한 검사비용은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에 "S013" 기재 후 진찰료,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와 분리하여 검사비용 전액(100%) 공단부담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Q 17 검진바우처 청구 시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검체검사 질 가산도 적용되나요?

A 요양기관 종별가산과 검체검사 질 가산 모두 적용됩니다.
※ 단, 공휴·야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8 검진바우처 대상자의 검사항목을 청구하였으나 급여비용 심사결과 보훈대상자로 지급불능 처리 되었는데요?

A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하시면 됩니다.

Ⅳ 기타 사항

Q 01 초회, 기본 및 집중 교육·상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환자 관리를 위하여 초회 및 집중 교육·상담(30분 이상), 기본 교육·상담(10분 이상)이 충분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참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0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지역은 시범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하 고당사업)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참여하는 지역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단, 환자는 두 사업에 중복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고당사업 참여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고당사업에서 불참처리 후 시범사업 참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당사업 미참여 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 환자에게 고당사업 참여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환자가 고당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범사업 참여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가 고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타의원에서 참여 등), 고당사업에서 불참 처리를 한 후 시범사업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Q 03 시범사업 선정지역에서 신규의원 추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향후 신규의원 추가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할 예정입니다.

Q 04 치료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환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고혈압·당뇨병 진단 환자의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Q 05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 시 지역제한이 있나요?

A
-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환자의 주소지 변동 발생 시에도 참여 가능하며, 시범사업 지역 내 의원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06 이전 시범사업(지역사회일차의료)에 참여했던 환자에게 동의서와 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기존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신규 제출해야 합니다.

Q 07 교육·상담을 비대면(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나요?

A 상담은 비대면이 가능하나, 교육은 대면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Q 08 교육·상담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A
- 환자의 질환 수준 및 진료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정보시스템 [교육]메뉴에 탑재된 교육자료 활용을 권고 드리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이 불편할 경우, 공단에서 제작·배포해 드린 초회 교육자료 및 의원의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 상담 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시간 수기 입력 필수

  →Ⅰ.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 Q06 참고

Q 09 급여 정지 기간에도 환자 관리가 가능한가요?

A 한 달 이상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한 급여정지 기간 동안에 문자 발송 또는 전화상담 등의 비대면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자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10 참여의원이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소재지가 동일한 선정지역 내에서 이전하거나, 다른 선정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시범사업 참여 변경신청 대상이며, 선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개설 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시범사업 참여 취소 대상입니다.

Q 11 폐업한 종전 참여의원 소재지에서 새로운 개설자(대표자)가 시범사업을 지속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폐업한 종전 참여의원(참여 철회신청 의원 제외) 소재지에서 의료기관을 새로이 개설한 경우 새로운 개설자가 시범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여 시범사업 참여 신청 할 경우 시범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8

부록

1. 사업 참가 신청서류
2. 사업 관련 서류
3. 문의처

부록 1 사업 참가 신청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신청서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7">(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td></tr>
<tr><td>참여 지역</td><td colspan="7">○○시·도 ○○시·군·구(예 : 경기도 안양시)</td></tr>
<tr><td rowspan="2">지역의사회 현황</td><td>주소</td><td colspan="6"></td></tr>
<tr><td>대표전화</td><td></td><td>FAX</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총괄 책임자</td><td>성 명</td><td></td><td>직급/직위</td><td colspan="4"></td></tr>
<tr><td>전화</td><td></td><td>M.P.</td><td colspan="2"></td><td>E-MAIL</td><td></td></tr>
<tr><td rowspan="2">담당자</td><td>성 명</td><td></td><td>직급/직위</td><td colspan="4"></td></tr>
<tr><td>전화</td><td></td><td>M.P.</td><td colspan="2"></td><td>E-MAIL</td><td></td></tr>
<tr><td rowspan="5">참여의원 현황</td><td colspan="2" rowspan="2">총 참여의원 수</td><td rowspan="2">사업 수행형태</td><td colspan="4">구분</td></tr>
<tr><td>내과</td><td>가정의학과</td><td>기타</td><td>소계</td></tr>
<tr><td colspan="2" rowspan="3">______개소</td><td>케어 코디네이터 직접고용</td><td></td><td></td><td></td><td></td></tr>
<tr><td>의사 단독 수행</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8">본 ______지역의사회는 (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의사회 기관장 직 인 (인)</td></tr>
<tr><td colspan="8">보건복지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1. (별지2) 시범사업계획서
2. (별지3) 보안서약서(지역의사회)
3. (별지4) 지역연계기관 협약서(보건소 필참)
4. (별지5) 참여의원 현황표
※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서

2021. 00.

○○○ 지역의사회

Ⅰ. 일반현황

1.1. 시범사업의 필요성

※ 만성질환 관련 지역사회 건강현황, 주민 수요 등 다양한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도출

1.2. 사업 목표

※ 성과지표는 결과, 산출, 투입 등 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되도록 산출보다는 결과중심으로 제시(예 : 서비스 만족도, 생활습관 개선율, 건강목표 달성률 등)

성과지표	목표치	정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참여의원 현황

(단위 : 개소)

케어코디 모형	구분			소계
	내과	가정의학과	기타	
의원 내 코디 직접고용				
의사 단독 수행				
총 참여의원 수				

** 케어코디네이터 모형 정의*
· 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 :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함께 환자관리·교육 등을 함께 수행
· 의사 단독 수행 : 의사가 환자관리· 교육 등을 단독 수행

Ⅱ. 사업 운영 계획

2.1. 지역의사회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예시) ○○지역의사회*	*총무이사*	*김○○*	*010-1111-*****	*○○○@gmail.com*
실무자	*(예시) ○○지역의사회*	*대리*	*박○○*	*010-3333-*****	*○○○@hanmail.net*

2.2. 예산, 시설, 장비, 인력 등 활용계획

※ 시범사업에 투입 예정인 지역의사회 예산, 시설, 장비, 인력 등이 있는 경우 작성

2.3. 참여의원 관리 및 지원계획

□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노력

○ (예시) 지역 간호사회 등과 협력방안 등

□ 교육·세미나

○ 횟수 : (예시) 분기별 1회,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

○ 주요 내용

- *(예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안내, 향후 추진일정 소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안내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지역 내 계획 소개, 지역 내 연계기관 소개 및 활용 방법 안내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상담 기술 등

☐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 책임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간사	*(예시) ○○내과의원*	*원장*	*김○○*	*010-1111-*****	*○○○@gmail.com*
실무자	*(예시) ○○시 의사회*	*직원*	*박○○*	*010-3333-*****	*○○○@hanmail.net*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 최소한 지역의사회, 보건소, 건보공단을 포함하여야 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시 의사회*	*회장*	*김○○*	*공동위원장, ○○내과의원*
2	*○○시 보건소*	*소장*	*박○○*	*공동위원장*
3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장*	*이○○*	
4				
5				
6				

○ 운영 계획

- 발대식 일자(최초 회의 예정일) :
- 개최 주기 : *(예시) 월 1회, 분기별 1회 등*
- 기능 및 역할 : *(예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관련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예시) 지역사회 연계기관 자원 파악 및 협업 사항, 당뇨병·고혈압 관리 현황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

2.4.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 연계 기관별로 연계목적, 협력내용, 업무담당자, 교육상담 인력지원 현황 반드시 작성

☐ 업무협약 체결일자

○ 체결 주체 : *(예시) 지역의사회장 ○○○, 보건소장○○○ 등*

□ 보건소

○ 협력내용: *(예시)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방안 등*

○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예시) ○○시 보건소*	*행정6급*	*안○○*	*010-1111-*****	*○○○@gmail.com*
실무자	*(예시) ○○시 보건소*	*보건7급*	*이○○*	*010-3333-*****	*○○○@hanmail.net*

○ 교육상담 인력 지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격	비고
1	*보건소*	*보건6급*	*김○○*	*간호사*	*교육총괄*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7급*	*박○○*	*영양사*	*영양교육*
3	*보건지소*	*보건7급*	*강○○*	*운동처방사*	*운동교육*
4					
5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협력내용)

○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예시) ○○지사*	*팀장*	*김○○*	*010-1111-*****	*○○○@gmail.com*
실무자	*(예시) ○○지사*	*과장*	*이○○*	*010-3333-*****	*○○○@hanmail.net*

○ 교육상담 인력 지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격	비고
1	*(예시) ○○ 일차의료지원센터*	*과장*	*김○○*	*간호사*	*교육총괄*
2	*(예시) ○○ 건강증진센터*	*해당없음*	*박○○*	*영양사*	*영양교육*
3	*(예시) ○○ 건강증진센터*	*해당없음*	*강○○*	*운동처방사*	*운동교육*
4					
5					

□ 기타공공시설(해당 시 작성)

○ (협력내용)

○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예시) ○○시*	*팀장*	*김○○*	*010-1111-*****	*○○○@gmail.com*
실무자	*(예시) ○○시*	*과장*	*이○○*	*010-3333-*****	*○○○@hanmail.net*

○ 교육상담 인력 지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격	비고
1	*(예시) ○○ 국민체력100*	*해당없음*	*김○○*	*운동처방사*	*교육총괄*
2	*(예시) ○○ 국민체력100*	*해당없음*	*박○○*	*운동지도사*	*운동교육*
3					

□ 민간체육시설(해당 시 작성)

□ 기타(해당 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목적에서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사업 중에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기관 : *○○지역의사회*

직 위 : *○○지역의사회장*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업무협약서(예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 협약당사자

(가) : ○○시(군·구) 지역의사회장

(나) : ○○시(군·구) ○○○ 기관장

(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시(군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 "가"와 "나 및 "다"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제3조(협력사항) "가"와 "나 및 "다"는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한다.

① "가"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 계획수립 및 연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성실히 운영한다.

② "가"는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등을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 회의체계를 마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참여기관과 공유한다.

③ "나"는 관할 시군구 주민 대상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한다.

④ "나"는 관할 시군구 기타 자원을 파악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안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한다.

⑤ "다"는 지역 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서의 해당 역할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참여의원 및 기관을 최대한

지원한다.

⑥ “다”는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 및 일차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제4조(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와 “나” 및 “다”는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가”와 “나” 및 “다”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 시 다자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다자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와 “나” 및 “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 “가”와 “나” 및 “다”는 정기적으로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관련 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금지) “나”와 “다”는 “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책임하는 행위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 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9조(개인정보보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협약이행·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 참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협약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가"와 "나" 및 "다"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따른다.

제12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협약서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가"와 "나" 및 "다"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시(군·구) 지역의사회장 (직인)
(나) ○○시(군·구) ○○○장 (직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직인)

※ 본 업무협약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의사회와 협력 기관 간 업무 협약서의 예시(안)으로 지역 여건과 협력 대상 기관에 맞게 상호 협의 하에 모두 변경 가능함. 제3조 또한 협력기관에 따라 다음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 가능함

1) 보건소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나"는 지역 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나"에서 진료받는 경우, 본 사업 참여 의사 여부를 타진하고 가까운 동네 의원에 의뢰하는 등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나"는 "나"에서 수행 중인 건강관리 및 요양기관 관리 사업의 수행에도 항시 상호 협의하는 제제를 유지한다.

3) 그 외 공공기관(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나"는 본 사업 참여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의뢰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응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의원 현황표

○○○ 지역의사회 참여의원 현황표

구분	의원 기본정보							사업 참여현황		케어코디네이터 고용계획 여부
	의원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기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표시 과목	수행 형태 (1. 코디 직접고용, 2 의사 단독수행)	바우처 사업 참여여부	
(예시)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 -0000*	*000*	*010-123 -4567*	*내과*	*1 (숫자로만 기입)*	*여*	*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7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원용)_온라인 작성용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의원용)

기 관 명		요 양 기 관 기 호	
요 양 기 관 종 별		표 시 과 목	
주 소(소재지)			
요양기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휴 대 전 화 번 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호** 등을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정보들은 사업수행, 비용 지급**(제3자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 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사업 참여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해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원할 경우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함에 반드시 체크☑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 동의함 ☐ 동의 안함	☐ 동의함 ☐ 동의 안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범사업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안내》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목적

항목	세부내용	목적
본인확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본인 식별
의료기관 확인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기관 식별, 사업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확인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사업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철회 가능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지역의사회, 보건소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의원철회 및 변경 사항 등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와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의원철회 및 변경 사항 등	사업기간*

* 심사 및 평가 기간 포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목적에서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사업 중에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기관 : *OO의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환자용)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환자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	- -

* 필수 입력사항

※ 아래 시범사업 서비스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시범사업 서비스 내역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임상검사, 문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검진바우처 검사	질환별 검사항목 - 고혈압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당뇨병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소디움, 당화혈색소(4회),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복합 환자: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당화혈색소(4회), 알부민뇨, eGFR, 요 일반검사(4, 7, 10종) * 의료진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검사항목 실시
환자관리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등
	맞춤형 건강 상담
점검 및 평가	건강 관리목표 달성여부 등 포괄 평가 및 케어플랜 재수립
안내 서비스	전화 및 SMS서비스 ※ 의료기관 진료예약 일정, 연계기관 의뢰 시 방문 일정 등의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입니다.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위와 같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u>시범사업 참여를 위한</u>
<u>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u>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 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항목)	개인정보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외국인 여부, 의원 챠트번호, 등록번호)
	<u>민감정보</u>	**<u>건강정보(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검사결과, 합병증,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자가측정 전송정보 등)</u>**
<u>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u>	**<u>5년</u>**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관리 및 평가,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소	사업 운영 및 평가,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외국인여부, 연락처, 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진료내역*, 교육·상담 결과 등	사업기간**

* 진료내역: 포괄평가 및 계획, 검사이력, 케어플랜, 대상자 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문자발송 및 전화 상담 내역, 검사 내역 및 결과(바우처 검사 포함), 서비스 연계 · 조정내역 등 포함

** 심사 및 평가 기간 포함

※ 귀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인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만 14세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 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항목)	개인 정보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외국인 여부, 의원 챠트번호, 등록번호)
	민감 정보	**건강정보(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검사결과, 합병증,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자가측정 전송정보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 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로, 개인정보호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관리 및 평가,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보건소	사업 운영 및 평가,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의뢰 의료기관명, 질병명, 검사결과, 의료기관 내원일	5년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주소, 전자우편주소, 외국인여부, 연락처, 의료기관명, 질병명, 질병코드,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내역(수가코드) 및 횟수, 진료내역*, 교육·상담 결과 등	사업기간**

* 진료내역: 포괄평가 및 계획, 검사이력, 케어플랜, 대상자 모니터링, 점검 및 평가, 문자발송 및 전화상담 내역, 검사 내역 및 결과(바우처 검사 포함), 서비스 연계 · 조정내역 등 포함

** 심사 및 평가 기간 포함

※ 귀하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고혈압, 당뇨병 환자 문진표(예시)

고혈압, 당뇨병 문진표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관련 문항

1.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중인 경우 아래 상세 병력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유병기간	________ 년	________ 년
약물 치료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치료약물 : ________	치료약물 : ________
약물 부작용 여부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혈압/혈당 조절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이십니까?

항목	내용
뇌질환	☐ 뇌졸중 ☐ 일과성 허혈 발작 ☐ 혈관성 치매
심장질환	☐ 심근경색 ☐ 협심증 ☐ 심부전
혈관질환	☐ 대동맥질환(대동맥 박리, 협착, 확장) ☐ 말초혈관질환
신장질환	☐ 만성콩팥병(3기 이상) ☐ 신대체요법
대사질환	☐ 이상지질혈증
안과질환	☐ (고혈압성/당뇨병성) 망막증 ☐ 실명
신경질환	☐ 말초신경병증(자율신경병증)
족부병변	☐ 하지절단 ☐ 당뇨병성 족부병변
기타	☐ 기관지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 류마티스 질환 ☐ 암

2-1. 이차성 고혈압 가능성에 체크해주세요

☐ 있음	☐ 없음	☐ 미상

3.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 고혈압 ☐ 당뇨병

☐ 뇌질환 :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 심장질환 :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남자 55세 미만,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

4. 최근 2주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V표 해주세요.

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기분이 우울한가?

※ 약물복용력

5-1. 아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체크해주세요

☐ 스테로이드성 약제 ☐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 면역억제제 ☐ 항응고제

☐ 항혈소판제제 ☐ 항우울제 ☐ 항히스타민제 ☐ 피임약 ☐ 여성호르몬

☐ 부신스테로이드호르몬 ☐ 한약제 (감초, 마황)

※ 흡연 관련 문항

6-1.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7번 문항) ② 예, 지금은 끊었음 (☞ 6-2번 문항) ③ 예, 현재도 흡연 중 (☞ 6-3번 문항)

6-2. 과거에 흡연을 하다가 현재는 끊으셨다면 언제 끊으셨습니까? _________ 년 전 (또는 _________ 년도)

6-3. 과거에 흡연을 하신, 또는 현재에 흡연을 하시는 하루 평균 흡연량과 총 흡연 기간을 기록해주세요

- 하루 평균 흡연량 (갑) - 담배 피우신 총 기간 (총 년)

※ 음주 관련 문항

7-1.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 0 ☐ 1 ☐ 2 ☐ 3 ☐ 4 ☐ 5 ☐ 6 ☐ 7)

7-2.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잔)

(※ 술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고혈압, 당뇨병 환자 공통)

8-1.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아침식사를 거르십니까? ☐ 예 ☐ 아니오

8-2.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식사량이 많은 편이십니까? ☐ 예 ☐ 아니오

8-3. 튀김 음식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4. 국이나 찌개 섭취 시 국물을 위주로 섭취하십니까? ☐ 예 ☐ 아니오

8-5.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여 드시거나 젓갈류를 주 1회 이상 드시는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 식이/영양 관련 문항 (당뇨병 환자에 해당)

8-6. 설탕 등 단순당 섭취가 많으신 편입니까? ☐ 예 ☐ 아니오

8-7. 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거나 또는 감자, 고구마, 면류 등을 주 2회 이상 드십니까? ☐ 예 ☐ 아니오

8-8. 육류, 생선류 등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 섭취량의 15% 미만 또는 주4회 미만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체활동(운동) 관련 문항

9-1. 운동여부 : ☐ 운동하지 않음(☞ 10번 문항)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2회 이상)

9-2. 운동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 운동(덤벨 등)

9-3. 운동시간 : ☐ 150분/주 이하 ☐ 150분/주 이상 ☐ 180분/주 이상

※ 수면 관련 문항

1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V표 해주세요. (☐ 수면무호흡증 진단 ☐ 코골이 ☐ 주중 졸림 현상)

※ 예방접종력 관련 문항

11.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 접종 ☐ 미접종 ☐ 미상

12. 폐렴사슬알균 백신 접종 ☐ 접종 ☐ 미접종 ☐ 미상

※ 신체계측

11. 키 _________ cm 12. 몸무게 _________ kg 13. 허리둘레 _________ cm

※ 혈압 및 맥박 측정

구분	왼팔			오른팔		
	수축기	이완기	맥박	수축기	이완기	맥박
1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2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3차	mmHg	mmHg	회/분	mmHg	mmHg	회/분

[별지 제12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의료기관용)

본 (   )의원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철회를 신청합니다.

- 철회 사유:

<유의사항>

▶ 철회 의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시범사업 서비스 중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철회 사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철회 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__의원 원장 ______________서명 (인)

_________ 지역의사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지역의사회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철회신청서(지역의사회용)

〈 (　　　)의사회 소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신청 의원 〉

구분	의원 기본정보				
	의원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기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예시)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1					
2					
3					
4					
5					

○○ 지역의사회 소속 상기 의원은「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사회　회장 ＿＿＿＿＿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의료기관용)

의원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본 (   )의원은 아래와 같이 기관정보가 변경되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 대표자 변경 시 새로운 대표자가 참여의원 변경신청서에 서명 후 제출(시범사업 유지에 동의함을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______________의원 원장 ____________서명 (인)

________ 지역의사회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변경신청 의원 현황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 변경 신청서(지역의사회용)

〈 (   )의사회 소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변경 신청 의원 〉

구분	의원 기본정보				
	의원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기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예시)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1					
2					
3					
4					
5					

_________ 지역의사회 소속 상기 의원은「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의사회 회장 ____________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부록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사업 총괄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13, 2815)

- 전산시스템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 서울, 강원 (☎ 02-2126-8655, 8892)
  - 인천, 경기 (☎ 031-230-7927)
  - 부산, 경남, 울산 (☎ 051-801-0482)
  - 대구, 경북 (☎ 053-650-8955)
  - 광주, 전라, 제주 (☎ 062-250-0274)
  - 대전, 충청, 세종 (☎ 044-251-7634)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수가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부 (☎ 033-739-1553, 1563, 1567)

- 검진 바우처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부 (☎ 033-736-4515, 4517)

- 사업 관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만성질환관리팀(☎ 02-3782-7603, 7604, 7605, ,7606, 760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발행일 2021년 3월 (4쇄 개정판)

발행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본 안내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